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원 회 의

의 결 제 2023 - 153 호

2023. 10. 6.

사 건 번 호 2020제감1588

사 건 명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1.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Broadcom Incorporated)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리더 파크 드라이브 1320
(1320 Ridder Park Drive, San Jose California 95131, United States)
대표자 최고경영자 ■■■■■

2. 브로드컴 코퍼레이션(Broadcom Corporation)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리더 파크 드라이브 1320
(1320 Ridder Park Drive, San Jose California 95131, United States)
대표자 최고경영자 ■■■■■

3.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Avago Technologies International Sales Pte. Limited)
싱가포르공화국 7 이슌 애비뉴 1
(1 Yishun Avenue 7 Singapore, 768923 Singapore)
대표자 이사 ■■■■■, ■■■■■, ■■■■■, ■■■■■

4.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매현로 16, 7층(양재동, 하이브랜드 빌딩)
대표이사 ■■■■■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 한■■■■, 박■■■■, 이■■■■, 김■■■■, 전■■■■

심 의 종 결 일 2023. 9. 13.

주 문

1.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Broadcom Incorporated), 브로드컴 코퍼레이션(Broadcom Corporation),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Avago Technologies International Sales Pte. Limited) 및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는 부품의 선적 중단, 거래상대방의 부품 구매주문에 대한 승인 중단, 기술지원 및 부품생산 중단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부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내용의 부품 공급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 18,664,000,000원

- 1)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는 18,664,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은 18,664,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3)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는 18,664,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4)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는 18,664,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5) 위 4개 사 중 1개 사가 위 과징금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3개 사의 위 과징금 납부의무는 과징금을 납부한 1개 사의 납부금액 만큼 소멸한다.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¹⁾

¹ 브로드컴 본사 및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의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미국은 물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도 스마트기기용 무선 주파수 프론트엔드(RFFE)²⁾ 및 커넥티비티(Connectivity)³⁾ 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9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² 브로드컴 싱가포르는 싱가포르공화국(이하 ‘싱가포르’라 한다)의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싱가포르는 물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도 스마트기기용 RFFE 부품 및 Connectivity 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³ 브로드컴 코리아는 브로드컴의 대한민국 내 사업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브로드컴 본사의 국내 지사이고,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의 판매, 기술지원 및 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등을 제공하

1) 이하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Broadcom Inc.)는 ‘브로드컴 본사’로, 브로드컴 코퍼레이션(Broadcom Corporation)은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으로,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Avago Technologies International Sales Pte. Limited)는 ‘브로드컴 싱가포르’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는 ‘브로드컴 코리아’로 각각 지칭하되,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 또한 사업자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 유형을 나타내는 단어는 생략한다.

2) 스마트기기 안테나에 송·수신되는 통신 주파수 신호의 품질을 향상하는 일련의 부품을 말한다. 이하 ‘RFFE’라 한다.

3) 스마트기기가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단거리의 무선 통신망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능하는 부품을 말한다. 이하 ‘Connectivity’라 한다.

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들 일반현황 및 주요 사업

4 피심인들의 사업구조는 크게 반도체 솔루션(Semiconductor Solutions) 분야와 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Infrastructure Software Solutions) 분야로 나뉜다. 반도체 솔루션 분야에서는 네트워킹(Networking), 광대역통신(Broadband), 무선통신(Wireless), 서버 저장공간(Server Storage) 등의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고, 기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대형 범용 컴퓨터(Mainframe),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5 그 가운데 무선통신 사업 부문에서는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을 설계, 개발 및 생산⁴⁾하고 있으며, 애플, 삼성전자 등 전 세계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반도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6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및 재무정보 등은 아래 <표 1> 내지 <표 5>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자	주요 사업내용
브로드컴 본사	■■■■■	2018. 1. 17.	반도체 솔루션, 기반 소프트웨어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	1991. 8. 16.	반도체 솔루션
브로드컴 싱가포르 ^주	■■■■■, ■■■■■, ■■■■■, ■■■■■	2005. 9. 2.	반도체 솔루션
브로드컴 코리아	■■■■■	2000. 6. 5.	반도체 제품의 국내 영업 지원 등

주) ■■■■■
■■■■■

4) 피심인들은 소위 팹리스(fabless) 내지 팹라이트(fab-lite) 반도체 회사로 분류되는데, 팹리스란 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fabrication)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반도체 회사를 의미한다. 팹리스 회사들은 설계 및 기술개발을 전문적으로 하고, 실제 생산은 대부분 파운드리 반도체 회사에 위탁하여 제품을 판매한다.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⁵⁾

<표 2>

브로드컴 본사의 재무정보 등

(단위: 백만 달러, 명)

구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 종업원 수
2020년	■	■	■	■	■
2019년	■	■	■	■	■
2018년	■	■	■	■	■

* 출처: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표 3>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재무정보 등

(단위: 백만 달러, 명)

구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 종업원 수
2020년	■	■	■	■	■
2019년	■	■	■	■	■
2018년	■	■	■	■	■

* 출처: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표 4>

브로드컴 싱가포르의 재무정보 등

(단위: 백만 달러, 명)

구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 종업원 수
2020년	■	■	■	■	■
2019년	■	■	■	■	■
2018년	■	■	■	■	■

* 출처: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표 5>

브로드컴 코리아의 재무정보 등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 종업원 수
2020년	■	■	■	■	■
2019년	■	■	■	■	■
2018년	■	■	■	■	■

* 출처: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다. 피심인들 간의 관계

5)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을 '소갑 제○호증'으로 표기한다.

7

[Redacted text block]

<표 6>

피심인들 간 지배구조 현황

[Redacted table content]

* 출처: 소갑 제5호증

8

브로드컴 본사는 브로드컴 테크놀로지스 인코포레이티드, 아바코 테크놀로지스 유에스 인코포레이티드, 엘에스아이 코퍼레이션 등 미국과 전 세계에 소재한 수백 개의 법인을 관리하면서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와의 거래 시 거래조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다.

9

한편, 브로드컴의 법인들은 각 법인별로 그 업무 및 역할이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주로 특정 사업부/부서별로 운영된다.

10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은 피심인들의 WSD(Wireless Semiconductor Division) 및 WCC(Wireless Connectivity and Communications) 사업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WSD 사업부는 RFFE 부품의 설계, 개발, 생산 및 판매를, WCC 사업부는 Connectivity 부품의 설계, 개발,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한다.

11 기능 중심의 사업부 편제에 따라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브로드컴 코리아 등에는 각각 WSD, WCC 등 사업부가 있으며, 해당 부서를 통해 RFFE, Connectivity 제품에 관한 생산·공급 계획의 수립, 주문 접수 및 공급, 기술지원 등에 대한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또한 피심인들은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RFFE 및 Connectivity 부품 공급 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그에 따른 집행 업무를 중첩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라. 피심인들에 대한 관할권

12 브로드컴 본사는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현재 미국에 소재하는 외국 사업자이다. 그러나 브로드컴 본사는 국내의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해 자신이 제조한 스마트기기용 RFFE 부품 및 Connectivity 부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부품 공급에 관한 거래조건의 설정 등 각종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13 특히, 브로드컴 본사의 ████████인 브로드컴 코리아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어 한국 내 스마트기기용 RFFE 및 Connectivity 부품 판매, 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고, 브로드컴 본사는 자회사에 대한 지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한국 내 영업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14 브로드컴 코퍼레이션과 브로드컴 싱가포르는 아래 <표 8>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와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해당한다. 또한 브로드컴 싱가포르는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로부터 부품 판매대금을 수취하면서 자신의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7>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 삼성전자와의 계약 현황

계약명	브로드컴 측 계약주체	계약 상대방 (체결일)
[Redacted]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브로드컴 싱가포르	삼성전자 [Redacted]
[Redacted]	브로드컴 싱가포르	삼성전자 [Redacted]
[Redacted]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삼성전자 [Redacted]
[Redacted]	브로드컴 싱가포르	삼성전자 [Redacted]
[Redacted]	아마고 테크놀로지스 (WSD 사업부)	삼성전자 [Redacted]

* 출처: 소갑 제2호증

15 이처럼 브로드컴 본사,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및 브로드컴 싱가포르는 각각 미국 또는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으나, 브로드컴 본사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공급 계약의 체결 및 선적 중단 등을 결정하였고, 이를 이행할 것을 계열회사에 지시 하였으며,⁶⁾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및 브로드컴 싱가포르는 삼성전자와의 부품 공급 계약의 당사자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본사,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및 브로드컴 싱가포르의 이하 2. 가. 인정사실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진다.

<표 8>

법인별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와의 거래에 있어 주요 역할

피심인	주요 업무
브로드컴 본사	[Redacted]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브로드컴 싱가포르	
브로드컴 코리아	

마. 시장구조 및 실태

6)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계열회사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스마트기기의 의미 및 종류

16 스마트기기(Smart Device)란,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넓게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장착한 다양한 서비스 단말기(스마트티비, 스마트냉장고 등)가 모두 스마트기기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스마트기기는 스마트폰(Smart Phone)이나 태블릿 PC(Tablet PC) 등 모바일 통신수단을 통해 데이터통신, 인터넷 검색, 멀티미디어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기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기기는 통상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에 연결되어 신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웨어러블(wearable) 기기로 구분된다.

가) 스마트폰

17 스마트폰은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플랫폼 기반의 운영체제로 구성된 휴대용 통신기기를 말한다. 스마트폰으로 이메일, 문자메시지, 인터넷 검색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앱) 설치를 통해 다양한 응용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18 2021년 기준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로는 애플, 삼성전자, 화웨이(Huawei), 샤오미(Xiaomi), 오포(OPPO), 비보(ViVo), 레노버(Lenovo) 등이 있다.

나) 태블릿 PC

19 태블릿 PC란, 디스플레이가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손가락이나 터치펜으로 조작할 수 있는 소형·휴대용 컴퓨터를 말한다.

20 태블릿 PC 시장은 애플이 2010년 4월경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021년 기준 주요 제조사로는 애플, 삼성전자, 화웨이, 아마존(Amazon), 레노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이 있다.

다) 웨어러블 기기

(1) 스마트워치

21 스마트워치(Smart Watch)는 앱 설치 및 구동이 가능한 운영체제가 장착된 시계 형태의 스마트기기를 말하며, 전화 수신 알람, 심장박동 측정, 통화, 메시지, 뉴스 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22 스마트워치 시장은 2013년 9월 삼성전자가 첫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기어(Gear)’를 출시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애플이 2015년 4월 ‘애플워치’를 출시하며 스마트워치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2021년 기준 주요 제조사로는 애플, 삼성전자, 화웨이 등이 있다.

(2) 완전 무선 이어폰(TWS 이어폰)

23 무선 이어폰은 음향 재생 기기에 유선 케이블 대신 근거리 무선통신 규격인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접속하는 이어폰을 말한다. 현재 좌우 이어폰이 독립하여 케이블이 전혀 없는 ‘완전 무선 이어폰(True Wireless Stereo, 이하 ‘TWS 이어폰’이라 한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4 TWS 이어폰 시장은 2016년 6월 삼성전자가 ‘기어 아이콘X’를 출시하고, 애플이 같은 해 12월 ‘에어팟 1세대’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021년 기준 주요 제조사로는 애플, 샤오미, 삼성전자 등이 있다.

2)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무선통신 부품

25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무선통신 부품 중 이 사건 관련 부품은 크게 RFFE 부품과 Connectivity 부품으로 나뉘며, Connectivity 부품 중 와이파이(이하 Wi-Fi라

한다)/블루투스(Bluetooth, 이하 BT라 한다) 콤보(combo) 부품, 독립형(standalone) 위성측위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GNSS라 한다) 부품 및 독립형 BT 부품이 이에 해당한다.

가) RFFE 부품

26 RFFE 부품이란, 스마트기기 안테나에 송·수신되는 통신 주파수 신호의 품질을 향상하는 일련의 부품을 말한다. RFFE 부품은 신호를 증폭하고 잡음을 제거하며 원하지 않는 주파수들을 필터링함으로써, 송·수신되는 신호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27 RFFE 부품은 첫째, 통신신호를 먼 거리까지 보내기 위한 전력증폭기(Power Amplifier, PA), 둘째, 통신신호 수신 시 잡음을 줄이고 원하는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저잡음 증폭기(Low Noise Amplifier, LNA), 셋째, 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의 신호는 통과(pass)시키고 그 외 주파수에 대한 신호는 통과하지 못하도록 감쇠(stop)시키는 필터⁷⁾, 넷째, 송신·수신 신호를 번갈아 켜고 끄는 기능을 하는 스위치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된다.

28 스마트기기를 활용하기 위한 주파수 대역은 수 개의 구간으로 구분되는데, 세계 각 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은 각자의 주파수 대역 조합을 통해 사업을 영위한다.⁸⁾ 이에 스마트기기가 전 세계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40개 이상의 주파수 대역들에 대한 송·수신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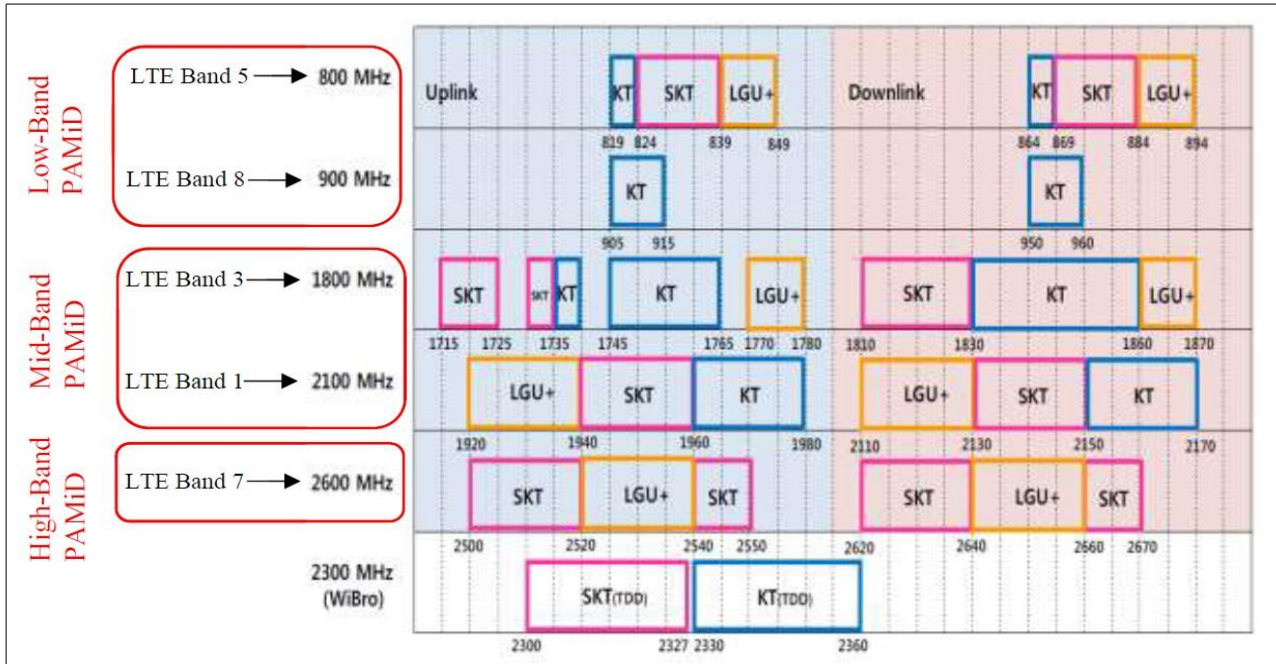
<표 삽입을 위한 여백>

7) 중·고대역에서는 각 대역(band) 간의 주파수 차이가 아주 작기 때문에 필터의 통과·감쇠가 짧은 구간 내에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BAW(Bulk Acoustic Wave, 체적탄성파) 필터 또는 고성능의 SAW(Surface Acoustic Wave, 표면탄성파) 필터가 필요하며, 관련 필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피십인들과 코보, 퀄컴의 세 업체이다. 특히 성능 측면에서 피십인들의 FBAR 필터(BAW 필터의 한 종류)가 다른 두 업체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된다.

8) 예를 들어,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LTE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해 5개의 분리된 주파수 대역(LTE Band 1, 3, 5, 7, 8)을 다르게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9>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LTE 주파수 대역



* 출처: 소갑 제4호증

29 전통적으로는 각 주파수 대역별로 개별(discrete) RFFE 부품들이 탑재되었다. 그러나 하나의 스마트기기에서 필요한 주파수 대역 수가 급증함에 따라, 주파수 대역별로 개별 RFFE 부품들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모듈(module)로 결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0 개별 RFFE 부품들의 모듈화는 여러 장점이 있다. 먼저 개별 RFFE 부품들을 통합함에 따라 추가적인 부품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제품 디자인을 향상하거나 더 많은 추가기능(카메라, 센서, 고성능 칩 등)을 위한 칩셋을 탑재할 수도 있다. 또한 개별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전력 소모량도 줄일 수 있다.

31 RFFE 모듈의 종류는 그 구성 요소의 조합에 따라 다양하다. 이 중, 전력증폭기(PA), 듀플렉서·필터, 스위치의 조합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모듈을 파워미드(Power Amplifier Module integrated Duplexer, 이하 ‘PAMiD’라 한다) 부품이라 부른다.

32 한편, PAMiD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에서 송·수신기와 안테나 간에 RF 송·수신 기능을 하는 RFFE 모듈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PAMiD는

협회의 PAMiD와 함께 PAD, LPAMiD, LPAMiF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프론트엔드 모듈(Front-end Module, FEM)이라 불리기도 한다.

<표 10> 다양한 RFFE 모듈 조합

모듈 약어	정식 명칭	구성 요소
PAD	Power Amplifier Duplexer	PA + Duplexer Filter
PAMiD	Power Amplifier Module integrated Duplexer	PA + Duplexer Filter + Switch
LPAMiD	LNA Power Amplifier Module integrated Duplexer	PA + Duplexer Filter + Switch + LNA
LPAMiF	LNA Power Amplifier Module integrated Filter	PA + Filter + Switch + LNA
MMMB	Multi Mode Multi Band	PA's + Switch
FEMiD	Front End Module integrated Duplexer	Duplexer Filter + Switch

* 출처: 소갑 제3호증

33 통상적으로 하나의 PAMiD 부품은 일정한 주파수 대역 범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는데, 담당하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각각 저대역, 중대역, 고대역, 초고대역 PAMiD 부품으로 구분된다.

34 피심인들⁹⁾과 같은 일부 PAMiD 부품 공급업체들은 이를 더욱 집약적으로 개선하여, 중대역 PAMiD 부품과 고대역 PAMiD 부품을 하나의 모듈로 결합하였다. 피심인들은 이를 OMH(One module for Mid/High-band) PAMiD 부품이라고 명명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은 OMH PAMiD 부품은 성능이나 전력소비량, 부품 공간 확보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가격 또한 비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OMH PAMiD 부품은 주로 각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의 프리미엄 제품군에 사용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9) [REDACTED]

<표 11>

주파수 대역별·제품군별 RFFE 부품 사용 예시^{주)}

주파수 대역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프리미엄	보급형	프리미엄	보급형	
저대역	Low Band LPAMiD	MMMB	Low Band LPAMiD	MMMB	단일 모듈
중대역	OMH LPAMiD		High Band PAD		
고대역					
초고대역	Ultra-High Band LPAMiF				X

주) 이 사건 관련 스마트기기 중 TWS 이어폰은 RFFE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출처: 소갑 제3호증

35 예를 들어, 갤럭시 S21 울트라와 중·고대역 RFFE 부품 조합(OMH LPAMiD)과 갤럭시 S21 기본형의 중·고대역 RFFE 부품 조합(각 대역별 모듈)을 비교해보면, S21 울트라의 조합이 크기가 더 작아 공간상 이점이 있고 소모전류도 ■% 적은 반면에 부품 가격은 ■% 정도 더 비싸다.

<표 12>

갤럭시 S21 플러스·울트라와 기본형의 RFFE 부품 조합 비교

구분	GS21 Plus / Ultra	GS21 기본형
중·고대역 모듈	OMH LPAMiD	MB PAM / HB PAM + FEMiD
도식		
면적	■ mm ²	■ mm ²
소모전류	■ mA	■ mA
총 가격	OMH LPAMiD	■
	LB LPAMiD	■
	합 계	■
	FEMiD	■
	LMH PA 류	■
	합 계	■

* 출처: 소갑 제6호증

나) Connectivity 부품

36 Connectivity 부품이란, 특정 스마트기기를 하나 또는 수 개의 다른 기기·장

치 또는 시스템과 연결하여 데이터의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부품들을 말한다. Connectivity 기능은 여러 통신 방식인 와이파이(이하 Wi-Fi라 한다), 블루투스(Bluetooth, 이하 BT라 한다), 위성측위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GNSS라 한다), 엔에프씨(Near Field Communication) 등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Wi-Fi/BT 및 GNSS 부품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1) Wi-Fi/BT 부품

37 Wi-Fi는 무선통신으로 두 개 이상의 기기를 연결해 제한된 영역 내에서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 LAN)을 형성함으로써 사용자가 그 영역 내에서는 이동하는 중에도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BT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 BT 부품을 통해 근거리에서 있는 기기 간의 데이터 전송 및 근거리 데이터 통신망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38 Wi-Fi 부품의 주요 제조사로는 피심인들, 퀄컴(Qualcomm), 마벨(Marvell) 등이, BT 부품의 주요 제조사로는 피심인들, 씨에스알(CSR), 지씨티(GCT) 등이 있다.

39 Connectivity 부품은 크게 독립형 부품(Standalone IC), 콤보 부품(Combo IC) 및 플랫폼(Integrated Platform) 부품으로 세분할 수 있다. 독립형 부품은 하나의 Connectivity 기술만을 지원하는 부품이고, 콤보 부품은 여러 Connectivity 기술을 지원하는 부품이다. 플랫폼 부품은 퀄컴의 스냅드래곤(Snapdragon)과 같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plication Processor, 이하 'AP'라 한다) 등에 여러 Connectivity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40 원칙적으로 Wi-Fi와 BT는 서로 다른 무선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을 지원하기 때문에, 각 부품을 독립적으로 탑재할 수도 있다. 다만, 공통 사용되는 부품의 크기를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프리미엄 스마트기기의 경우 두 기능이 동시에 탑재된 Wi-Fi/BT 콤보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콤보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개별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 피심

인들은 2008년 이러한 Wi-Fi/BT 콤보 부품을 최초로 개발하여 출시하였다.

41 한편, 기기에 따라 Wi-Fi/BT 기능이 내장된 AP 부품을 탑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AP 부품에 Wi-Fi/BT 기능을 내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품과의 최적화 작업에 3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어 최신 Wi-Fi/BT 기술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통상 프리미엄 제품에는 AP 부품과 별도의 Wi-Fi/BT 부품이 탑재된다.

42 TWS 이어폰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는 달리 통상 Wi-Fi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블루투스 기능만을 갖춘 독립형 BT 부품이 탑재된다.

(2) GNSS 부품

43 GNSS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위성 기반 위치 확인, 내비게이션 및 타이밍 시스템의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용어로, 통상 알려진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GNSS의 한 종류이다. GNSS 수신기는 궤도 위성의 무선 신호를 사용하여 정확한 지상 위치를 파악하고, 다양한 모바일기기 및 전자제품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내비게이션 및 위치 기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44 통상적으로, 스마트기기에 GNSS 기능을 탑재하는 방법은 해당 기능을 내장한 AP 플랫폼 부품을 사용하는 방법과 독립형 GNSS 부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다만, Wi-Fi/BT 부품과 달리 GNSS 부품은 기술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기 때문에 AP 부품에 내장된 GNSS 기능이 독립형 GNSS 부품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스마트기기의 AP 부품이 이미 GNSS 기능을 제공한다면 별도 독립형 GNSS 부품을 탑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불필요한 재료비 지출과 공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독립형 GNSS 부품을 탑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3) 스마트기기용 부품 시장현황

가) RFFE 부품 시장

45 RFFE 부품의 경우 위 1. 마. 2) 가)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PA, LNA, 필터, 스위치 등 다양한 종류의 부품들이 존재하고, 그 조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모듈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RFFE 부품 중 이 사건 행위사실과 연관성이 높으며, 프리미엄 제품군에 탑재되는 OMH PAMiD 부품과 이와 구분되는 저대역 PAMiD 부품 시장에 대하여 각각 서술한다.

46 PAMiD 부품은 주파수 대역에 따라 저대역 PAMiD와 중·고대역 PAMiD 부품으로 나뉜다. 일부 제조사들은 모든 대역 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자신이 강점을 갖는 특정 대역 제품을 중점적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예컨대, 중·고대역 PAMiD 부품은 피심인들, 코보(Qorvo), 퀄컴이 주로 경쟁하고 있으며,¹⁶⁾ 저대역 PAMiD 부품은 스카이웍스(Skyworks), 코보, 퀄컴, 무라타(Murata) 등이 주요 사업자이다.

(1) 중·고대역 PAMiD 부품 시장

47 주요 중·고대역 PAMiD 부품제조사의 선적량 변동 추이를 보면, 2018년부터 개별 중·고대역 PAMiD 부품의 선적량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이들이 통합된 OMH PAMiD 부품의 선적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1년 1분기에는 각 제조사별로 개별 중·고대역 PAMiD 부품이 거의 공급되지 않고 있는바, 중·고대역 PAMiD 부품 시장이 OMH PAMiD 부품 시장으로 사실상 재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이 같은 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이하에서는 개별 중·고대역 및 OMH PAMiD 부품 시장을 통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48 2021년 1분기 선적량을 기준으로 세계 중·고대역 PAMiD 부품 시장에서 피

16) 피심인들이 2018년 OMH PAMiD를 최초로 출시한 후, 2018년 말 코보도 OMH PAMiD를 출시하였고, 2020년에는 퀄컴도 OMH PAMiD를 출시하여 시장에 진입하였다.

17) 퀄컴이 2022. 1. 7. 제출한 '시장획정에 관한 전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 중대역 PAMiD 및 고대역 PAMiD 부품의 판매금액이 전체 중·고대역 PAMiD 판매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42%에서 2019년 18%로 급감하였고,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OMH PAMiD 판매금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개별 중대역 PAMiD 및 고대역 PAMiD 부품이 급격하게 OMH PAMiD 부품으로 대체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소갑 제7호증).

심인들은 49.8%로 확고한 1위 사업자이고, 2위는 33.5%의 코보, 3위는 12.2%의 켈컴이다. 다만, 피심인들의 점유율은 2018년 66.4%에서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2위 코보와 3위 켈컴의 점유율은 2018년 각각 23.8%와 1.9%에서 2021년 1분기 33.5%와 12.2%로 상승하였다.

<표 13> 세계 MB, HB, OMH PAMiD 부품 시장 선적량 및 점유율

(단위: 백만 개)

업체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피심인들	407.9(66.4%)	342.0(65.7%)	267.0(54.9%)	67.0(49.8%)
코보	146.0(23.8%)	130.5(25.0%)	173.1(35.7%)	45.0(33.5%)
켈컴	12.0(1.9%)	18.0(3.5%)	12.0(2.5%)	16.5(12.2%)
스카이웍스	48.0(7.9%)	30.0(5.8%)	34.0(6.9%)	6.0(4.5%)
합계	613.9(100%)	520.5(100%)	486.1(100%)	134.5(100%)

* 출처: Navian Inc.(2021), 소갑 제8호증

49 최근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OMH PAMiD 부품¹⁸⁾만 따로 보면 피심인들의 점유율은 보다 높아진다. 피심인들은 OMH PAMiD 부품을 최초로 출시한 2018년에는 92.4%의 점유율을 기록하였고, 코보와 켈컴이 OMH PAMiD 부품을 출시하면서 차츰 점유율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2021년 1분기 기준 여전히 50.4%로 과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14> 세계 OMH PAMiD 부품 선적량 및 점유율

(단위: 백만 개)

업체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피심인들	120.9(92.4%)	230.0(77.3%)	235.0(59.2%)	65.0(50.4%)
코보	10.0(7.6%)	67.5(22.7%)	148.1(37.3%)	45.0(34.9%)
켈컴	-	-	-	15.0(11.6%)
스카이웍스	-	-	14.0(3.5%)	4.0(3.1%)
합계	130.9(100%)	297.5(100%)	397.1(100%)	129(100%)

* 출처: Navian Inc.(2021), 소갑 제8호증

(2) 저대역 PAMiD 부품 시장

18) 켈컴은 2022. 1. 7. 제출한 '시장획정에 관한 전문가 보고서'에서, OMH PAMiD 부품은 기본적인 기능 자체만 놓고 보면 개별 중대역 PAMiD와 고대역 PAMiD 부품으로 대체될 수 있으나, 기술적 우월성이나 효율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별 PAMiD 부품으로 대체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OMH PAMiD 부품 자체가 개별 PAMiD 부품과 별도의 관련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소갑 제7호증).

50 세계 저대역 PAMiD 부품 시장의 경우, 선적량을 기준으로 스카이웍스가 2019년 이후 60%대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며 확고한 1위 사업자이다. 이에 비해, 무라타의 점유율은 2018년 18.0%를 기록한 이후 매년 계속 감소하여 2021년 1분기 8.0%를 기록하였다.

<표 15> 세계 저대역 PAMiD 부품 시장 선적량 및 점유율

(단위: 백만 개)

업체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스카이웍스	164.9(45.5%)	239.0(60.1%)	289.1(66.6%)	80.0(64.0%)
퀄컴	65.0(18.0%)	46.3(11.6%)	50.0(11.5%)	22.0(17.6%)
코보	67.0(18.5%)	51.7(13.0%)	55.0(12.7%)	13.0(10.4%)
무라타	65.0(18.0%)	60.5(15.3%)	40.0(9.2%)	10.0(8.0%)
합계	361.9(100%)	397.5(100%)	434.1(100%)	125(100%)

* 출처: Navian Inc.(2021), 소갑 제8호증

나) Wi-Fi/BT 콤보 부품 시장

51 피심인들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에 사용되는 Wi-Fi/BT 콤보 부품 시장¹⁹⁾에서 90% 내외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퀄컴, 미디어텍, 인텔 등 다른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최대 5% 미만이다.

<표 16> 세계 스마트폰·태블릿용 Wi-Fi Combo 부품 시장 선적량 및 점유율

(단위: 백만 개)

업체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반기
피심인들	670.24(97.5%)	673.36(98.0%)	450.30(89.5%)	379.52(86.1%)	189.54(86.6%)
인텔	6.65(1.0%)	5.90(0.9%)	2.24(0.4%)	2.48(0.6%)	1.16(0.5%)
미디어텍	-	-	16.78(3.3%)	18.58(4.2%)	8.73(4.0%)
퀄컴	-	-	12.30(2.4%)	16.24(3.7%)	8.37(3.8%)
기타	10.30(1.5%)	7.51(1.1%)	21.47(4.4%)	23.79(5.4%)	11.19(5.1%)
합계	687.19(100%)	686.77(100%)	503.09(100%)	440.61(100%)	218.99(100%)

* 출처: ABI Research(2021), 소갑 제8호증

19) ABI Research의 시장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스마트폰·태블릿 시장에서는 독립형(standalone) Wi-Fi 부품의 선적량은 파악되지 않고, 오직 Wi-Fi/BT 콤보(Combo) 부품의 선적량만 파악된다. 독립형 Wi-Fi 부품은 위 기간 동안 피쳐폰 시장 및 기타 시장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되며, 주요 사업자는 미디어텍(MediaTek), NXP, 퀄컴 등이다.

다) 독립형 BT 부품 시장

52 독립형 BT 부품 시장은 TWS 무선 이어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지난 수년간 계속 확대되었다. 독립형 BT 부품 시장은 상대적으로 고가·고성능인 하이엔드(high end) 제품을 공급하는 소수의 공급업체와 중저가·보급형 성능인 로우엔드(low end)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업체로 구성된다. 하이엔드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로는 피심인들과 쉐일컴, 베스테크닉(Bestechnic Shanghai Co., 이하 'BES'라 한다) 등을 꼽을 수 있다.

53 세계 전체 독립형 BT 부품 시장²⁰⁾에서는 선적량을 기준으로 노르딕(Nordic)과 쉐일컴이 20% 내외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피심인들의 경우 선적량 기준으로는 3~6%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상위 10개사를 제외한 기타 제조사의 비중이 40% 내외에 달하는 등 상대적으로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다.

<표 17> 세계 독립형 BT 부품 시장 선적량 및 점유율

(단위: 백만 개)

업체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반기
노르딕	-	372.21(21.7%)	303.43(16.3%)	382.84(19.2%)	263.14(23.0%)
쉐일컴	232.68(15.2%)	264.08(15.4%)	406.88(21.9%)	361.26(18.1%)	170.62(14.9%)
다이얼로그	-	115.34(6.7%)	150.32(8.1%)	161.80(8.1%)	106.24(9.3%)
사이프러스	109.87(7.2%)	138.81(8.1%)	153.50(8.2%)	165.73(8.3%)	94.58(8.3%)
미디어텍	55.73(3.6%)	10.66(0.6%)	130.74(7.0%)	139.49(7.0%)	45.82(4.0%)
피심인들	95.49(6.2%)	65.20(3.8%)	56.69(3.0%)	59.21(3.0%)	41.66(3.6%)
마벨	127.27(8.3%)	22.10(1.3%)	7.41(0.4%)	-	-
NXP	51.10(3.3%)	65.91(3.8%)	72.88(3.9%)	84.11(4.2%)	25.33(2.2%)
TI	109.51(7.1%)	82.39(4.8%)	27.33(1.5%)	29.42(1.5%)	16.79(1.5%)
인텔	7.18(0.5%)	8.00(0.5%)	15.51(0.8%)	18.11(0.8%)	12.11(1.1%)
STM	10.61(0.7%)	49.43(2.9%)	18.22(1.0%)	19.61(1.0%)	11.19(1.0%)
기타	735.92(47.9%)	524.00(30.4%)	517.94(27.7%)	577.31(28.8%)	354.89(31.1%)
합계	1,535.36(100%)	1,718.13(100%)	1,860.85(100%)	1,998.89(100%)	1,142.37(100%)

* 출처: ABI Research(2021), 소갑 제8호증

20) ABI Research의 시장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스마트폰·태블릿 시장에서의 독립형 BT 부품의 선적량은 파악되지 않는다. 한편, TWS 이어폰 시장만을 특정하여 독립형 BT 부품 시장점유율을 파악한 자료는 부재한 실정으로, 독립형 BT 부품의 전체 시장 점유율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라) 독립형 GNSS 부품 시장

54 피심인들은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독립형 GNSS 부품 세계 시장에서 확고한 1위 사업자이다. 다만, 피심인들의 점유율은 매해 감소하여, 2017년 69.1%에 달하던 점유율은 2021년 상반기 기준 34.3%로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10%를 넘지 못하여 피심인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8> 세계 독립형 GNSS 부품 시장 선적량 및 점유율

(단위: 백만 개)

업체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반기
피심인들	399.09(69.1%)	406.75(67.6%)	143.46(44.0%)	122.39(41.1%)	52.16(34.3%)
미디어텍	37.68(6.5%)	30.31(5.0%)	20.56(6.3%)	16.14(5.4%)	7.17(4.7%)
퀄컴	17.46(3.0%)	17.94(3.0%)	18.42(5.7%)	17.93(6.0%)	10.35(6.8%)
STM	13.09(2.3%)	14.84(2.5%)	14.62(4.5%)	16.03(5.4%)	10.30(6.8%)
마벨	10.02(1.7%)	8.64(1.4%)	1.63(0.5%)	1.28(0.4%)	0.71(0.5%)
인텔	8.51(1.5%)	9.95(1.7%)	9.28(2.8%)	9.00(3.0%)	5.20(3.4%)
TI	6.27(1.0%)	7.85(1.3%)	7.31(2.2%)	5.39(1.8%)	2.06(1.4%)
삼성전자	4.73(0.7%)	6.02(1.0%)	5.48(1.7%)	5.35(1.8%)	3.09(2.0%)
기타	81.08(14.0%)	99.35(16.5%)	105.18(32.3%)	103.99(35.1%)	60.85(40.1%)
합계	577.93(100%)	601.65(100%)	325.94(100%)	297.5(100%)	151.89(100%)

* 출처: ABI Research(2021), 소갑 제8호증

4) 스마트기기 제조사와 부품제조사 간 거래 구조

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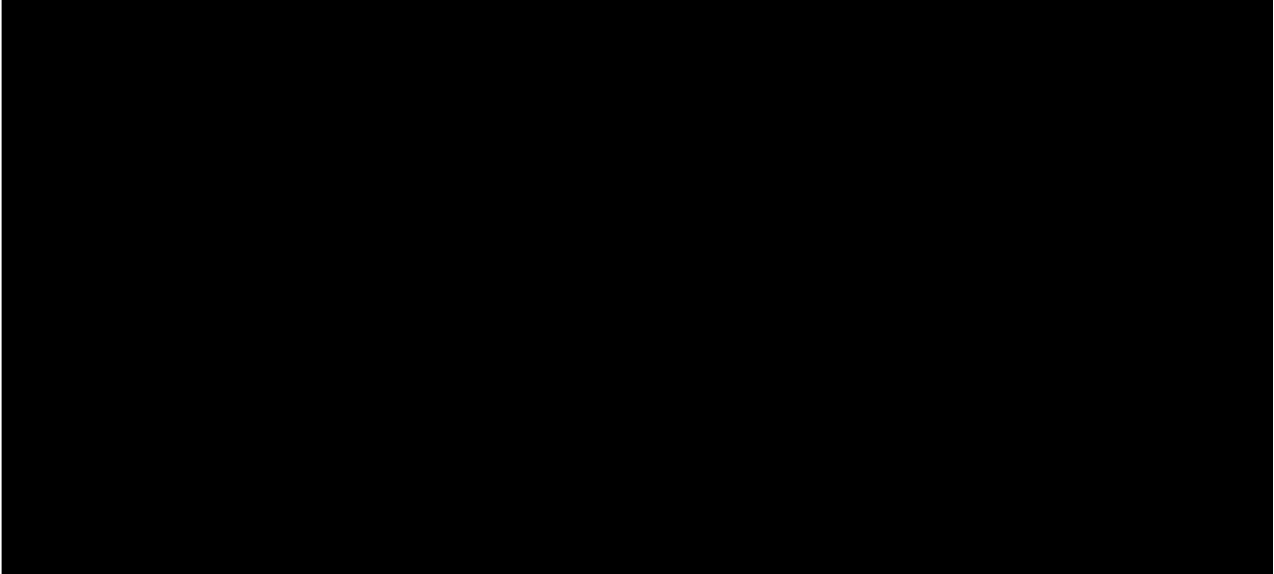
55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제품에 사용될 부품을 결정·구매하는 절차는 개발 단계와 조달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개발 단계에서는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제품에 적용할 부품 사양 결정, 부품 공급 협력사 선정, 부품 가격 협의·결정 등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조달 단계에서는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각 협력사별·부품별로 발주에 소요되는 시간(Lead Time)²¹⁾을 고려하여 발주를 진행하고 부품 출고 및 대금 지급 등 실

21) 제품의 주문일시와 인도일시 사이에 경과된 시간을 말하며, 이하 ‘리드타임’이라 한다.

제 거래가 이루어진다.

<표 19>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부품 구매 절차 개관



* 출처: 소갑 제6호증

56 이하에서는 스마트기기 제조사와 부품제조사 간 거래 구조를 설명하되, 피심인들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행위와 직접 관련된 삼성전자의 부품 결정·구매 절차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나) 스마트기기 부품 개발·선정·구매 및 재고관리

(1) 부품 개발

57 개발 단계는 통상 부품제조사가 부품 개발계획(Road Map)을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피심인들을 비롯한 부품제조사는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새로운 부품에 대한 개발계획을 소개하면서 향후 1~3년 동안 어떤 부품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공유한다.

58 스마트기기 제조사는 위 개발계획을 기반으로 개발일정, 기술관리, 조달 등에 관하여 부품제조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제품에 향후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59 삼성전자의 경우 부품제조사는 삼성전자 소속 [REDACTED]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시작한다. 협의를 진행됨에 따라, 부품제조사는 [REDACTED] [REDACTED] 이를 통해 구매 대상 부품의 [REDACTED] 를 정한다.

(2) 부품 및 공급업체 선정

60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협의와 함께 부품제조사와 스마트기기 제조사 구매담당 부서 간의 가격 협상도 진행된다. 통상 부품제조사가 먼저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분기별²³⁾·지역별²⁴⁾로 나누어 부품 가격을 제안한다. 이후 부품제조사는 스마트기기 제조사와 개별 부품가격 및 구매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며, 구매수량(탑재 대상 모델), 누적 구매량에 따른 가격 할인 등의 조건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61 기기에 탑재될 부품을 선정하는 시기는 각 제조사별 또는 세부부품별로 차이가 있으나, 삼성전자는 일반적으로 제품 양산으로부터 약 [REDACTED]개월 전에 특정 부품의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각 부품제조사로부터 받은 개발계획(Road Map)을 기초로 해당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제조사중에서 가격, 공급안정성 및 재무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추후 제품 승인 과정에서 부품에 관한 세부 사양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62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어떤 부품제조사를 특정 스마트기기 모델의 부품 공급

22) 스마트기기에 PAMiD 모듈 등 부품의 크기를 고려하여 실제 장착 가능성을 검토하는 엔지니어를 말한다.

23) 피싱인들과 삼성전자 간의 계약의 경우, [REDACTED] 공급가격을 제안하였다.

24) 피싱인들과 삼성전자 간의 계약의 경우, [REDACTED] 공급가격을 제안하였다.

사로 선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스마트기기 모델의 거래종료 시까지 부품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마트기기 제조사와 부품제조사 간에 별도의 서면계약이나 기본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으며, 개별 구매주문서를 통해 구체적인 계약 수량과 구매단가를 결정한다.

63 물론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따라 부품제조사와 부품 공급에 관한 기본계약 (Master Agreement) 등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한 총칙이나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구매수량이나 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계약에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64 삼성전자의 경우 피심인들과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3) 부품 조달(구매)

65 통상적으로 부품 조달은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예상 발주수량(Forecast, 이하 'FCST'라 한다) 통지,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이하 'PO'라 한다) 발행 및 이에 대한 부품제조사의 회신(Return to Proposal, 이하 'RTP'라 한다)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가) FCST 발행

66 FCST 발행은 PO 발행으로부터 약 [REDACTED]주 전에 예상 발주수량을 미리 알리는 절차이다. 위 [REDACTED]주의 기간은 사업자나 부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마트기기 제조사와 부품제조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67 피심인들의 경우, [REDACTED]

[Redacted]

(나) PO 발행

68 스마트기기 제조사는 제품의 생산계획에 맞추어 매주 PO를 발행한다. PO에는 각 부품별 주문수량과 함께 요청 배송일자(requested delivery date) 등을 기재하며, 사전에 스마트기기 제조사와 부품제조사 간 협의된 발주 리드타임을 고려하여 발주 및 조달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한다.

69 삼성전자는 피싱인들에게 매주 [Redacted]일과 [Redacted]일에 PO를 발행한다. 양사 간 사전 협의된 발주 리드타임에 맞추어, 일반적으로 Connectivity 부품(Wi-Fi/BT, GNSS 등)은 [Redacted]주, RFFE 부품(OMH-PAMiD 등)은 [Redacted]의 리드타임을 두고 PO를 발행한다.²⁶⁾

70 [Redacted]

71 PO 발행은 통상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삼성전자는 미국 법인인 [Redacted]의 PO 시스템을 통해 피싱인들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에 PO를 발행한다. [Redacted]

25) 웨이퍼란 반도체를 만드는 토대가 되는 얇은 원판을 의미한다.
26) 다만, 2020년 이후 피싱인들의 부품별 리드타임이 증가하여, OMH PAMiD 부품의 리드타임은 기존 [Redacted]주에서 2020. 4. 14. 기준 [Redacted]주, 2021. 1. 18. 기준 [Redacted]주로 연장되었고, Connectivity 부품은 기존 [Redacted]주에서 2020. 4. 14. 기준 [Redacted]주, 2021. 1. 18. 기준 [Redacted]주로 연장되었다. 심지어 BT/GNSS 중 일부 부품의 리드타임은 2021. 3. 15.부터 [Redacted]주로 연장되었다(출처: 소갑 제9호증).

위와 같은 PO 등록을 통상 'PO 수령 (acceptance)'이라 한다.

(다) RTP 송부

72 스마트기기 제조사로부터 PO를 발행받은 부품제조사는 선적일정 등을 포함하여 PO에 대한 회신(RTP)을 발송한다.

73 피심인들의 경우 PO 발행 후 [redacted] 방식으로 RTP를 송부한다. [redacted] 이와 같이 피심인들이 PO를 수령한 이후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선적예정일을 제공하는 것을 'PO 승인 (acknowledgement)'이라 한다.

(라) 출하·선적

74 RTP 송부 이후 부품제조사는 RTP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부품의 출하 및 선적을 진행하며, 스마트기기 제조사 또한 위 일정에 따라 발주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부품 수급을 조절한다.

(4) 대금결제

75 스마트기기 제조사는 부품제조사에게 PO를 발행할 때 통상 [redacted]일에서 [redacted]일 정도의 지급기한(Terms of Payment)을 기재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통상 피심인들을 상대로 PO를 발행할 때, 부품 선적일로부터 [redacted]일([redacted] Days from Doc. Date) 내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기재한다. 다만, 실제 삼성전자는 지급기한 말일보다 [redacted]일 정도 앞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은 [redacted]

(5) 수급조절 및 재고관리

76 스마트기기는 2~3년의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생산·판매되는 거래주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스마트기기 제조사는 시장 상황 및 개별 모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부품별 재고보유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은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고를 많이 보유하지는 않는다. 삼성전자의 경우 통상 ■주에서 ■주 치 재고를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77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통상적인 부품 재고가 많지 않고 신규 부품의 발주에는 12주 이상의 리드타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부품 공급 중단 시에는 생산 라인의 가동중단 등 사업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6) 기술지원

78 부품제조사는 해당 스마트기기 제품의 수명주기(product life-cycle) 동안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위 수명주기에는 스마트기기 제품의 개발 단계와 양산 단계가 모두 포함된다.

79 개발 단계에서의 기술지원 과정을 NPI(New Product Introduction)라 한다. NPI는 스마트기기 제조사와 부품제조사 간 제품 정의(production definition), 아키텍처(architecture), 기술 채택(technology selection)부터 시작된다. 이후 설계와 샘플을 만드는 과정을 수 차례 반복하는데, 여기에는 최초 프로토타입(first prototypes), 최초 시스템 작동(first system turn on), 시스템 최적화(system optimization), 초기 품질검사(initial qualification), 특성화(characterization), 품질 분포 분석(performance distribution analysis), 최종 품질검사(full qualification), 형식인증(type approval) 및 환경검사(environmental testing) 등의 과정이 포함된다.

80 양산 단계에서도 부품제조사 기술지원이 계속된다. 부품제조사는 생산 시 발생하는 품질 문제를 조사·해결하고, 유지보수용 업데이트 등의 기술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모듈 및 하드웨어 지원, 필요한 경우 현장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81 삼성전자가 피심인들로부터 공급받는 부품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피심인들이 제공하는 부품의 펌웨어(Firmware)²⁷⁾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해당 펌웨어의 동작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내부의 소스코드를 알 수 없어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직접 해결할 수 없다.²⁸⁾ 따라서 개발 또는 양산 단계에서 오류 발생 등으로 펌웨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피심인들이 기술지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해주어야 한다.

82 삼성전자는 피심인들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시 [REDACTED]의 [REDACTED] 단계로 긴급성·중요도 등급을 분류한다. 통상적으로 [REDACTED] 경우나 [REDACTED] 경우 긴급성이 높다.²⁹⁾ 긴급성이 높은 이슈에 대해서는 [REDACTED]일 정도의 기한을 두고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REDACTED]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부품제조사 선정 전략

83 스마트기기 제조사는 기기에 탑재할 부품의 제조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품제조사를 하나로 일원화할 것인지, 여러 부품제조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것인지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84 하나의 부품제조사로 공급선을 일원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 부품제조사가

27) 부품 하드웨어의 제어 및 구동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로서 명령어(Source Code, 이하 소스코드라 함)를 이진수 형식(Binary type)으로 번역(Compile)한 파일을 말한다.

28) 부품의 기능을 수정 및 개선하기 위해서는 펌웨어의 소스코드를 해석·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삼성전자는 [REDACTED]

29) 개발 단계에서 적시에 기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체 개발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양산 단계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제품의 오류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불만에 곧바로 대응할 수 없어 소비자 관련 이슈(C/S)가 발생한다.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제품에 적합한 신규 시설이나 신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제품사양 및 요구사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통해 품질 개선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규모 발주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한 가격 인하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단일 부품제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취약성이 증대되는 단점이 있다.

85 여러 부품제조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다원화 전략을 취하는 경우, 부품제조사 선정 및 발주의 관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일부 부품제조사의 공급 중단이나 지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최종 완제품의 생산에 차질을 빚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여러 부품제조사 간의 공급 경쟁을 통해 부품의 품질 개선, 구매비용 하락, 공급기간 단축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86 주요 스마트기기 제조사는 기본적으로 부품 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공급사 간의 건전한 경쟁에 따른 부품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급 다원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때로는 매우 드물게 신기술을 선도하는 단일한 부품제조사와 일시적으로 전략적 협력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복수 부품 제조사의 공급 단계에서의 경쟁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높은 품질의 부품을 공급받는 것을 선호한다.

87 삼성전자는 부품 공급의 다원화와 관련하여 특정 부품제조사가 시장을 독점하여 경쟁 부품제조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고, 이를 위해 경쟁 부품제조사의 기술 진보를 계속하여 주시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품제조사로부터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부품을 공급받을 기회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³⁰⁾

88 애플 또한 상업적·기술적 측면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단일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것을 피하고자 하며,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하였다.³¹⁾

30) 출처: 소갑 제9호증

31) 출처: 소갑 제10호증

89 엘지전자도 기본적으로 복수의 부품제조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급적 표준부품을 채택하려고 노력한 후 각 제조사별 가격, 생산능력 등을 비교하여 제조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³²⁾

5) 삼성전자와 피심인들 간의 거래 현황

가)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납품방식: 직납 또는 비직납

90 삼성전자는 피심인들로부터 공급받는 부품을 다른 부품들과 함께 모듈화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품제조사로부터 직접 납품을 받기도 하고 [REDACTED] 등 협력사의 추가 공정을 거쳐 납품을 받기도 한다.

9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MH PAMiD 등 RFFE 부품과 독립형 GNSS 부품은 [REDACTED]. 반면 Wi-Fi/BT 콤보 부품이나 독립형 BT 부품은 [REDACTED] 등 [REDACTED].³³⁾

나) 삼성전자의 최근 5년간 주요 부품 공급업체 선정 내역

92 삼성전자가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하는 부품은 구매 당시의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고가 부품들로, 대부분 프리미엄 스마트폰³⁴⁾ 등에 사용된다. 삼성전자가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하는 부품의 종류는 OMH PAMiD, Wi-Fi /BT 콤보, 독립형 BT, 독

32) 출처: 소갑 제11호증

33) 삼성전자가 피심인들 부품을 협력사의 공정을 거쳐 납품받는 경우 피심인들은 [REDACTED]에 부품을 공급하며, [REDACTED] 등의 협력사는 [REDACTED]으로부터 해당 부품을 공급받아 모듈화 공정을 거쳐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34)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보급형 스마트폰을 구분하는 확립된 기준은 없으나, 이 사건 당시 삼성전자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유통채널 판매가격) 기준 미화 [REDACTED]달러 이상인 스마트폰을 프리미엄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해당 분류기준에 따른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군은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군의 분류>

립형 GNSS 부품 등이 있다.

(1) OMH PAMiD 부품

93 피싱인들은 2018년 중대역과 고대역 주파수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OMH PAMiD 부품을 최초로 출시하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S9(2018년 2월 출시) 및 갤럭시 노트9(2018년 8월 출시) 제품 전량에 [REDACTED] OMH PAMiD 부품을 사용하였다.

94 2018년 말 [REDACTED]도 OMH PAMiD 부품을 출시하였다. 삼성전자는 공급 안정성을 위해 미주향³⁵⁾ 갤럭시 S10(2019년 2월 출시) 및 갤럭시 S20(2020년 2월 출시)에 [REDACTED]의 OMH PAMiD 부품을 사용하였다. 다만, 나머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REDACTED]의 OMH PAMiD 부품을 사용하였다.

<표 20>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OMH PAMiD 부품 사용 현황

구분	제품군 ^{주1)}	S9	노트9	S10	노트10	S20	노트20 ^{주2)}	S21 ^{주2)}
		출시일	18. 2.	19. 2.	19. 2.	19. 8.	20. 2.	20. 8.
지역별 분류	구주향	[REDACTED]						
	미주향	[REDACTED]						

주1) 각 제품군은 기본형, 플러스, 울트라 등 세부 제품군으로 구성된다.

주2) 갤럭시 노트20 기본형 중 구주향 및 S21 기본형에는 [REDACTED] OMH PAMiD 부품이 아닌 [REDACTED]의 MMMB 부품이 탑재되었다.

* 출처: 소갑 제9호증

95 한편, 삼성전자는 2019년 9월 출시된 폴드 모델과 2020년 8월 출시된 Z폴드2 모델에는 [REDACTED] 제품을, 2020년 2월 출시된 Z플립 모델과 2021년 8월 출시된 Z플립3 모델에는 [REDACTED] 제품을 탑재하였다. 2020년 [REDACTED]도 OMH PAMiD 부품을 출시하자 삼성전자는 이를 미주향 갤럭시 Z폴드3(2021년 8월 출시) 제품에 사용하였다.

분류기준		제품군
프리미엄(Premium)	플래그십(Flagship)	갤럭시 S, 노트 시리즈
	폴더블(Foldable)	Z플립(Flip), Z폴더(Folder) 시리즈
보급형(Mass)		갤럭시 A, J, M 시리즈 등

35) 통상 미주향은 미국·캐나다·중국·일본에 출시되는 제품을 말하고, 구주향은 유럽·한국 등 미주향 외 나머지 지역에 출시하는 제품을 말한다. 따라서 국내에 출시되는 기기는 구주향 제품으로 분류된다.

<표 21>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OMH PAMiD 사용 현황

구분	제품군	폴드	Z플립	Z폴드2	Z플립3	Z폴드3
		출시일	19. 9.	20. 2.	20. 8.	21. 8.
지역별 분류	구주향					
	미주향					

* 출처: 소갑 제9호증

96 프리미엄 태블릿 PC 제품인 갤럭시 탭 S 시리즈의 경우 OMH PAMiD 부품을 탑재하지 않다가, 2019년 8월 출시된 갤럭시 탭 S6과 2020년 9월 출시된 갤럭시 탭 S7 모델에서는 ■■■의 OMH PAMiD 부품을 탑재하였다.

<표 22> 삼성전자 갤럭시 탭 S 제품군 OMH PAMiD 부품 사용 현황

제품군	탭 S3	탭 S4	탭 S6 ^주	탭 S7
출시일	17. 3.	18. 8.	19. 8.	20. 9.
사용 현황	-	-		

주) 갤럭시탭 S5 제품군은 출시되지 않았다.

* 출처: 소갑 제6호증

(2) Wi-Fi/BT 콤보 부품

97 삼성전자는 2009년 갤럭시 S 및 2011년 갤럭시 노트 제품부터 현재까지 모든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품에 ■■■ Wi-Fi/BT 콤보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

<표 23>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Wi-Fi/BT 콤보 부품 사용 현황

제품군	S8	노트8	S9	노트9	S10	노트10	S20	노트20	S21
출시일	17. 3.	17. 8.	18. 2.	19. 2.	19. 2.	19. 8.	20. 2.	20. 8.	21. 1.
사용 현황									

* 출처: 소갑 제9호증

98 한편, ■■■도 2019년 Wi-Fi/BT 콤보 부품을 출시하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공급 다원화를 위하여 폴더블 시리즈인 갤럭시 Z플립(2020년 2월 출시), Z폴드2(2020년 8월 출시), Z플립3(2021년 8월 출시), Z폴드3(2021년 8월 출시)에 ■■■의

Wi-Fi/BT 콤보 부품을 사용하였다.

<표 24>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Wi-Fi/BT 콤보 부품 사용 현황

제품군	폴드	Z플립	Z폴드2	Z플립3	Z폴드3
출시일	19. 9.	20. 2.	20. 8.	21. 8.	21. 8.
사용 현황					

* 출처: 소갑 제9호증

99 프리미엄 태블릿 제품인 갤럭시 탭 S 시리즈의 경우, 2017년 3월 출시된 갤럭시 탭 S3부터 2020년 9월 출시된 갤럭시 탭 S7 모델까지 모두 [REDACTED]의 Wi-Fi/BT 콤보 부품이 탑재되었다.

<표 25> 삼성전자 갤럭시 탭 S 시리즈 Wi-Fi/BT 콤보 부품 사용 현황

제품군	탭 S3	탭 S4	탭 S6	탭 S7
출시일	17. 3.	18. 8.	19. 8.	20. 9.
사용 현황				

* 출처: 소갑 제6호증

(3) 독립형 BT 부품

100 TWS 이어폰에는 Wi-Fi 등 다른 기능 없이 오직 블루투스 기능만을 갖춘 독립형 BT 부품을 탑재한다. TWS 이어폰은 스마트기기와 연결하면 될 뿐 독자적으로 Wi-Fi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까지 출시된 자사의 TWS 이어폰에는 모두 [REDACTED] 독립형 BT 부품을 사용하였으나, 2021년 8월 출시된 갤럭시 버즈2에는 [REDACTED]의 부품을 채택하였다.

<표 26> 삼성전자 TWS 이어폰 독립형 BT 부품 사용 현황

제품군	버즈	버즈플러스	버즈라이브	버즈프로	버즈2
출시일	19. 3.	20. 2.	20. 8.	21. 1.	21. 8.
사용 현황					

* 출처: 소갑 제6호증

(4) 독립형 GNSS 부품

101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REDACTED] 및 [REDACTED] (이하 [REDACTED]라 한다)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AP를 사용하고 있는데,³⁶⁾ [REDACTED] AP는 GNSS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독립형 GNSS 부품 탑재가 필요치 않으나, [REDACTED] AP는 GNSS 기능을 내장하고 있지 않아 독립형 GNSS 부품의 탑재가 필요하다.³⁷⁾

102 삼성전자는 [REDACTED] AP를 사용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³⁸⁾에 전량 [REDACTED] 독립형 GNSS 부품을 사용하였다.³⁹⁾

다) 삼성전자의 RFFE 및 Connectivity 부품 거래 내역

103 2017년부터 2021년 1분기까지 피심인들의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대한 연도별 매출액은 다음 <표 27>와 같다. RFFE 부품을 담당하는 WSD 사업부의 매출액은 2018년 [REDACTED] 달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REDACTED] 달러에 그쳤다. Connectivity 부품을 담당하는 WCC 사업부의 경우 2017년 483백만 달러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0년 [REDACTED]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WSD 사업부 매출액은 2021년 반등하여 2021년 9월까지의 매출액([REDACTED] 달러)이 2020년 전체 매출액([REDACTED] 달러)에 거의 육박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36) 삼성전자는 [REDACTED] 스마트폰에 [REDACTED] AP를, [REDACTED]에 [REDACTED]의 AP를 탑재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REDACTED] [REDACTED] AP를 탑재하였고, [REDACTED] [REDACTED] AP를 탑재하였다.

37) 앞서 1. 마. 2)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기기에 GNSS 기능을 탑재하는 방법은 해당 기능을 내장한 AP 부품을 사용하는 방법과 독립형 GNSS 부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38) 2017. 1. 1.부터 2021. 6. 30. 사이에 출시된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갤럭시 S, 노트, 폴더블 시리즈)을 기준으로 [REDACTED] AP가 탑재된 비율은 약 [REDACTED]%이다.

39) 출처: 소갑 제9호증

<표 27>

삼성전자에 대한 피심인들 WSD/WCC 사업부 매출액

(단위: 천 달러(USD))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9월	합계
WSD						
WCC						
합계						

* 출처: 소갑 제5호증

104 삼성전자가 제출한 스마트기기용 RFFE 및 Connectivity 부품 구매 내역을 보더라도 비슷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105 삼성전자가 ████████들의 OMH PAMiD 부품을 구매한 비중은 2017년 ███%에서 2020년 ███%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21년 10월에는 ███%로 반등하였다. 반면 █████ OMH PAMiD 부품 구매비중은 2018년 █████%에서 2020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10월에는 ███%에 그쳤다.

106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Wi-Fi/BT 콤보 부품은 전량 ██████████에게서 구매하였다. 다만, 플래그십 스마트폰 이외의 스마트기기 제품에는 ████████의 Wi-Fi/BT 콤보 부품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의 Wi-Fi/BT 콤보 부품 구매비중은 2017년 ███%에서 2021년 10월 ███%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7 독립형 GNSS 부품의 경우,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포함한 대부분의 스마트기기 제품군에 ████████의 독립형 GNSS 부품을 사용하였다. 2020년까지는 ████████의 독립형 GNSS 부품이 보급형 제품군(갤럭시 J 시리즈, 갤럭시 탭 A 시리즈)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그 비중은 크지 않았고, 2021년의 경우 10월까지도 오직 ████████의 독립형 GNSS 부품만 사용되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8> 삼성전자의 피싱인들 이 사건 부품 구매 비중(수량 기준)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0월
RFFE	OMH PAMiD	피싱인들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코보					
Wi-Fi /BT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피싱인들					
		전체					
	퀄컴						
GNSS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피싱인들					
		전체					
	삼성전자 S.LSI						
	퀄컴						
독립형 BT		피싱인들					
		BES					

주) 직납 및 비직납 모두 포함(이하 같음)

* 출처: 소갑 제6호증

108 위와 같은 부품제조사별 구매비중의 추이를 구매금액 기준⁴⁰⁾으로 살펴보면 피싱인들의 비중이 조금씩 더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2021년 10월 OMH PAMiD 부품의 경우 피싱인들은 수량 기준 [Redacted]%, 금액 기준 [Redacted]를 차지하였고, 전체 Wi-Fi/BT 콤보 부품의 경우 수량 기준 [Redacted]%, 금액 기준 [Redacted]를, 전체 독립형 BT 부품의 경우 수량 기준 [Redacted]%, 금액 기준 [Redacted]를 차지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40) 삼성전자가 피싱인들 부품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피싱인들의 부품이 포함된 타사의 모듈 형태로 공급받는 경우(비직납)에는 '피싱인들의 개별 부품 가격'이 아닌 '모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모듈 가격에는 부품 가격 외에 주변 소자 및 인쇄회로 기판 비용 및 모듈의 제작검증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29> 삼성전자의 피심인들 이 사건 부품 구매 비중(금액 기준)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0월
RFFE	OMH PAMiD	피심인들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코보					
Wi-Fi /BT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피심인들					
		전체					
	퀄컴						
GNSS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피심인들					
		전체					
	삼성전자 S.LSI						
	퀄컴						
독립형 BT		피심인들					
		BES					

* 출처: 소갑 제6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개요

109 피심인들은 2019년 9월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0에 피심인들 경쟁사인 [Redacted]의 OMH PAMiD 부품을 일부 채택하자 삼성전자와의 스마트기기용 RFFE 및 Connectivity 부품 독점 거래를 추진하였다.

110 피심인들은 2020년 2월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구매주문승인 중단 및 선적, 기술지원, 생산 중단을 통해 삼성전자의 스마트기기 생산에 위협을 가하여 삼성전자에게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이하 'LTA'라 한다)⁴¹⁾ 체결을 강제하였다.

41) 편의상 이하 심사보고서에서 말하는 'LTA'는 2020년 3월 피심인들과 삼성전자 간 체결한 장기공급계약을 의미하고, 피심인들과 애플 간 체결한 장기계약 등 다른 장기계약에 대해서는 '장기공급계약'이라 기재한다.

111 피심인들과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LTA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미화 ■■■ 달러 이상의 피심인들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을 구매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LTA를 이행하기 위해 기존 추진하려던 부품 거래선 다원화 전략을 포기하였으며, 당초 경쟁사 부품을 채택하려던 계획을 번복하고 경쟁사 부품보다 더 비싼 피심인들 부품을 구매하거나 다음 연도 피심인들 부품 구매물량을 선 매입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다.

112 이 사건 피심인들의 주요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30>과 같다.

<표 30> 피심인들의 주요 행위 요약

일시	주요 행위
2019. 8월경	삼성전자가 갤럭시 S20에 ■■■의 RFFE를 채택하려하자 이의제기
2019. 9월경	삼성전자가 갤럭시 S20에 ■■■의 RFFE를 채택하자 재차 이의제기
2019. 11. 6.	삼성전자와의 LTA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논의
2020. 1월경	삼성전자와의 LTA 체결방안 검토 후 삼성전자에게 LTA 체결을 제안
2020. 2. 14.	삼성전자의 구매주문 승인 중단
2020. 3. 5.	삼성전자에 대한 선적, 기술지원, 생산 중단
2020. 3. 27.	삼성전자와 LTA 체결 및 거래 정상화
2021. 1. 1.	LTA 효력발생 (2021. 1. 1. ~ 2023. 12. 31.)
2021. 8. 17.	LTA 종료(2021. 1. 1. ~ 2021. 7. 2.)에 합의

113 한편 이 사건 피심인들의 행위와 연관된 주요 인물들의 소속 법인과 직급, 주요 업무는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 31>

이 사건 주요 인물들의 소속법인, 직급 및 업무^{주1}

성명	소속법인	직위·직급	주요 업무
[Redacted]	브로드컴 본사	사장, 최고경영자	[Redacted]
		최고 운영책임자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선임 부사장, 총지배인	
		부사장	
	브로드컴 코리아	지사장	
		전무	
	엘에스아이 코퍼레이션 ⁴²⁾	상무	
		이사	
	아바고테크놀로지스 (말레이시아) 에스 디엔 비에이치디 ⁴³⁾	영업 이사	
		부장	

주1」 2020. 2. 13. 기준

주2」 [Redacted]

2) LTA 추진배경

가) 삼성전자가 피심인들 경쟁사의 RFFE 부품을 스마트폰에 탑재

114 삼성전자는 2018년 11월경 갤럭시 S20⁴⁴⁾에 RFFE 부품 중 OMH PAMiD 부품을 탑재하기로 결정하고 피심인들과 피심인들의 경쟁사인 [Redacted], [Redacted]의 OMH PAMiD 부품의 가격, 성능 등을 검토하였다.

115 이후 삼성전자는 아래의 <표 32>와 같이 2019년 9월 갤럭시 S20 미주향에 탑재하는 OMH PAMiD 부품의 공급업체는 [Redacted]로, 2019년 10월 갤럭시 S20 구주향

42) [Redacted]

43) [Redacted]

44)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의 후속으로 개발하는 모델의 당시 명칭은 ‘갤럭시 S11’이었으나, 2019년 말경 ‘갤럭시 S20’으로 명칭을 결정하였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도 동일한 방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에 탑재하는 OMH PAMiD 부품의 공급업체는 █████ 결정하였다.

<표 32> 삼성전자 답변서(2021. 7. 30.) 발취

제품명	부품	부품제조사	부품 결정 시기
GS20 미주향	OMH	████████████████████	████████████████████
	WiFi/BT		
	GPS		
GS20 구주향	OMH		
	WiFi/BT		
	G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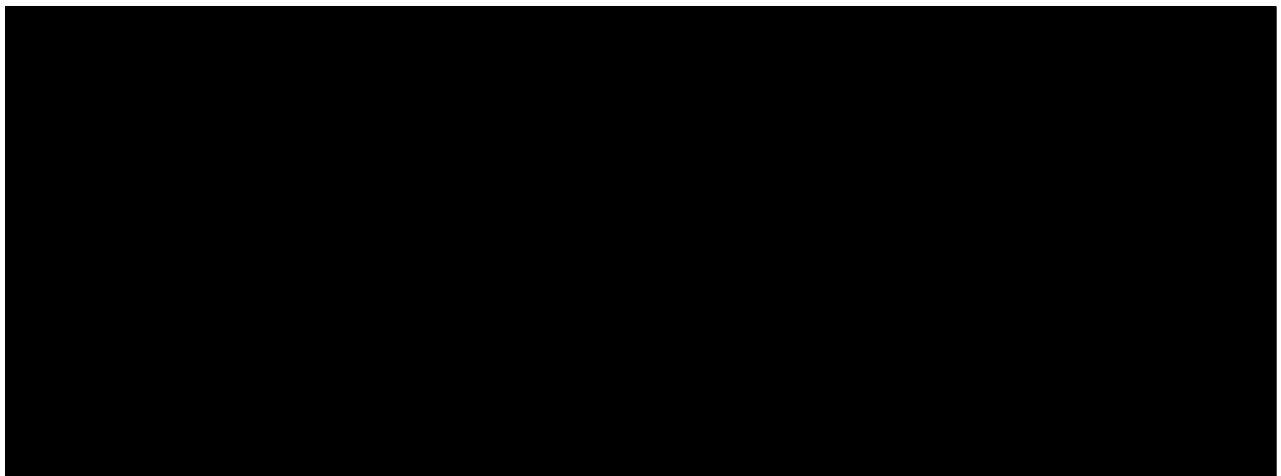
주1」 대체 가능한 부품이 없어 부품 결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출처: 소갑 제9호증

나) 피심인들의 항의 및 LTA 추진 결정

116 브로드컴 본사의 █████은 2019. 8. 24. 삼성전자가 갤럭시 S20에 탑재할 OMH PAMiD 부품을 █████와 피심인들의 부품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표 33>과 같이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고████에게 피심인들의 투자비용과 양사 간 관계를 들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표현하였다.

<표 33> 브로드컴 본사의 █████이 삼성전자의 고████에게 보낸 전자메일(2019. 8. 24., █████) 발취



주1」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고████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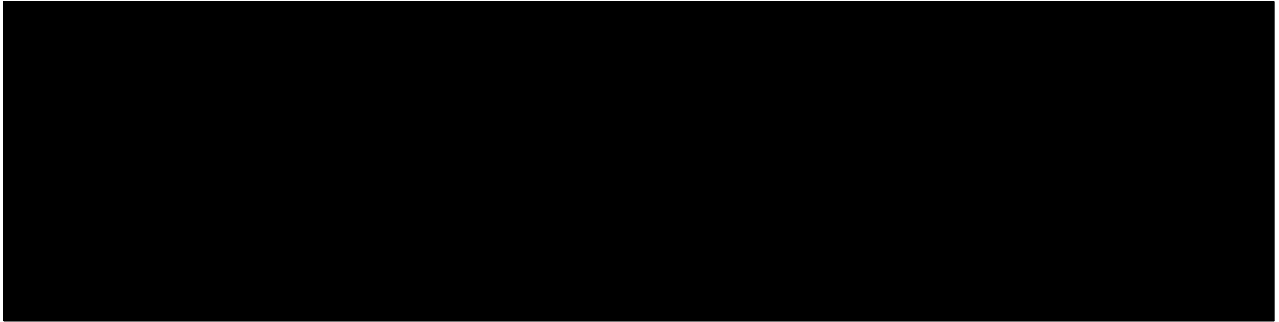
주2」 █████은 삼성전자의 █████에 탑재된 피심인들 █████ 부품의 개발프로젝트 명칭이다.

* 출처: 소갑 제9호증

117 그러자 삼성전자의 고■■■은 2019. 8. 26. 브로드컴 본사의 ■■■에게 아래 <표 34>와 같이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RFFE 부품의 거래선을 다원화하는 현재의 정책이 최적임을 설명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4> 삼성전자의 고■■■이 브로드컴 본사의 ■■■에게 보낸 전자메일(2019. 8. 26. ■■■) 발취



* 출처: 소갑 제12호증

118 이후 삼성전자가 2019. 9. 25. 갤럭시 S20 미주향에 탑재하는 OMH PAMiD 부품의 공급업체를 ■■■로 결정하자 브로드컴 본사의 ■■■은 삼성전자의 고■■■에게 아래의 <표 35>와 같이 증오스러운 경쟁자(hated competitor)인 ■■■의 RFFE 부품을 채택한 점에 대하여 큰 실망을 나타내고, 이는 형제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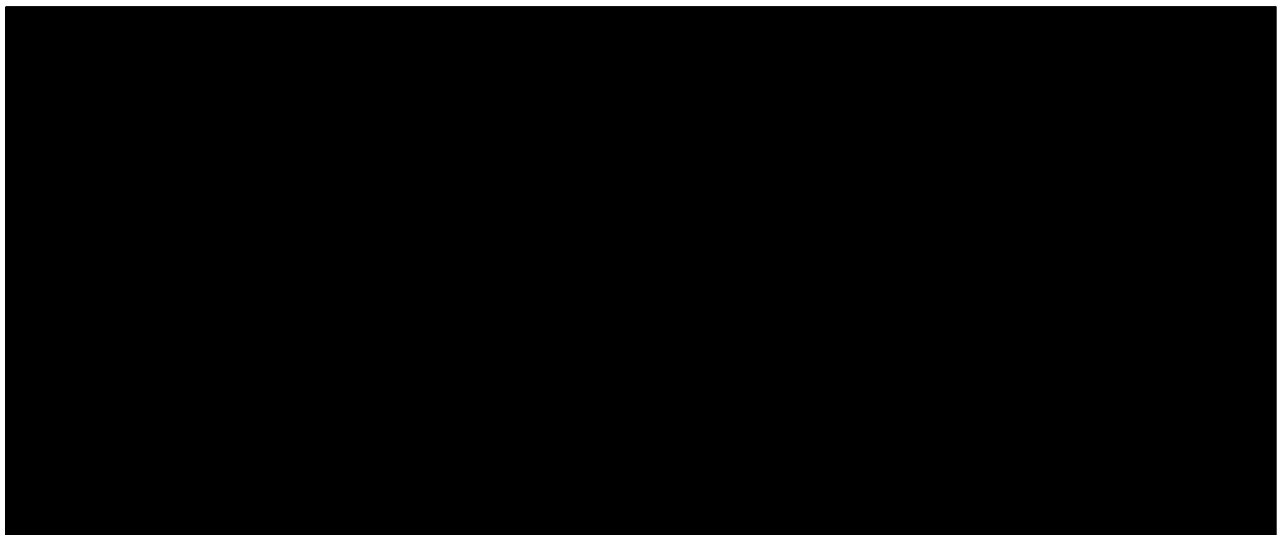
<표 35> 브로드컴 본사의 [REDACTED]이 삼성전자의 고 [REDACTED]에게 보낸 전자메일
(2019. 9. 25., [REDACTED]) 발췌



* 출처: 소갑 제12호증

119 이에 삼성전자의 고 [REDACTED]은 2019. 9. 26. 브로드컴 본사의 [REDACTED]에게 아래 <표 36>과 같이 삼성전자는 피심인들의 RFFE 부품을 여전히 높은 비율로 구매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삼성전자의 부품 거래선 다원화 정책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36> 삼성전자의 고 [REDACTED]이 브로드컴 본사의 [REDACTED]에게 보낸 전자메일
(2019. 9. 26., [REDACTED])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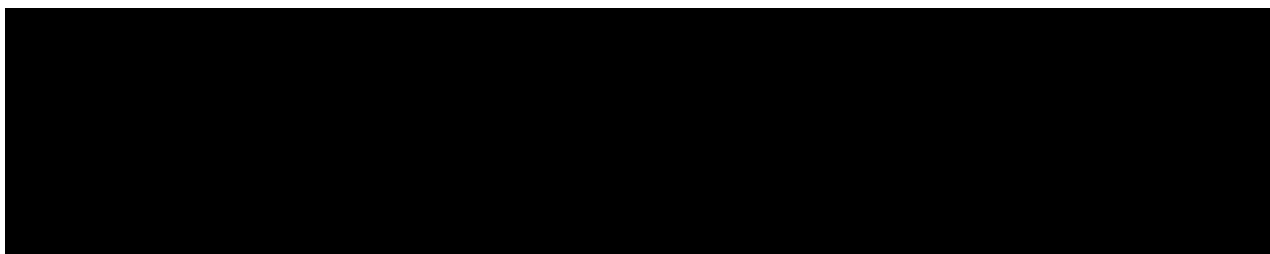
* 출처: 소갑 제12호증

120 이후 피심인들은 2019. 11. 6.에 개최한 2019년도 4/4분기 분기별 사업검토 (이하 'QBR'이라 한다) 회의에서 처음으로 피심인들과 삼성전자 간 LTA의 필요성

을 논의하였다.

121 브로드컴 코리아의 2019년도 4/4분기 QBR 자료에 따르면 브로드컴 코리아는 아래의 <표 37>과 같이 2019년 1/4분기 대비 2020년 1/4분기 삼성전자에 대한 RFFE 및 Connectivity 부품 매출액이 각각 ■%, ■%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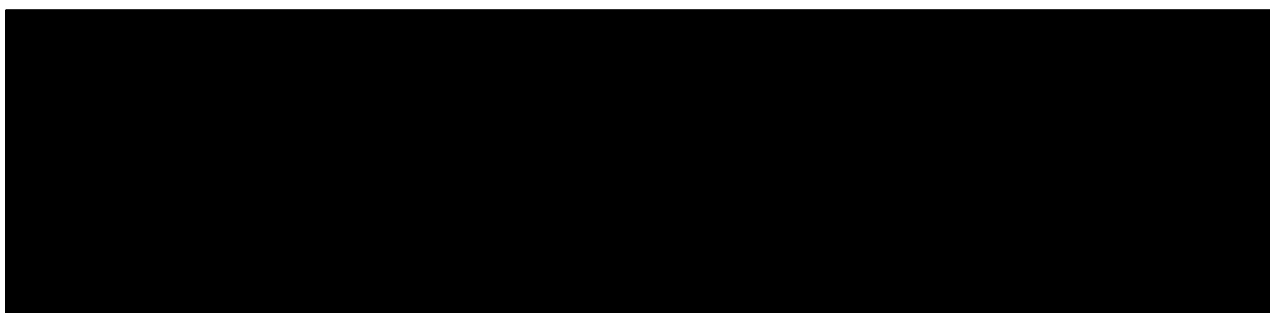
<표 37> 브로드컴 코리아의 2019년도 4/4분기 QBR 자료 발췌



* 출처: 소갑 제13호증

122 그리고 브로드컴 코리아는 아래 <표 38>과 같이 ■■■가 갤럭시 S20 미주향 모델에 OMH PAMiD 부품을 공급하는 것, ■■■이 갤럭시 노트20에 Wi-Fi/BT 콤보 부품을 제안하는 것, ■■■과 ■■■에 의해 독립형 BT 부품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하였다.

<표 38> 브로드컴 코리아의 2019년도 4/4분기 QBR 자료 발췌



* 출처: 소갑 제13호증

123 이에 피심인들은 QBR 회의에서 아래의 <표 39>와 같이 삼성전자로부터 일정 수준의 매출을 보장받고자 L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39>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redacted] 진술조서(2021. 12. 1.) 발췌

문3) 2020. 3. 27.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와 브로드컴 간 체결한 부품공급에 관한 협약서(이하 'LTA'라 한다)를 추진한 목적을 말씀해주십시오.

답3)

[redacted]
[redacted]에서 2020년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향 예상매출액(Projection)이 2019년도 성과대비 지나치게 저조하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출처: 소감 제14호증

3) LTA 추진 및 삼성전자와의 협상 개시

가) 피심인들의 LTA 체결 전략 검토

124 브로드컴 본사의 [redacted]은 2019. 12. 22. 브로드컴 코리아의 지사장 전 [redacted]에게 삼성전자가 브로드컴 Connectivity 부품을 브로드컴이 아닌 타 부품사의 Connectivity 부품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문의하였다.⁴⁵⁾

125 이를 두고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redacted]은 아래의 <표 40>과 같이 [redacted]이 삼성전자에 Connectivity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심인들의 RFFE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win [redacted] biz thru leverage [redacted]⁴⁶⁾)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4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redacted]이 Wi-Fi/BT 콤보 부품을 삼성전자에 제안한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46) [redacted] 및 [redacted]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 RFFE, Connectivity 부품을 담당하는 피심인들 내부 사업부의 명칭이나, 이하 피심인들 내부자료에서 각각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을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0>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 과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 간 카
카오톡 대화(2019. 12. 22.)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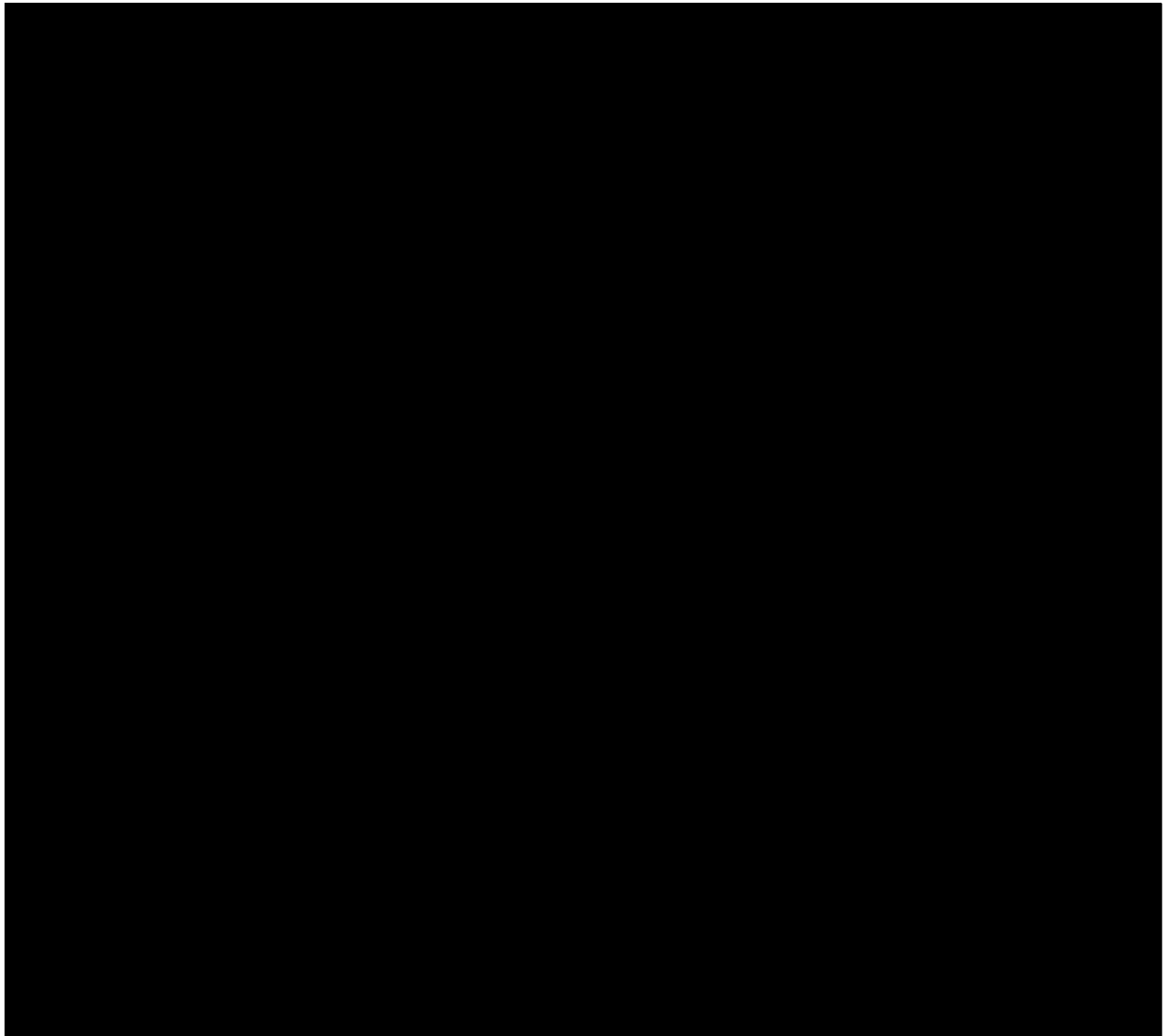


주」 브로드컴 본사는 [] 에 [] 과 [] 부품에 대한 [] 계약
을 체결하였는데, 전 [] 이 언급한 ‘ [] ’은 피심인들이 [] 과 []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삼성전자와도 [] 체결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 출처: 소갑 제15호증

126 브로드컴 본사의 [] 는 전 [] 에게 삼성과 협상을 위한 전반적 상
황을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전 [] 은 이에 따라 2020. 1. 27. 아래의 <표 41>과
같이 [] 에게 삼성전자의 상황 및 LTA의 목표 등을 보고하였다.

<표 41> 브로드컴 코리아 전 [redacted]이 브로드컴 본사 [redacted]에게 보낸 전자메일
(2020. 1. 27., [redacted]) 발취



주」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장 노 [redacted]을 의미한다. [redacted], [redacted]으로도 지칭된다.

* 출처: 소갑 제17호증

127 위 <표 41>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삼성전자에 Connectivity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상황에 기반을 두고 삼성전자와 RFFE 및 Connectivity 부품 모두에 대한 LTA를 체결하고자 하였다.

128 다만 피심인들은 삼성전자가 RFFE에 대해서는 장기공급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면서, 삼성전자가 원가절감 차원에서 부품거래선을 다원화하고자 하

는 것이 피심인들 협상의 난점이라고 전망하였다.

나) 삼성전자와 LTA 체결을 위한 회의 추진

129 브로드컴 본사의 █████은 2020. 1. 3.경 아래의 <표 4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고████에게 LTA를 제안할 것임을 전████에게 통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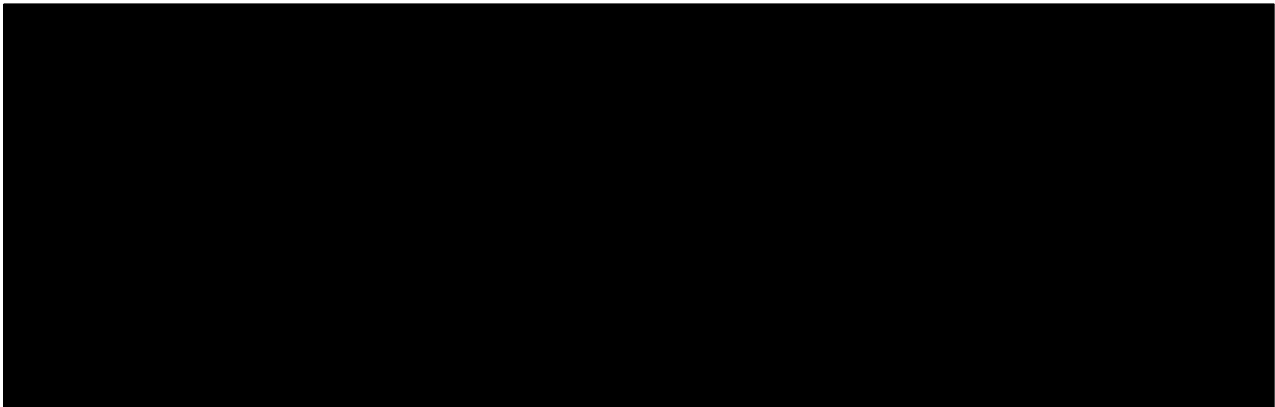
<표 42>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과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 간 카카오톡 대화(2020. 1. 3.) 발췌



* 출처: 소갑 제15호증

130 그리고 브로드컴 코리아는 아래의 <표 43>과 같이 █████이 삼성전자의 고████에게 LTA를 제안하면 그 후속조치로 삼성전자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표 43>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성민과 함승우 간 카카오톡 대화(2020. 1. 9.) 발췌



주1」 애플을 의미한다. 이하 ‘랩터’도 애플을 의미한다.

주2」 브로드컴 본사의 계열사인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유에스 인코포레이티드의 WSD 사업부 선임 부사장(SVP)인 권영우를 의미한다.

* 출처: 소갑 제18호증

131 브로드컴 본사의 █████은 2020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국

제 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석하여 삼성전자의 고[]을 만나 아래 <표 44>와 같이 장기적 협력관계(Long Term Relationship)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44> 삼성전자 대표이사 고[] 확인서(2021. 6. 10.) 발췌

문. 2020. 1. 8.경 CES에서 브로드컴의 []과 만나서 나눈 대화내역 중 []이 ‘장기계약 체결’을 제안한 내용이 있었는지.

답: 2020. 1. 8. 라스베가스 CES 때 []이 본인의 호텔 방으로 찾아와서 석식을 하였습니다. 이원화 필요성 및 경쟁력 갖춘 솔루션 중심 협력 등 사업부에서 만들어준 Talking Point에 있는 내용 위주로 대화했습니다. []이 현재 자신들은 []과 []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며, 삼성을 위해서도 우수 개발인력을 배당할테니 Long-Term Relationship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 출처: 소갑 제19호증

132 브로드컴 본사의 []는 아래 <표 45>와 같이 2020. 1. 24.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으로 하여금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사장 노[]에게 피심인들과의 LTA 체결을 제안할 것을 지시하였다.

<표 45> 피심인 답변서(2021. 11. 9.) 발췌

브로드컴의 []는 2020.1.24. 브로드컴코리아의 전[]에게 그 다음날까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노[]에게 연락하여 브로드컴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간의 LTA 체결을 제안할 것을 구두로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브로드컴은 []가 LTA 체결을 위한 논의 및 협상을 실제로 시작하도록 브로드컴 코리아에 지시하였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출처: 소갑 제5호증

133 전[]은 2020. 1. 29. 아래의 <표 46>과 같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구매팀의 상무 김[]에게 피심인들과의 장기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해볼 것을 요청하였다.

<표 46>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 과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 간 카카오톡 대화(2020. 1. 29.) 발췌



- 주1] 브로드컴 코리아의 지사장 전 [] 을 의미한다.
- 주2]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구매팀의 상무 김 [] (영문 이름 []) 을 의미한다.
- 주3] 삼성전자의 부회장 이 [] 을 의미한다

* 출처: 소갑 제15호증

134 이후 피심인들과 삼성전자는 2020. 2. 4.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 공개행사 직후에 장기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삼성전자에 대한 피심인들의 불만 제기

(1) 삼성전자의 피심인들 부품 불채택 통보

135 삼성전자는 2020. 2. 6. 아래의 <표 47>과 같이 갤럭시 노트20에 피심인들의 WiFi/BT 콤보 부품인 ‘ [] ’를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⁴⁷⁾ 브로드컴 코리아에 유선으로 통보하였다.⁴⁸⁾

47) 브로드컴 본사는 2018년 11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 모델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을 추진 중인 Wi-Fi/BT 콤보 부품 [] 를 삼성전자에 소개하였다. 삼성전자는 2018년 12월 브로드컴 본사에 [] 를 갤럭시 S21보다 먼저 출시되는 갤럭시 노트20에 탑재할 수 있도록 조기에 개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48) 삼성전자는 유선으로 브로드컴 코리아에 차기 제품인 갤럭시 S21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이를 위해 양사가 지속 협력하자고 언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출처: 소갑 제9호증). 실제로 [] 는 차기 제품인 갤럭시 S21, S22 시리즈에 채택되었다.

<표 47>

삼성전자 답변서(2021. 7. 30.) 발췌

8-1. [redacted]를 갤럭시 노트20에 사용하지 아니함을 통보한 내역(일시, 통보자, 통보상대방, 통보내역 등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관련 문서 부재 시 귀사 내 행위자의 행위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

참고인의 직원인 정 [redacted] 프로(참고인 반도체 구매그룹 소속)는 2020.2월경(정확한 날짜 불명), 개발/상품기획팀에서 [redacted] 미채택 결정을 한 뒤 Broadcom 이 [redacted] 상무에게 전화로 WiFi 6E 에코 미확산^주에 따라 [redacted]를 갤럭시 노트20에 채택되지 않게 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이 [redacted] 상무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수긍하였습니다.

주」 WiFi 6E란 기존 2.4GHz 및 5GHz 대역 외에 6GHz 대역에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WiFi의 표준기술인데,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에 대한 전 세계 통신당국의 인증이 늦어지는 등(미국의 경우 2020년 4월경 승인) 해당 기술의 생태계 확산이 늦어져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 출처: 소갑 제9호증

136 삼성전자의 결정은 2020. 2. 7. 아래의 <표 48>과 같이 브로드컴 본사의 [redacted]에게 전달되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8>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redacted]과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redacted] 간 카카오톡 대화(2020. 2. 7.) 발췌

[redacted]

주」 [redacted]는 피심인들 부품 개발단계에서의 기술지원을 의미하며 해당 대화에서 [redacted]는 피심인들이 당시 개발 중인 [redacted] 부품을 의미한다.

* 출처: 소갑 제15호증

(2) 피심인들의 삼성전자와의 거래중단 논의 및 불만 통보

137 브로드컴 본사의 [redacted]는 2020. 2. 8. 아래의 <표 49>와 같이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redacted]으로 하여금 삼성전자에 대한 RFFE 부품 매출의 하락과 삼성전자의 [redacted] 미채택으로 더는 삼성전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임을 삼성전자에 통보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49>

피심인 답변서(2021. 11. 9.) 발췌

4-2. 귀사의 █████은 귀사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장기계약 협상에 임하기 전인 2020.2.8.경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에게 귀사가 향후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삼성전자에 통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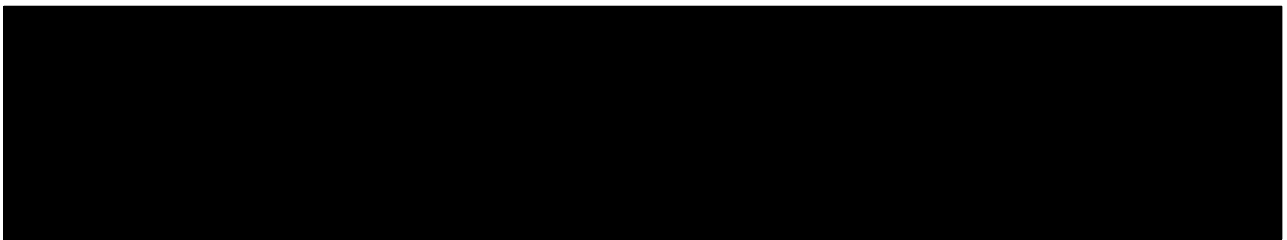
█████는 2020.2.8. 전성민에게, 삼성전자의 김████(█████)에게 전화를 걸어 “브로드컴은 기존 █████ 이슈^주 뿐만 아니라 Wi-Fi에 대하여 삼성전자가 최근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삼성전자와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을 것이며 브로드컴을 존중하는(value) 다른 고객들과 거래할 것이다”라고 말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 피심인들은 ‘기존 █████ 이슈’란 ‘█████’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출처: 소갑 제13호증)

* 출처: 소갑 제5호증

138 전████은 2020. 2. 9. 삼성전자의 김████에게 아래의 <표 50>과 같이 브로드컴 본사의 █████이 삼성전자의 고████에게 삼성전자와의 거래중단을 통보할 예정임을 전달하였다.

<표 50>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과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 간 카카오톡 대화(2020. 2. 9.) 발췌



* 출처: 소갑 제15호증

139 이후 █████은 2020. 2. 11.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S20 공개 행사 이후 삼성전자의 고████을 만나 아래의 <표 51>과 같이 삼성전자가 █████의 RFFE 부품을 채택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다.

<표 51> 삼성전자 대표이사 고 [] 확인서(2021. 6. 10.) 발췌

문. 2020. 2. 12. 혹은 2월 초, 언팩 이벤트 때 [] 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 중 “You are not my friend” 또는 그와 유사한 취지로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는지.

답: 2020년 2월 초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언팩 이벤트가 있어 여기에 참석했을 때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때 근처 일식당에서 석식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식사 중에는 사업 이야기가 없었는데 중간에 나와서 바람 쐬며 사업측면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본인이 더 이상 일상 비즈니스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자 [] 이 놀라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 제품으로 이원화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며 정말 친구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 은 [] 를 []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당사가 사용하는 [] 제품은 일부 부품인데 이런 부분까지 브로드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불만스러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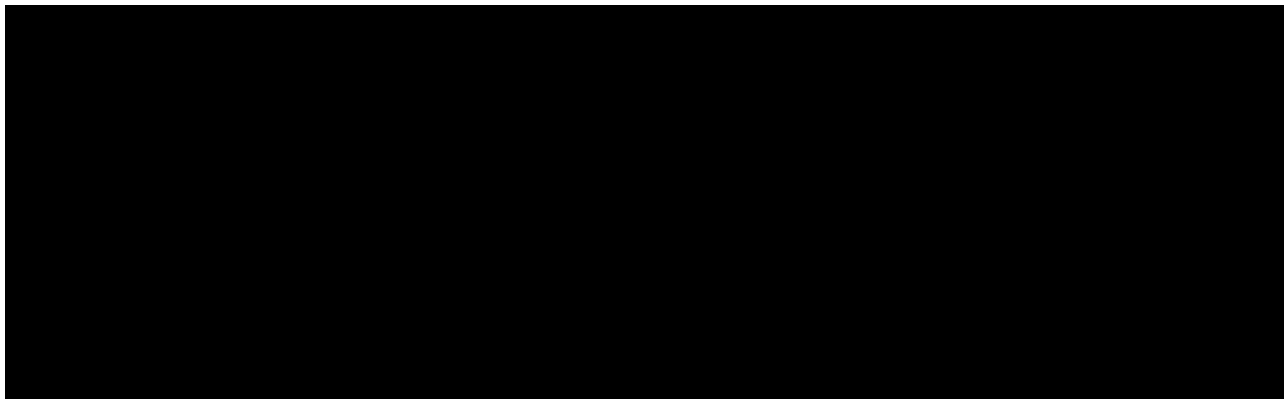
* 출처: 소갑 제19호증

140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 과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 은 예정대로 2020. 2. 12. 삼성전자의 김 [] , 송 [] 과 회의를 열어 LTA 협상을 시작하였다.

141 전 [] 과 [] 은 아래의 <표 52>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삼성전자가 더 이상 피심인들을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점에 실망하였음을 전하고, 장래 갤럭시 노트20, 갤럭시 버즈 등에 탑재하는 피심인들의 RFFE 및 Connectivity 부품 공급을 재검토할 의사를 통보하였다.⁴⁹⁾

49) 피심인들이 삼성전자에 전달한 ‘재검토’의 의미에는 피심인들의 부품 공급 중단으로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20과 새로운 갤럭시 버즈 시리즈를 출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실제 전 [] 은 [] 과의 카카오톡에서 삼성전자 김 [] 에게 갤럭시 노트20과 새로운 버즈 시리즈를 출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음을 언급한 바 있다.(출처: 소갑 제15호증)

<표 52> 전 [redacted] 이 [redacted] 과 [redacted] 에게 보낸 전자메일(2020. 2. 12., [redacted]
[redacted]) 발취



* 출처: 소갑 제21호증

142 전 [redacted] 과 [redacted] 이 삼성전자에 전달한 메시지는 아래의 <표 53>과 같이 삼성전자의 내부 문건에서도 확인된다.

<표 53> 삼성전자 보고서(200309 브로드컴 협상 이력 v0.4) 발취

□ 2/12日 : B社^주는 TOP 미팅을 통해 당사 파트너십에 불만을 토로하고,
* San Jose SRA office, [redacted]/전 [redacted] 지사장 - 송 [redacted] 상무/김 [redacted] 상무
양사 협력에 변화가 없을 시 향후 신규 협력에 대한 재고려 의사 전달
※ Wi-Fi : 당사는 '20.2월초 B社와 협력 중이던 6GHz Wi-Fi([redacted])를
N20 → S21 탑재로 변경

주」 피심인들을 의미한다. 이하 삼성전자 보고서 등에서 B社, BC, BRDC 등으로 지칭된다.

* 출처: 소갑 제22호증

4) 부품 공급중단을 수단으로 삼성전자의 LTA 체결을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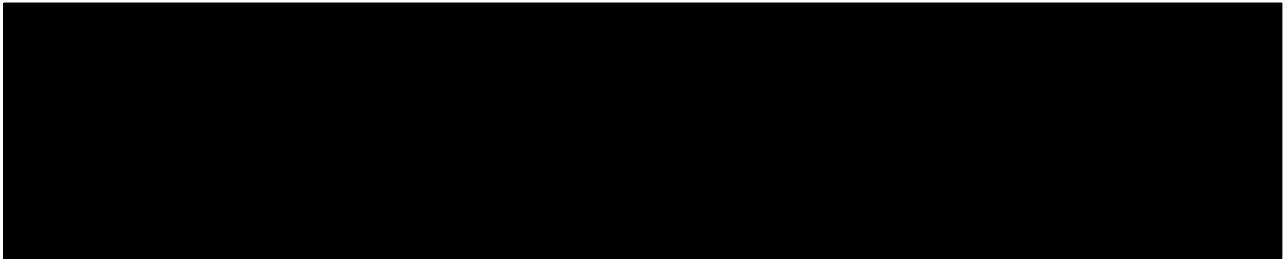
143 피심인들은 구매주문승인(PO), 선적(shipment), 기술지원(engineering support), 생산(production) 등 공급 중단을 수단으로 하여 3년간 삼성전자의 모든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피심인들의 RFFE 부품을 100% 탑재하거나, 매년 피심인들의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을 [redacted] 달러 이상 구매할 것을 압박하였다.

가) 구매주문승인(PO acknowledgement) 중단

(1) 구매주문승인 중단

144 위 <표 52>의 보고를 받은 브로드컴 본사의 ██████████는 아래 <표 54>와 같이 2020. 2. 13.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에게 유선과 전자메일로 삼성전자로부터의 구매주문수령⁵⁰⁾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브로드컴 본사의 ██████████은 2020. 2. 13. 엘에스아이 코퍼레이션의 ██████████에게 아래의 <표 55>와 같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대한 모든 구매주문승인⁵¹⁾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브로드컴 코리아에 의해 2020. 2. 24. 삼성전자 및 삼성전기에 통보되었다.⁵²⁾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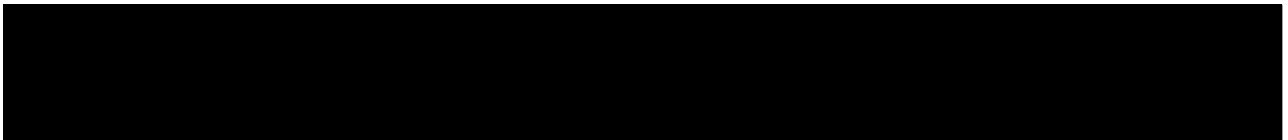
<표 54> ██████████가 전██████과 ██████████에게 보낸 전자메일(2020. 2. 13., ██████████) 발췌



주」 피십인 브로드컴 본사의 찰리 카와스가 전자메일을 송부한 시각은 미국 산호세 기준 2020. 2. 12. 22시 17분으로, 한국 시각은 2020. 2. 13. 15시 17분이다. 이하 심사보고서에서는 전자메일의 발송시각이 해외시간을 기준으로 표기된 경우 한국 시각으로 바꾸어 기재한다.

* 출처: 소갑 제23호증

<표 55> ██████████이 엘에스아이 코퍼레이션의 ██████████에게 보낸 전자메일(2020. 2. 13., ██████████) 발췌



50) 구매주문수령(PO acceptance)이란 피십인들이 고객사의 구매주문을 전산으로 등록(booking)함을 의미한다(1. 마. 4) (3) (나)항 참조).

51) 구매주문승인(PO acknowledgement)이란 피십인들이 구매주문수령 후 고객사에게 판매하는 부품의 선적예정일을 통보하여 고객사의 구매주문이 실행될 것임을 알리는 단계를 의미한다(1. 마. 5) (3) (다)항 참조).

52) 출처: 소갑 제24호증

53) 피십인들은 구매주문승인을 중단한 사유에 대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20에 피십인들의 ██████████를 탑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이 피십인들에 대한 파트너십을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의 기존 거래조건을 재고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출처: 소갑 제5호증).

* 출처: 소갑 제21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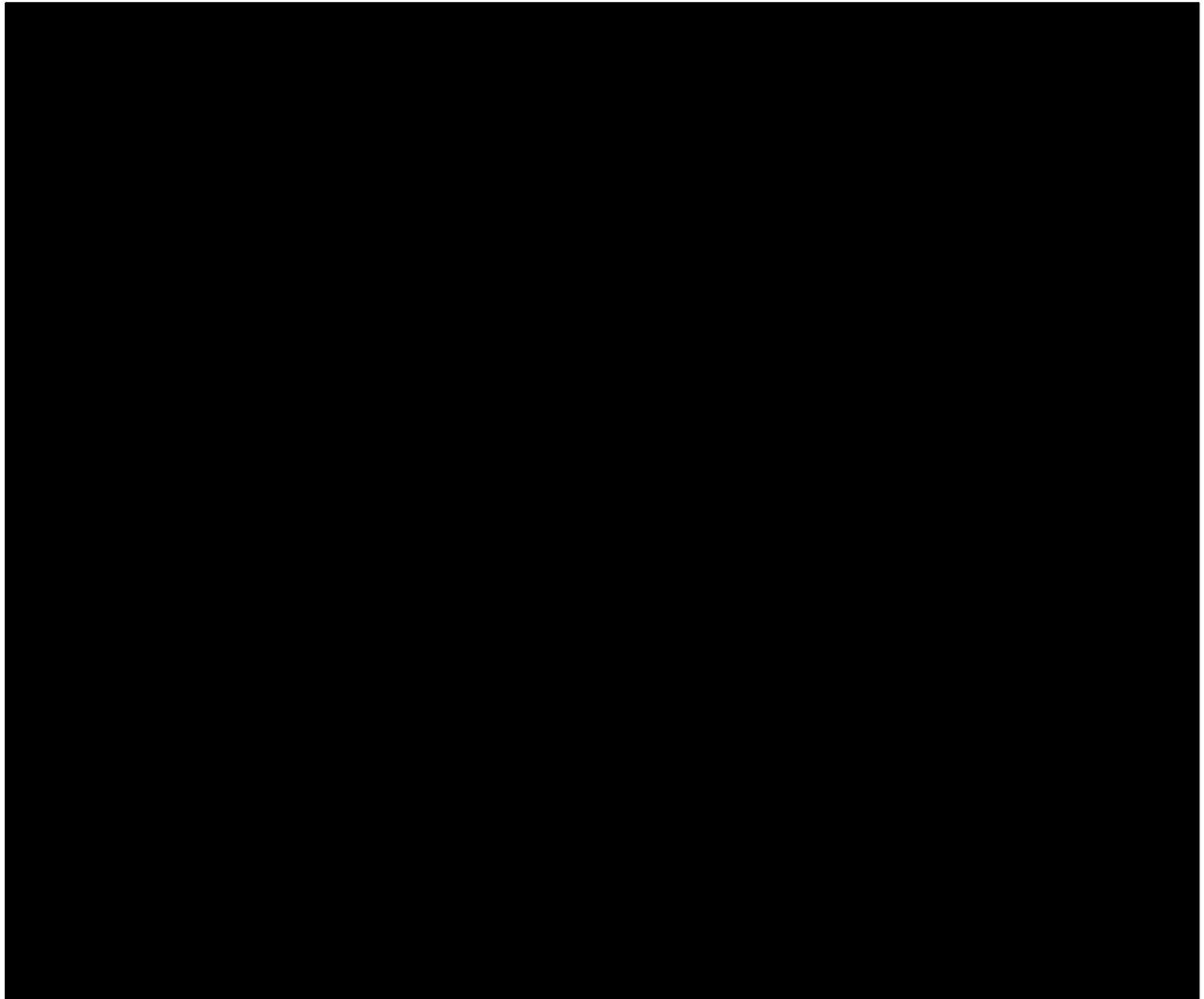
145 위 지시에 따라 피심인들은 2020. 2. 14.부터 2020. 3. 26.까지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에 대한 구매주문승인을 중단하였다.⁵⁴⁾

146 피심인들은 삼성전자에 직납하는 경로뿐만 아니라 ■■■■■와 ■■■■■에 대한 구매주문승인을 중단하여 삼성전자에 비직납하는 경로도 모두 차단하였다.⁵⁵⁾

147 피심인들이 구매주문승인을 중단한 내역 및 규모는 아래 <표 56>과 같이 약 83백만 달러 수준으로 파악된다.

54) 출처: 소갑 제5호증

55) 단, 브로드컴 본사가 구매주문승인을 중단한 기간 동안 ■■■■■이 구매주문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출처: 소갑 제1호증

(2) 구매주문승인 중단 이후 LTA 관련 피심인들과 삼성전자의 논의

(가) 2020. 2. 24. 삼성전자가 LTA 체결이 어렵다는 입장 표명

148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REDACTED]과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REDACTED]은 2020. 2. 24. 삼성전자의 김[REDACTED], 송[REDACTED]과 LTA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삼성전자는 피심인들과 RFFE 부품은 물론 Connectivity 부품도 LTA 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⁵⁶⁾

56) 출처: 소갑 제26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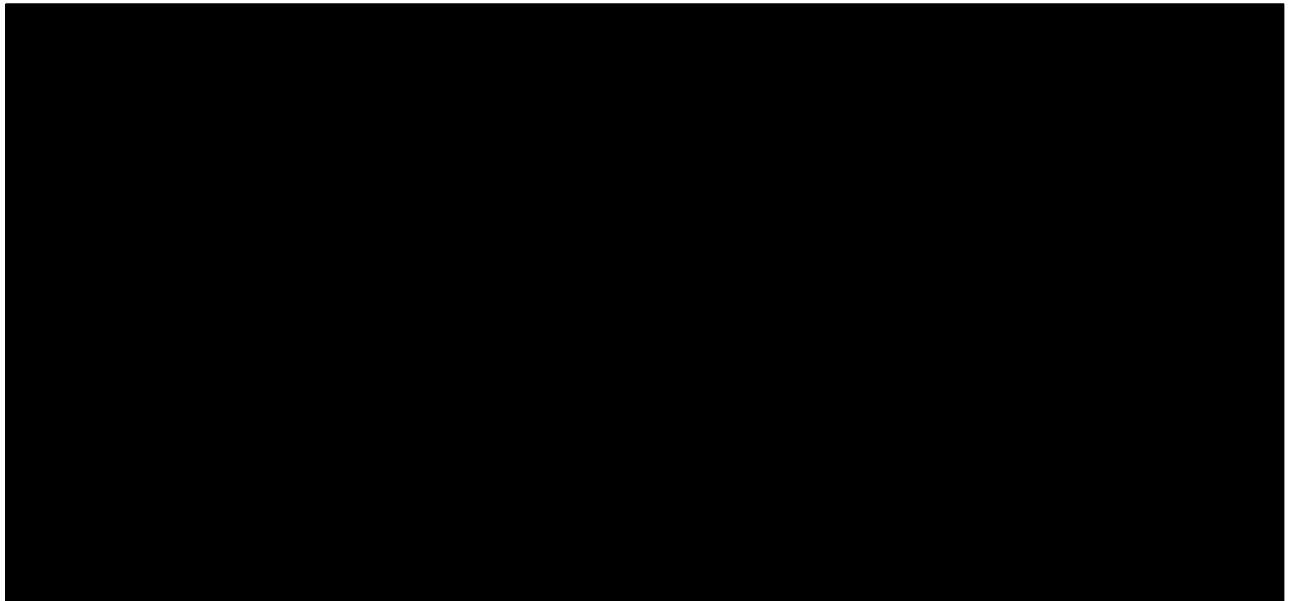
(나) 2020. 2. 27. 삼성전자는 Connectivity 부품에 대한 LTA 체결에 동의하는 대
가로 구매주문승인을 재개해줄 것을 요청

149 먼저 브로드컴 본사의 █████은 2020. 2. 26.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에게
삼성전자와의 LTA 대상 품목으로 WCC 사업부가 취급하는 Connectivity 부품뿐만
아니라 WSD 사업부가 취급하는 RFFE 부품까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지시하였
고, 전████은 이를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
하였다.

150 이에 따라 전████과 █████은 2020. 2. 27. 삼성전자의 김████, 송
████과 LTA에 대해 논의하였다.

151 이 날 회의에서 삼성전자는 아래의 <표 57>과 같이 갤럭시 노트20에 피심
인들의 RFFE 및 Connectivity 부품만을 탑재할 예정이고, Connectivity 부품에 대
해서는 LTA 체결에 동의함을 언급하였다. 다만 피심인들의 WSD 사업부 매각설이
있어 RFFE 부품에 대해서는 피심인들과 LTA를 체결하기 어려움을 재차 언급하였
다. 한편 삼성전자는 그 대신 일시적으로라도 구매주문승인 중단을 해제해달라고 요
청하였다.

<표 57>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 이 브로드컴 본사의 [] 과 [] 에게 보낸 전자메일(2020. 2. 27., []) 받취



* 출처: 소갑 제26호증

(다) 2020. 2. 28. 피심인들은 Connectivity뿐 아니라 RFFE도 모두 피심인들 부품을 채택할 것을 요구

152 피심인들 직원 전 [] 과 [] 은 2020. 2. 28. 삼성전자의 김 [], 송 [], 손 [] 과 LTA에 대해 논의하였다.

153 이 날의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아래 <표 58>과 같이 삼성전자에 대한 구매 주문승인 재개는 없다고 통보하는 한편, 삼성전자가 2023년까지 Connectivity 뿐 아니라 RFFE 부품을 전부 피심인들의 것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WSD 사업부 매각설은 사실이 아님을 전달하였다.

57)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 이 전자메일을 송부한 시각은 미국 산호세 기준 2020. 2. 26. 21시 14분으로, 한국 시각은 2020. 2. 27. 14시 14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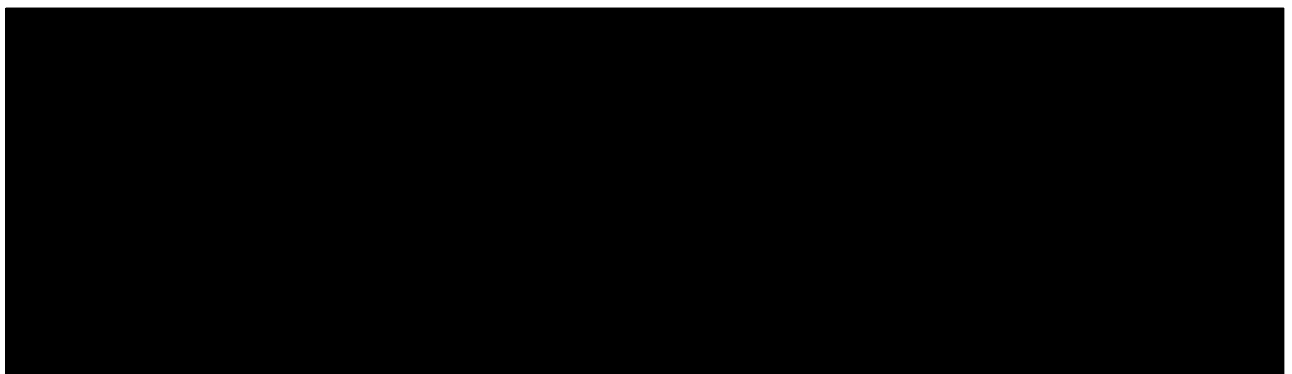
<표 58> [redacted]이 브로드컴 본사의 [redacted]과 [redacted]등에게 보낸 메일
(2020. 2. 28., [redacted]
[redacted]) 발취



* 출처: 소갑 제28호증

154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redacted]과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redacted]이 삼성전자에 전달한 내역은 아래의 <표 59>와 같이 삼성전자의 내부 문건에서도 확인된다.

<표 59> 삼성전자 보고자료(B社 커뮤니케이션 이력) 발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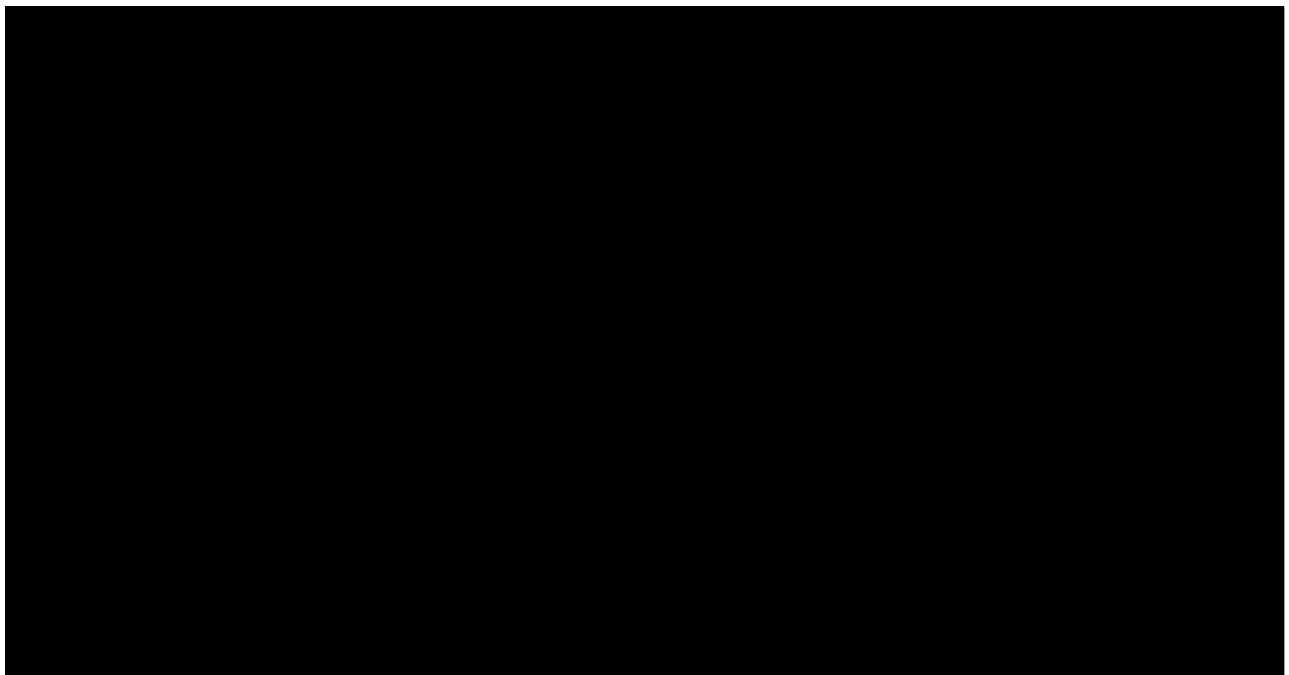
* 출처: 소갑 제9호증

(라) 2020. 3. 4. 피심인들의 RFFE와 Connectivity를 합쳐 매년 [redacted] 달러의 거래 규모 유지 요구 및 [redacted]의 협상 중단 지시

155 이후 2020. 3. 4. 논의⁵⁸⁾에서 삼성전자는 종전 입장과 동일하게 피심인들의 Connectivity 부품을 다수(majority) 구매하는 내용에는 동의하나, 기회비용과 심각한 재정손실을 이유로 RFFE 부품을 LTA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156 피심인들은 █████의 지시⁵⁹⁾에 따라 삼성전자의 RFFE 부문이 포함되지 않는 제안은 흥미롭지 않고(not interesting), 향후 3년간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을 합쳐 현재 수준⁶⁰⁾인 매년 █████ 달러 가량의 거래가 있어야만 사업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표 60>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이 브로드컴 본사의 █████ 등에게 보낸 메일(2020. 3. 4, █████) 발취



* 출처: 소갑 제26호증

157 위 <표 6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과 █████은 삼성전자의 RFFE 부품을 LTA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피심인들의 경쟁사인 █████ 및 █████와 삼성전자 간의 계약 때문으로 추측하였다.

58) 피심인들의 직원 전████, █████과 삼성전자의 직원 송████, 손████이 참석하였다.

59) █████은 같은 날 회의에 앞서 피심인들과 삼성전자 간 2019년도 거래금액과 유사한 수준인 연간 █████ 달러의 거래를 보장받을 것을 전████과 █████에게 지시하였다.(출처: 소갑 제15호증)

60) 2019년 피심인들과 삼성전자 간 이 사건 부품 거래금액은 약 █████ 달러이다.<표 39> 참조)

61)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이 전자메일을 송부한 시각은 미국 산호세 기준 2020. 3. 3. 21시 30분으로, 한국 시각은 2020. 3. 4. 14시 30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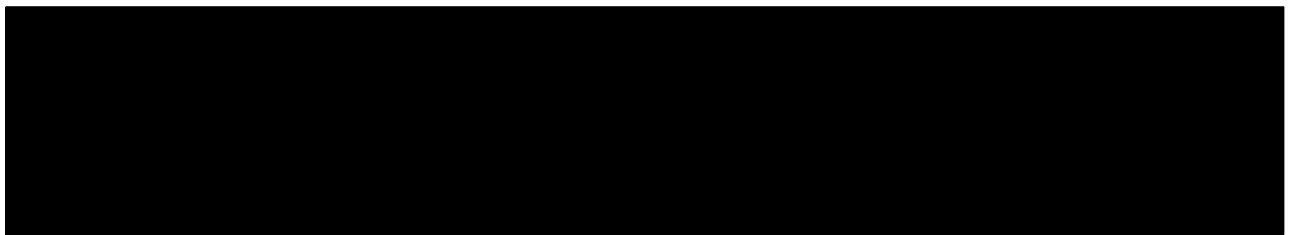
<표 61> 삼성전자 보고자료(B社 커뮤니케이션 이력) 발췌



* 출처: 소갑 제9호증

158 한편 삼성전자는 위 회의에서 협상에 진전이 없자 신속한 합의를 위해 다음 날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며, LTA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요청 하였다.

<표 62> 삼성전자 보고자료(B社 커뮤니케이션 이력) 발췌



* 출처: 소갑 제9호증

159 브로드컴 본사의 ■■■은 2020. 3. 4. 상기 <표 60>의 협상결과를 보고받고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는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에게 아래 <표 63>과 같이 삼성전자가 LTA 안을 먼저 제시해오기 전까지 협상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63> 브로드컴 본사의 []이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에게 보낸 전자메일(2020. 3. 4., []) 발취



* 출처: 소갑 제26호증

나) 선적(shipment) 중단

160 브로드컴 본사는 2020. 3. 5.부터 2020. 3. 27.까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공급하는 모든 부품의 선적을 중단하였다.⁶²⁾

161 구체적으로 브로드컴 본사는 2020. 3. 5. 선적 중단을 결정하였고,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은 2020. 3. 5. 아래의 <표 64>, <표 65>과 같이 삼성전자에 브로드컴 본사의 선적중단 사실을 전달하였으며,⁶³⁾ 브로드컴 본사는 2020. 3. 5. 아래 <표 64>과 같이 삼성전자에 대한 선적을 실제로 중단하였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62) 피심인들은 선적 중단 사유는 기본적으로 구매주문승인 중단 사유와 동일하며, 나아가 삼성전자가 LTA 협상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선적 중단을 통해 LTA 협상에 대해 진지함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출처: 소갑 제5호증).

63) 출처: 소갑 제14호증, 제29호증, 제30호증

<표 64>

피심인 답변서(2021. 11. 9.) 발췌

5-5-4. 선적중단 결정이후 실제 삼성전자에 대한 선적이 중단되기까지의 과정, 중단한 방식, 중단한 부품 리스트, 중단이 시작된 일시를 적시하기 바랍니다.

선적중단은 [redacted]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3월 5일 [redacted]이 다른 팀원들에게 “**삼성에게 선적 불가 - [redacted] 포함**”이라 말하고, [redacted]에게 “pick hold”를 적용하라고 말하였습니다. “[redacted]”란 **브로드컴의 ERP 시스템에 booking된 삼성전자의 각 PO에 “[redacted]”라는 표시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edacted]”라 표시된 PO의 부품들은 선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redacted] 팀은 [redacted]까지 아직 선적되지 않은 PO의 모든 부품에 대해 “[redacted]” 표시를 하였습니다.

* 출처: 소갑 제5호증

162 피심인들은 삼성전자에 직납하는 경로뿐만 아니라 [redacted]와 [redacted]에 대한 선적을 중단하여 삼성전자에 비직납하는 경로도 모두 차단하였다.

<표 65>

삼성전자 보고자료(B社 커뮤니케이션 이력) 발췌

[redacted]

* 출처: 소갑 제9호증

163 피심인들이 선적을 중단한 내역 및 규모는 아래 <표 66>과 같이 약 [redacted]달리 수준으로 파악된다.⁶⁴⁾

64) 피심인들이 2020. 3. 7.과 2020. 3. 13. 두 차례 긴급 선적한 내용(상세 내용은 후술)은 제외하였다.

주) [Redacted]

* 출처: 소갑 제1호증

다) 기술지원(engineering support) 중단

164 피심인들은 2020. 3. 5.부터 2020. 3. 27.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지원⁶⁵⁾도 대부분 중단하였다.⁶⁶⁾

165 구체적으로, 브로드컴 본사의 [Redacted]은 2020. 2. 12. 위 <표 55>과 같이 삼성전자에 대한 모든 기술지원(all engineering dealings)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해

65) 기술지원의 구체적 내용, 절차에 대해서는 앞서 1. 마. 4) 나) (6)항에서 살펴본 바 있다.

66) 해당 기간 삼성전자가 기술지원을 요청했으나 피심인들이 무응답(중단)한 건수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삼성전자 답변서(소갑 제6호증)에 따르면 최소 2개 부품에 대해 수십 건의 기술지원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대부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 지시는 2020. 2. 15. 일시적으로 철회되었으나⁶⁷⁾, 2020. 3. 5.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지원은 대부분 중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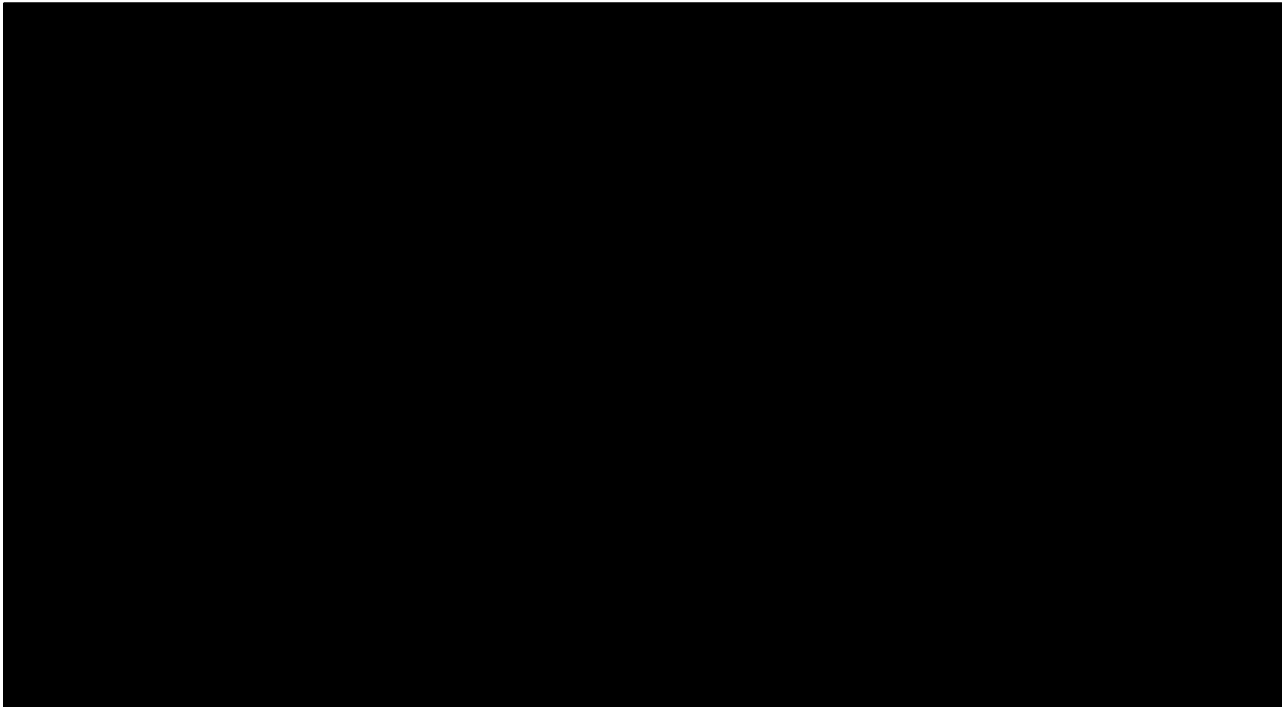
¹⁶⁶ 먼저, 피심인들은 고객 지원 포털(Customer Support Portal, 이하 ‘CSP’라 한다)을 통한 기술지원 경로를 차단하였다. 피심인들은 삼성전자의 CSP를 통한 지속적인 기술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0. 3. 5.부터 2020. 3. 25.까지 기술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다.

¹⁶⁷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7>과 같이 삼성전자의 기술지원 담당 직원이 CSP를 통해 하루에도 여러 건의 업데이트 전자메일을 수신한 나머지 기간과 달리 2020. 3. 5.부터 2020. 3. 25. 사이에는 기술지원 진행 경과에 대한 피심인들의 전자 메일이 없었던 점에서 확인된다.⁶⁸⁾⁶⁹⁾

67)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은 기술지원 중단 철회에 대해 브로드컴 본사의 ■■■ 사업부 선임 부사장인 ■■■가 ■■■을 설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출처: 소갑 14호증)

68) ■■■ 즉 삼성전자의 기술지원 담당 직원이 전자메일을 수신하지 못한 기간 동안 피심인들은 CSP를 통해 기술지원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한다.

69) 피심인들은 기술지원 중단 기간 CSP가 아닌 이메일을 통해 기술지원이 제공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출처: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를 위해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이하 피심인 의견서라 한다), 피심인들이 기술지원이라고 주장하는 이메일의 내용은 대부분 단순 문의에 대한 회신, 부품에 대한 단순 자료제공 등에 해당하여 기술지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출처: 소갑 제3호증

168 피심인들의 기술지원 중단 사실은 삼성전자의 제품별 기술지원 요청 및 답변에서도 확인된다.

169 예를 들어, 2020. 2월경 출시한 갤럭시 S20에 탑재한 피심인들의 WiFi/BT 콤보 부품인 [REDACTED]에 대하여 삼성전자는 아래 <표 68>과 같이 2020. 2. 21.부터 2020. 3. 12.까지 CSP를 통해 여섯 건의 기술지원을 요청하였다.⁷⁰⁾

170 그러나 이 요청들에 대해 피심인들은 2020. 3. 5.부터 2020. 3. 24.까지 아래 <표 68>과 같이 두 차례만 기술지원을 제공하였고, 그 외에는 ‘업데이트 없음(No update)’이라고 답변하거나 아예 응답하지 아니하였다.⁷¹⁾

70)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동일한 사안에서 중복으로 기술지원을 요청한 내역은 제외하였다.

71) 삼성전자는 2020. 2. 출시한 갤럭시 버즈플러스에 탑재한 피심인들의 독립형 BT 부품인 [REDACTED]에 대해서도 2020. 1. 13. 부터 2020. 3. 19. 까지 CSP를 통해 20여 건의 기술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들은 2020. 3. 5.부터 2020. 3. 27.까지 삼성전자에 거의 기술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소갑 제6호증).

<표 68> [redacted] 관련 CSP 요청 내역(삼성전자 답변서(2022. 1. 20.) 발췌)

연번	요청일시	긴급성 - 중요도	피심인들 답변 ^{주1)}
1	2020-02-21 11:35 ^{주2)}	1 - Critical	[redacted]
2	2020-03-03 13:57	1 - Critical	[redacted]
3	2020-03-03 16:06	1 - Critical	[redacted]
4	2020-03-04 12:19	2 - High	[redacted]
5	2020-03-06 14:35	4 - Low	[redacted]
6	2020-03-12 16:29	2 - High	[redacted]

주1) 3. 5.부터 3. 24.의 기간 중 피심인들이 답변한 내용은 볼드체로 표기하였다.

주2) [redacted]

[Redacted]

* 출처: 소갑 제6호증

171 또 다른 예시를 들면, 갤럭시 버즈플러스에 탑재한 피심인들의 독립형 BT 부품인 [Redacted]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2020. 1. 13.부터 2020. 3. 19.까지 CSP를 통해 20여 건의 기술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들은 2020. 3. 5.부터 2020. 3. 27.까지 삼성전자에 거의 기술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⁷²⁾

라) 생산(production) 중단

172 브로드컴 본사는 2020. 3. 5. 아래의 <표 69>와 같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공급하는 모든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의 생산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⁷³⁾

<표 69> 피심인 답변서(2021. 11. 9.) 발췌

5-6-2. 귀사가 생산중단을 결정한 일시, 결정한 자, 생산중단이 실행된 일시, 생산중단 부품 리스트를 적시하기 바랍니다.

[Redacted]경, 브로드컴의 최고 경영진(top management)은 [Redacted] 그룹에 모든 삼성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Redacted] 제품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부문에 대한 제품 생산중단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Redacted]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진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컨대, [Redacted]와 [Redacted]은 [Redacted]에도 생산되었습니다.

* 출처: 소갑 제5호증

173 위 지시에 따라 피심인들은 2020. 3. 5.부터 아래 <표 70>과 같이 3개 부품

72) 출처: 소갑 제6호증

73) 브로드컴 본사는 생산 중단 사유는 기본적으로 구매주문승인 중단 사유와 동일하며, 나아가 삼성전자가 LTA 협상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생산 중단을 통해 LTA 협상에 대해 진지함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출처: 소갑 제5호증).

의 생산을 중단하였으며⁷⁴⁾, 그 내역 및 규모는 약 ■■■ 개, 약 ■■■ 달러 수준으로 파악된다.⁷⁵⁾

<표 70> 피심인들의 생산 중단 내역 및 규모 (단위: 천 개, 달러)

구분	부품명	생산량	금액
RFFE			
	소계		
Connectivity			
	합계		

* 출처: 소갑 제1호증

5) 공급 중단 지속과 LTA에 따른 거래 규모에 대한 요구 관찰

가) 삼성전자의 LTA에 대한 구두확약과 피심인들의 제한적 선적 이행

¹⁷⁴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고■■■은 피심인들이 선적을 중단하였음을 파악하고 2020. 3. 6. 오전 브로드컴 본사의 ■■■에게 연락하여 현재 피심인들이 중단 중인 부품 공급을 재개할 경우 피심인들이 요구한 LTA 체결을 고려해보겠다고 언급하였다.

¹⁷⁵ 이에 브로드컴 본사의 ■■■은 아래의 <표 71>과 같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공급 및 LTA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답하였다.

74) 피심인들 답변서(소갑 제1호증)에 따르면 브로드컴 본사의 생산중단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품들의 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75) ■■■ 부품의 경우 2020. 4. 2.부터, ■■■ 부품의 경우 2020. 3. 19.부터, ■■■ 부품의 경우 2020. 3. 20.부터 생산이 재개되었다.

<표 71>

삼성전자 대표이사 고 [] 확인서(2021. 6. 10.) 발췌

문. 2020. 3. 5. 또는 6.경 브로드컴으로부터 선적 중지를 통보받았을 때 유선으로 [] 과 통화한 내역 중 “Apple 보다 좋은 조건”. “장기계약 체결” 등의 표현이 있었는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대화내용은 무엇인지.

답: 당시 본인은 더 이상 일상 비즈니스를 담당하지 않았었지만, 사업부 부탁으로 브로드컴이 갑자기 중단한 부품공급 재개를 요청하기 위해 [] 과 연락을 하였습니다. 현재 중단 중인 부품공급을 재개해 준다면 [] 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Long-Term Partnership”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미 [] 이 언급한 Apple과의 장기 계약보다는 좋은 조건을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은 자신이 부하직원에게 부품의 공급재개 및 Long-Term Partnership에 대한 협상 개시를 지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본인도 송 [] 상무 포함 사업부에게 메시지로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브로드컴의 반응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 출처: 소갑 제19호증

176

한편 삼성전자는 같은 날 아래 <표 72>와 같이 내부적으로 피심인들과의 협상 현안에 대해 검토하면서, 기존의 부품 거래선 다원화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것은 2020년 5월경부터 주요 스마트기기 생산을 위한 부품이 소진될 상황에 놓이는 점, 기존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부품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 []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 신규 스마트기기 개발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스마트기기 사업에 있어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피심인들과의 중장기 협력유지, 즉 LTA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하였다.

2. B社 공급중단時 리스크 및 기본 대응 전략

□ 現상황에서 당초 계획대로 B社 早期 Fade-out^{주1)} 추진시 리스크 大

* Flagship WiFi : B社 비중 '20年 █████ → '21年 █████ 축소(미중일外)

Flagship OMH : █████ → '21年 █████ → '22年 █████ (N-1)^{주2)} → '23年 █████

① B社가 당사 PO를 지속 未대응할 경우, 5月初부터 주요 모델에 대한 자재 수급 이슈 발생 * 보유재고+RTP 기준^{주3)}

- Z Flip/N10(북미) OMH 재고 W19(5月 1주차)에 소진
- S10/N10 (구주) OMH W22(5月 4주차) “
- S20 (구주) OMH W25(6月 3주차) “ 等

② OMH는 이원화 하였고, WiFi는 이원화를 추진中에 있으나 기존 운영모델에 대한 Transition 개발을 위해서는 AP 等 주변 칩셋과의 성능 최적화 및 사업자승인, 공급Capa 확보 등에 장기간 소요

* 최소 █████개월 이상

③ '20年 신규 모델에 대한 개발지연 우려

- N20(구주) : 2~3개월 지연(████████████████████)
- * 이슈 부품 : Connectivity(WiFi/GPS)
- Bean : 1개월 지연(████████████████████)
- *버즈 * 이슈 부품 : Connectivity(BT)

→ 現상황 Risk Management를 위해 중장기(3年) 협력유지 불가피하므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레버리지로 협상 추진 필요

<비공개>

주1)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던 부품 거래선 다원화 전략을 말한다.

주2)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은 '지난해 제품'을 의미하며, 위 보고서의 '████(████)'은 2022년에 █████ 부품의 신규 채택은 없을 것이나, 2021년에 채택한 부품의 거래 계속으로 █████의 거래 비중 유지가 예상된다는 의미이다.

주3) 이하 재고 소진에 대한 예측은 피심인들이 PO 승인 부품을 정상적으로 선적할 것(RTP)이란 가정하에 산정된 것이며, 미선적 시에는 4월 첫째 주부터 재고 소진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였다.(출처: 소갑 제9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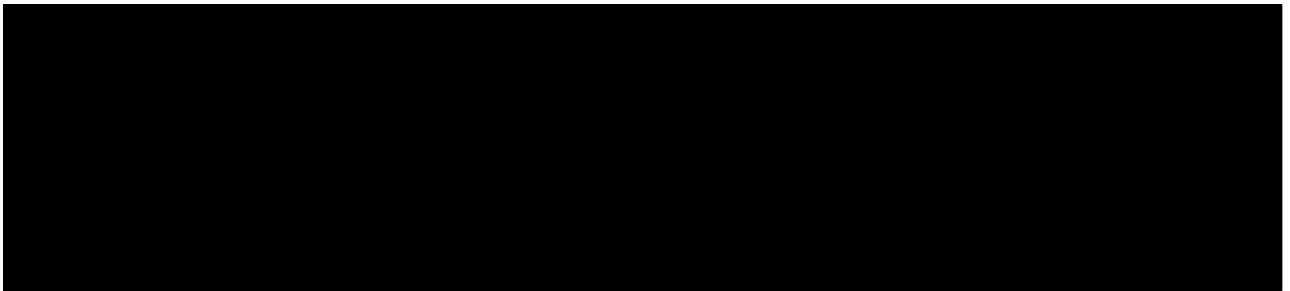
주4) B는 피심인들, █████, █████는 피심인들의 경쟁사인 █████, █████을 의미한다.

* 출처: 소갑 제9호증

177 혹 탄과 고[] 간 연락이 종료된 후 삼성전자의 손[] 및 송[]은 2020. 3. 6.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에게 즉시 선적을 재개하고 구매주문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⁷⁶⁾

178 해당 요청을 받은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은 2020. 3. 6. 아래의 <표 73>과 같이 []에게 삼성전자가 3년간 플래그십 모델에 탑재될 RFFE 및 Connectivity 부품 모두에 대해 LTA 체결을 하겠다는 구두 확약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표 73>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이 브로드컴 본사의 []에게 보낸 전자메일 (2020. 3. 6., []) 발취



* 출처: 소갑 제29호증

179 그러나 []은 이와 같은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래 <표 74>, <표 7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구매주문승인은 재개하지 아니하였다. 대신 전[]의 요청에 따라 긴급 물량분만 선적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74>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과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 간 카카오톡 대화(2020. 3. 6.) 발취



* 출처: 소갑 제15호증

76) 출처: 소갑 제15호증, 제31호증

<표 75>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redacted] 진술조서(2021. 12. 1.) 발췌

문17) 삼성전자의 송 [redacted] 상무가 양사 최고경영진 간 합의에 따라 선적재개, PO회신 등을 요구 하였으나 제한적으로 선적재개만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시오.

답17) 2020.3.6. 삼성전자의 송 [redacted] 상무는 저희회사와의 3년 LTA 체결에 동의해오며 추후 LTA에 포함시킬 내용을 논의해볼 것을 요청하였는데, 저는 곧장 [redacted]에게 이 사실을 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 [redacted] 상무는 제게 선적재개, PO회신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는 [redacted]에게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전제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부품들은 제한적으로라도 선적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redacted]은 제 요청에 응하여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대한 제한적인 선적에 동의하였습니다.

* 출처: 소갑 제14호증

180 피심인들은 아래의 <표 76>과 같이 2020. 3. 7. 및 2020. 3. 13.에 삼성전자와 [redacted]에 약 [redacted]백만 달러 규모⁷⁷⁾의 긴급 물량분을 선적하였다.

<표 76> 피심인들의 긴급 선적 내역 및 규모

(단위: 달러)

긴급 선적일	[redacted]			
	RFFE	Connectivity	Connectivity	Connectivity
2020. 3. 7.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2020. 3. 13.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합계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출처: 소갑 제5호증

181 한편 브로드컴 본사가 삼성전자에 구매주문승인을 지속 거부하고 일부 선적만 진행한 사실은 아래의 <표 77>과 같이 삼성전자의 내부 문건에서도 확인된다.

<표 77> 삼성전자 보고자료(B社 커뮤니케이션 이력) 발췌

□ 3/6일 (전 [redacted] 이사장 - 송 [redacted] 상무, 손 [redacted] 상무 미팅 @ 수원)
 - 전 [redacted] 이사장은 LTA가 되어야 PO 해결된다고 답변하고
일부 8/14개 부품에 대해 선적 시작

* 출처: 소갑 제9호증

나) RFFE 및 Connectivity 부품 모두를 피심인들 부품만 채택하도록 하는 요구를 지속하여 관철시킴

77) 해당 규모는 2020. 3. 5.부터 2020. 3. 27. 동안 선적이 예정되어 있던 전체 선적 중단 규모인 [redacted] 달러의 약 [redacted]% 수준에 불과하다.

182 삼성전자는 2020. 3. 9. 아래 <표 78>과 같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등에 피싱인들의 Connectivity 부품을 ■■■% 탑재하고 피싱인들의 RFFE 부품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상당 비중⁷⁸⁾을 탑재하는 방안을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에게 제안하였다.

<표 78> 삼성전자 보고자료(B社 커뮤니케이션 이력) 발췌

□ 3/9일 2차 협상 결과 (전■■■ 지사장, 함■■■ 전무 - ■■■상무 @ 수원)

<중략>

[당사 제안 내용]

- 아래 Component 협력에 대해 **3년 장기계약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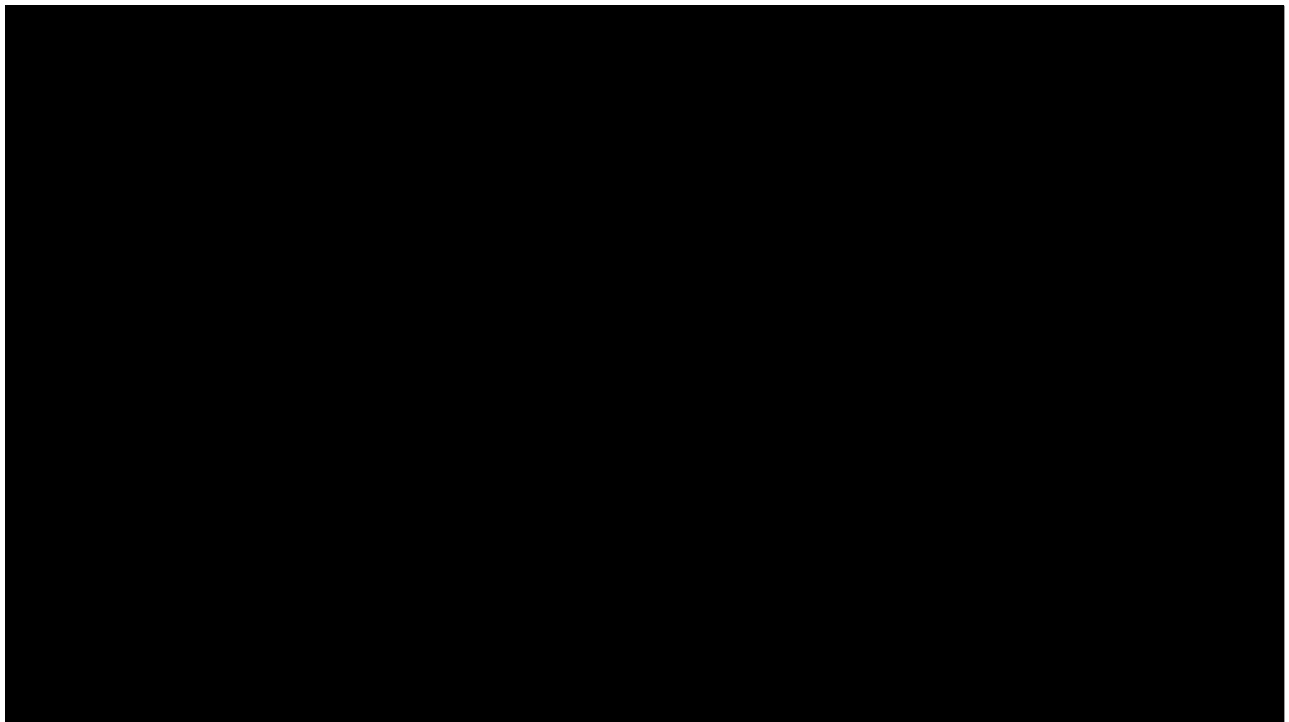
- ① **Connectivity는 Flagship ■■■% 커밋** (WiFi/BT, GPS for Flagship & WiFi/BT for Wearable, BT for Hearable 포함)
- ② **RFFE는 ■■■ 제외 지역에 대한 커밋**

* 출처: 소갑 제9호증

183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은 2020. 3. 9. 아래의 <표 79>와 같이 삼성전자의 제안을 브로드컴 본사의 ■■■에게 보고하였다.

78)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은 해당 RFFE 부품의 탑재 비중을 2021년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전체 물량의 약 ■■■%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표 79>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이 브로드컴 본사의 []에게 보낸 전자메일 (2020. 3. 9., []) 발췌



* 출처: 소갑 제29호증

184 []은 삼성전자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아래의 <표 80>과 같이 전 []에게 삼성전자로부터 피싱인들의 RFFE 부품 []% 탑재 또는 [] 달러 거래 조건 중에 하나를 확약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80>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과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 간 카 카오투크 대화(2020. 3. 9.) 발췌

[전성민] [오후 1:51] <u>After [] talked with [], he asked me to push Samsung either []% WSD or \$[] revenue commitment. I do not know what to do...</u>
[Vijay Nagarajan (WCC)] [오후 1:51] []
[Vijay Nagarajan (WCC)] [오후 1:52] []

* 출처: 소갑 제15호증

185 이에 전 []은 2020. 3. 10. 삼성전자의 송 [], 손 []에게 []의 위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다.

186 삼성전자는 해당 제안을 거절하였다. 대신 아래의 <표 81>과 같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해당하지 않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피심인들의 RFFE 부품을 추가로 탑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표 81> 삼성전자 보고자료(B社 커뮤니케이션 이력) 발췌

<input type="checkbox"/> 3/10일 협상 경과 * VC █████ (Sales Head), 전 █████ 지사장, 함 █████ 전무 - 손 █████ 상무, 송 █████ 상무 <input type="checkbox"/> B社 요청 : 하기 2가지 옵션 中 하나로 결정을 요청 ① 금액적으로 \$████ 보장 또는 * B社 내부 검토시 당사 1차 offer(Connectivity █████%, RFFE 미중일 제외)는 █████M 미달을 우려함 ② 당사 Flagship(S/N)에 Connectivity 및 RFFE 모두 █████% 적용 <input type="checkbox"/> 당사 답변 : 2가지 옵션 모두 수용 불가 - 폴더블용 OMH █████% 커밋時 타결 가능성이 先 확인되면, 당사 경영진 재가를 추진하겠음 - B社 내부 검토後 3/11일 오전內 회신 주기로 함
--

* 출처: 소갑 제9호증

187 전 █████은 2020. 3. 10. █████에게 삼성전자의 제안을 전달하였고 █████은 2020. 3. 11. 삼성전자의 제안을 재차 거절하였다.⁷⁹⁾

188 결국 삼성전자는 2020. 3. 13.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에게 아래의 <표 82>와 같이 피심인들의 선적과 구매주문승인 즉시 재개 등을 전제로 향후 3년간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 및 노트 시리즈에 피심인들의 RFFE 및 Connectivity 부품만을 탑재할 것을 약속하였다.

79) 그리고 브로드컴 본사의 █████로 하여금 직접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임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82>

삼성전자 보고자료(B社 커뮤니케이션 이력) 발췌

□ 3/13일 미팅 결과 (Video Call)

* [redacted] (Sales Head), 전 [redacted] 지사장, 함 [redacted] 전무 - 손 [redacted] 상무, 송 [redacted] 상무

- 당사 제안 내용 (B社의 기존 2개 案으로만 지속 요청에 대해..)

· 3년간 S/Note 대상 Connectivity [redacted]%, RFFE [redacted]%

단, 크게 3가지 전제조건 보장 필요

- ① 공급 최우선, 가격 경쟁력, KPI 충족, 개발지원
- ② Connectivity IP 협력
- ③ Shipping 및 RTP는 바로 대응

- B社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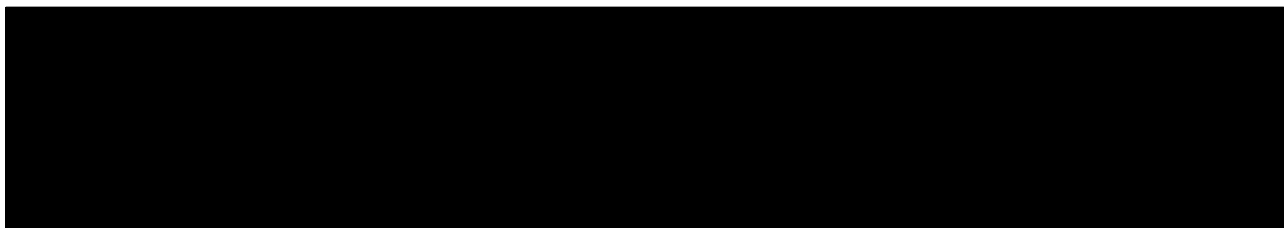
- 삼성이 요청한 전제조건을 기본적으로 수용
- Shipping 및 RTP 대응은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출처: 소갑 제9호증

다) 플래그십 정의에 대한 의견 대립 및 삼성전자에게 신속한 결정 재촉

189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대한 피심인들의 RFFE 및 Connectivity 부품 [redacted]% 채택 요구를 수용하자,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redacted]은 2020. 3. 13. 아래의 <표 83>과 같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650달러 이상인 스마트폰으로 새롭게 정의한 LTA 안을 삼성전자의 손 [redacted]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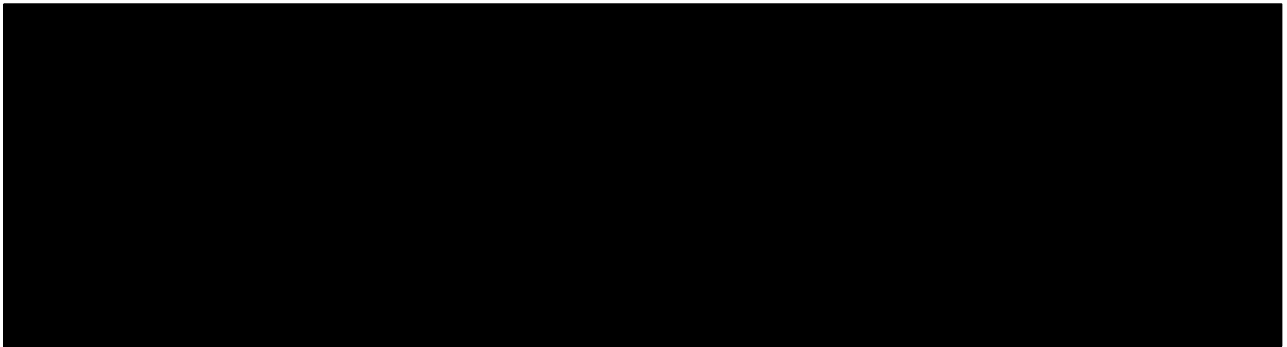
<표 83>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redacted]이 삼성전자의 손 [redacted]에게 보낸 전자메일(2020. 3. 13., [redacted])의 첨부파일 ([redacted]) 발췌



* 출처: 소갑 제32호증

190 피심인들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650달러 이상인 스마트폰으로 정의한 이유는 아래의 <표 84>와 같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수요가 폴더블 스마트폰과 같은 플래그십에 해당하지 않는 스마트폰으로 대체되어 장래에 갤럭시 S와 노트의 판매량이 줄어들 경우 피심인들의 매출이 보장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표 84>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 과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 간 카
카오톡 대화(2020. 3. 14.) 발췌



* 출처: 소갑 제15호증

191 이에 삼성전자는 2020. 3. 16. 브로드컴 본사의 [] 에게 아래의 <표 85>와 같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갤럭시 S 및 노트와 그 후속 모델을 의미함을 전달하였다.

<표 85> 삼성전자 보고자료(B社 커뮤니케이션 이력) 발췌

다음은 [] 가 먼저 공유한 BCOM입장입니다.

<중략>

- 예를 든 것이, Foldable은 Flagship이 아니라는 당사의 입장은 이해하나, Foldable이나 다른 제품군의 시장이 커져서 S/N 수요를 잠식하면 매출 타격이 클 거라고 노골적인 입장
 - B사 입장은 미래구간 매출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임. 그래서 금액 기준의 협력을 제안한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삼성이 원하는 부품을 제약 없이 원하는 곳에 활용하면 문제 없음
- 이에 대한 당사 입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해줬습니다.

<중략>

- Flagship의 정의는 S/N 대체 단말에 대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 Successor 단말을 포함하는 것으로 준비중이나 Foldable은 상품 특성상 (개발/기획의도 등) Flagship 대상 아님

* 출처: 소갑 제9호증

192 브로드컴 본사의 [] 는 2020. 3. 18. 아래의 <표 86>과 같이 삼성전자에게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650달러 이상인 스마트폰임을 재차 고수하였다.

193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갤럭시 S 및 노트와 그 후속 모델을 의미함을 다시 전달하면서 아래의 <표 86>과 같이 피심인들의 우려를 불식시

킬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전달하였다.

<표 86> 삼성전자 보고자료(B社 커뮤니케이션 이력) 발췌

- BC : 대상 프로덕트는 \$650 (Lite/A 제외)로 유지 (대체품을 통한 Revenue Uncertainty를 제거하기 위함)
→ Flagship은 S/N series ONLY이며, 당사는 지난 협상 기간 줄곧 이에 대한 동일한 입장을 투명하게 공유해왔으며 변화 없음
→ 해당 Wording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나, BCOM의 Uncertainty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른 옵션을 포함 내부 논의하겠음

* 출처: 소갑 제9호증

194 피심인들은 삼성전자가 피심인들의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려 하자 피심인들의 제안을 고수하기 위해 삼성전자에게 서둘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⁸⁰⁾하였고, 삼성전자는 내부 논의 중임을 이유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6) 최소 구매금액 방식의 LTA 체결 및 거래 정상화

195 앞서 살펴본 대로 삼성전자는 2020. 3. 18. 브로드컴 본사의 ██████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650달러 이상인 스마트폰임을 재차 고수하자 아래의 <표 87>과 같이 여러 가지 LTA 타결방안을 검토하였다.

196 그리고 삼성전자는 검토한 방안 중 최소 구매금액 방식으로 LTA 타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20. 3. 24. 브로드컴 본사의 ██████와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에게 연간 ‘████ 달러 ± █████%’ 구매, 즉 █████억 달러 이상을 구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80)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에 의해 2020. 3. 19., 20., 21. 세 차례 요청이 있었다. 한편, 전████은 2020. 3. 21.에는 브로드컴 본사로부터 주말이 지나면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음을 언급하며 브로드컴 본사의 ██████에게 양해를 구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삼성전자는 이를 받아들여 ██████에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양해를 구하였다.(출처: 소갑 제31호증, 제33호증)

<표 87> 삼성전자 보고자료(B社 현안 보고, 2020. 3. 24.) 발췌

3. 타결 추진방안

금액 기준 타결로 플래그십 이원화 추진모델 확보

1案) “**■ \$± %**” 제시 (**■ 억\$ 이상時 구매의무 만족**)

※ 플래그십 中 폴더블 등을 통해 이원화 지속 추진

2案) 1案 거부시, “3년 토털 버킷 **■ \$**”로 협상 추진

3案) B社 요구사항 수용(\$650↑ 스마트폰 100% 구매보장)

※ Lite, A 모델로 플래그십 이원화 솔루션 확보 / B社 구매금액 예상 '21년 **■ \$**

※ 3/24日 협의時 당사는 1案을 제시, B社는 당일 9시까지 회신키로 함

* 출처: 소갑 제9호증

197 이에 피심인들은 2020. 3. 25. 삼성전자에 연간 **■** 달러 이상 구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같은 날 삼성전자는 피심인들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198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브로드컴 싱가포르와 삼성전자는 LTA 문안 조율을 거친 후 2020. 3. 27. LTA에 서명하였다.

199 같은 날 브로드컴 본사는 삼성전자와의 LTA가 체결되자 아래의 <표 88>과 같이 삼성전자, **■**, **■**에 대한 거래를 즉시 정상화하였다.

<표 88> 피심인 답변서(2021. 11. 9.) 발췌

5-8. 귀사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및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모듈업체인 **■**, **■**에 대하여 기술지원과 PO acknowledgement, PO accept 및 선적을 온전히 재개한 시점은 언제이며, 재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0년 3월 27일 LTA가 체결됨에 따라 브로드컴은 삼성전자, **■**, **■**에 대한 기술지원, PO acceptance, PO acknowledgement 및 선적을 전면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세 회사 모두에 대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 출처: 소갑 제5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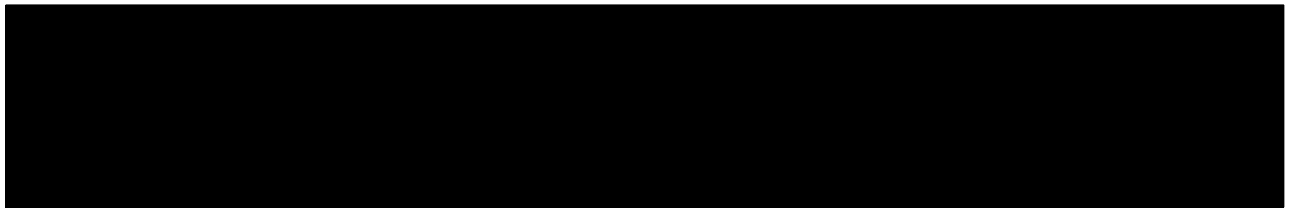
7) LTA의 주요 내용 및 삼성전자의 LTA 이행

가) LTA의 주요 내용

(1) 일반 사항

200 LTA는 아래의 <표 89>과 같이 그 전문에서 명시한 것처럼 삼성전자가 피심인들에 대해 연간 최소구매금액에 동의하는 대가로 피심인들이 삼성전자에게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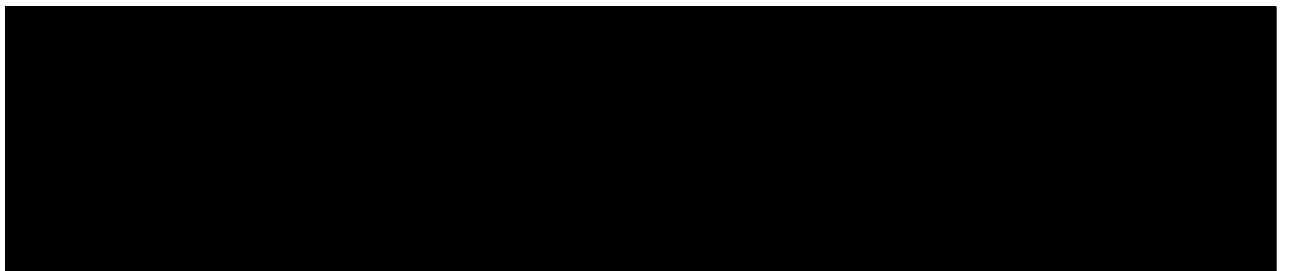
<표 89> [REDACTED] 발췌



* 출처: 소갑 제13호증

201 LTA는 2021. 1. 1.부터 2023. 12. 31.까지 유효하고, LTA가 적용되는 부품은 피심인들이 공급하는 중·고대역 PAMiD⁸¹⁾, Wi-Fi, BT, GNSS 및 그 밖의 RF 부품이며, 부품이 탑재되는 제품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및 TWS 이어폰 등이다(LTA 제A조).

<표 90> [REDACTED] 발췌



* 출처: 소갑 제13호증

202 양측은 삼성전자가 LTA에 따라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부품의 목록(대상목록, Target Components)을 2020. 7. 1.까지 합의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 협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LTA 제C조 제1항).⁸²⁾

81) OMH PAMiD 부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82) 피심인들과 삼성전자는 2020. 7. 2. 대상 부품에 대해 한 차례 합의하였다. 2021. 1월경에도 대상 부품을 합의하려 하였으나,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가 확정되지 않았다.(출처: 소갑 제6호증)

<표 91> [REDACTED] 발췌

[REDACTED]

* 출처: 소갑 제13호증

203 그리고 상대방이 LTA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그 위반내역이 6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이 파산에 이르는 경우, 서면 통지 방식으로 LTA를 종료할 수 있다(LTA 제I조).

<표 92> [REDACTED] 발췌

[REDACTED]

* 출처: 소갑 제13호증

(2) 삼성전자의 의무

204 먼저, 삼성전자는 매년 피심인들의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을 미화 [REDACTED] 달러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LTA 제B조)⁸³⁾.

<표 93> [REDACTED] 발췌

[REDACTED]

* 출처: 소갑 제13호증

83) 이하 최소구매금액 의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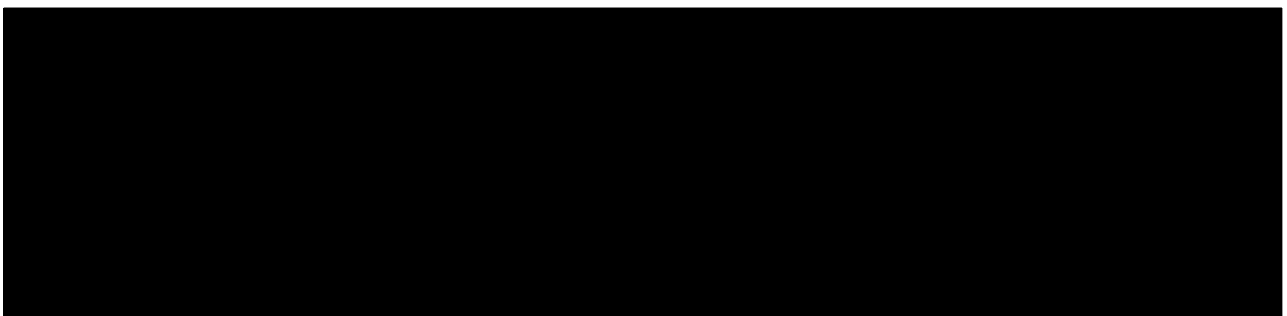
<표 95> [REDACTED] 발취



* 출처: 소갑 제13호증

207 그리고 피심인들은 아래의 <표 96>과 같이 당해 계약에 따른 삼성전자의 구매주문에 [REDACTED]영업일 이내에 응답하고(LTA 제C조 제6항), 해당 부품의 생산종료 [REDACTED]년 전까지는 삼성전자에 생산종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LTA 제C조 제7항).

<표 96> [REDACTED] 발취



* 출처: 소갑 제13호증

나) 삼성전자의 LTA 이행

208 삼성전자는 '선적 시점'을 기준으로 LTA에 따른 [REDACTED] 달러 구매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⁸⁵⁾

209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LTA 이행을 위해 2021년도 중에 ■■■ 달러분의 부품이 선적될 수 있도록 리드타임⁸⁶⁾을 감안하여 2020. 5. 27.부터 2021. 3. 31.까지 ■■■ 달러분의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을 구매주문하였다. 2021. 3. 31. 기준 삼성전자가 2021년도 LTA 최소구매금액 의무 이행을 위해 구매주문한 내역은 아래 <표 97>과 같다.⁸⁷⁾⁸⁸⁾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97> 2021년 의무구매금액 충족을 위한 삼성전자 구매주문 내역(2021. 3. 31. 기준)

구분	구매주문 내역	
	Connectivity	수량
금액		
RFFE (OMH PAMiD)	수량	
	금액	
합계	수량	
	금액	

* 출처: 소갑 제6호증

210 삼성전자는 2021년 최소구매금액 충족을 위해 구매주문하는 과정에서 피싱인들의 경쟁사 부품을 채택하려던 애초 계획을 반복하고 피싱인들의 부품을 추가로 채택하여 구매하거나 2022년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품을 2021년에 미리 선적되도록 구매함으로써 피싱인들 부품 구매금액을 증가시켰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20. 6. 29. 갤럭시 S21 구주향의 RFFE 구매계획 변경

211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 구주향에 탑재할 OHM PAMiD에 대해 아래 <표 9

85) 삼성전자와 피싱인들은 삼성전자의 의무구매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행위에 대해서는 LTA 또는 부속문서로 서면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86) 앞서 1. 마. 4) 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Connectivity의 리드타임은 12주, RFFE의 리드타임은 ■■■주이나, 삼성전자 주장에 따르면 피싱인들은 2020. 4. 14. 리드타임을 일방적으로 ■■■주로 연장하였으며, 2021. 1. 18.에는 ■■■주로, 2021. 3. 16.에는 50주까지 연장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최소구매금액 의무 이행을 위해 실제 부품이 필요한 시점보다 ■■■주에서 ■■■주 전의 시점에 구매주문을 하여야 했다.(출처: 소갑 6호증)

87) 이 같은 삼성전자의 구매주문에 대해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도 삼성전자가 2021년도에 LTA를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출처: 소갑 제14호증)

88) 2021. 3. 31. 이후에는 2022년도의 최소구매금액 의무 이행을 위한 구매주문이 지속되었다.

8>과 같이 [redacted]의 부품을 채택하기로 계획하였으나, LTA 최소구매금액 충족을 위해 2020. 6. 29. 이를 번복하고 아래 <표 99>, <표 100>과 같이 피싱인들의 부품으로 변경하였다.

<표 98> S21_RFFE 선정_20200615_최종(삼성전자 제출자료) 발취

2. OMH LPAMiD	
▶ 대상 업체 :	[redacted] / [redacted] / [redacted]
	※ 신규 도입 검토
▶ 성능 데이터 :	[redacted] > [redacted], [redacted] >> [redacted]
<비공개>	

주」 Global은 구주향, NA는 미주향 제품을 의미한다.

* 출처: 소갑 제43호증

<표 99> [회의록] S21 신규 부품 성능 평가 현황(삼성전자 제출자료) 발취

[Redacted Content]	
--------------------	--

* 출처: 소갑 제44호증

<p>GS21용 OMH LPAMiD의 경우, KPI^주를 처음 도입하여 이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당초 ■■■■■ AP에는 ■■■■■ 부품을 ■■■■■의 AP에는 ■■■■■사 부품을 탑재하려 했으나, ■■■■■과 체결한 LTA상 최소구매금액인 ■■■■■불을 충족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 AP 모두에 ■■■■■ 제품을 채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p>

주」 KPI란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채택할 Connectivity 및 RFFE 부품의 성능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2020년 도입한 내부 평가 기준이다.

* 출처: 소갑 제9호증

(2) 2021. 2. 8. 갤럭시 S21FE, S22의 RFFE 및 Connectivity 구매계획 변경

212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 RFFE 부품 변경에 따라 2020. 5. 27.부터 2021. 2. 8. 까지 ■■■■■ 달러분의 부품을 주문하였다. 삼성전자는 2021. 1. 29. 아래 <표 101>과 같이 피심인들 부품에 대한 예상 구매액을 분석하였는데, 해당 시점에서 피심인들 부품에 대한 구매 수요가 최대 ■■■■■ 달러에 불과하여 LTA에 따른 2021년도 최소 구매금액 의무 이행을 위해 부품 구매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1. B社 구매액('21년 계획 기준) : █████\$ 전망

(억\$, M台)

<비공개>

2. 당초 예상比 감소 사유 : 당초 █████\$ → 現전망 █████\$(Δ████\$↓)

① FE 확대 및 플래그십 물량 감소 영향 : █████\$ 감소

② S21(저가Seg.) RFFE 저가구조(OMH → FEMiD)로 변경 : █████\$ 감소

(백만대, 백만\$)

<비공개>

주」 해당 수치는 2020년 3월 중 상황별로 예상되는 피심인들 부품 구매금액을 추정해본 자료에 기반한 수치이며,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RFFE 및 WiFi/BT 콤보 부품에 대해 █████% 피심인들 부품을 채택했을 경우 예상되는 부품 구매금액에 해당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들 부품을 WiFi/BT █████%, RFFE █████% 채택하는 경우 █████ 달러, WiFi/BT █████%, RFFE █████% 채택하는 경우에는 █████ 달러에 해당하는 수치를 예측하였다. (출처: 소갑 제9호증)

* 출처: 소갑 제9호증

213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LTA 최소구매금액 의무 이행을 위해 2021. 2. 8. 아래의 <표 102>와 같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피심인들에게 추가로 █████ 달러의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102> 삼성전자 보고자료(B社 부품 추가 구매방안, 2021. 2. 8.) 발췌

<input type="checkbox"/> '21年 구매 의무 금액 \$760M 中 현재 █████\$ 구매完 * S21, Buds, Watch4 시리즈 等 <input type="checkbox"/> 부족분 △████\$ 달성 위한 추가구매 방안으로, 1) S21 FE OMH/WiFi를 B社로 변경 및 '22년분까지 先 구매 (████\$) *유럽 *미주 *████대 2) S22 일부 B사 부품 적용하고 '22년분 先 구매 (████\$) - B社 부품 적용時 가격 상승 比 B社 구매액 증감이 큰 것에 집중 - S22 總물량 █████대 中 Plus/Ultra █████대 기준의 약 █% 先발주 진행 필요 * FE제외 █████%/████% (████% 제외) * █████백만대
--

* 출처: 소갑 제9호증

214 먼저 삼성전자는 장래 갤럭시 S21FE⁸⁹⁾의 OMH PAMiD 부품 및 WiFi/BT 콤보 부품을 █████과 █████의 부품으로 이원화하려 하였으나, 아래의 <표 103>과 같이 모두 피심인들의 부품을 탑재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고 2022년에 필요한 수량을 모두 선구매하기로 결정하여 █████ 달러의 구매금액을 확보하였다.

<표 103> 삼성전자 보고자료(B社 부품 추가 구매방안, 2021. 2. 8.) 발췌

모델	기존	1/30 보고時		수정	
		변경	B구매액 (재료비증加分)	변경	B구매액 (재료비증加分)
█████	OMH	█████	█████	█████	█████
	WiFi				
	GPS				

* 출처: 소갑 제9호증

215 다음으로 삼성전자는 2022년도에 출시예정인 갤럭시 S22의 OMH PAMiD 부품 및 WiFi/BT 콤보 부품을 모두 █████의 부품으로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아래의 <표 104>와 같이 갤럭시 S22 플러스 및 울트라에는 피심인들의 OMH PAMiD 부품 및 WiFi/BT 콤보 부품을 탑재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고 다음 연도에 필요한 수량

89) 삼성전자의 플래그십인 갤럭시 S21의 보급형(Mass) 모델이다.

을 선구매하기로 결정하여 [redacted] 달러의 구매금액을 확보하였다.

<표 104> 삼성전자 보고자료(B社 부품 추가 구매방안, 2021. 2. 8.) 발취

모델	기존	1/30 보고時		수정	
		변경	B구매액 (재료비증加分)	변경	B구매액 (재료비증加分)
	OMH (+/Ultra)				
	OMH (기본)				
	WiFi (+/Ultra)				
	WiFi (기본)				

* 출처: 소갑 제9호증

216 이후 삼성전자는 위 구매계획 변경에 따라 [redacted] 달러분의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을 추가구매 하였다.

<표 105> 삼성전자 답변서(2022. 1. 20.) 발취

6-4-3. 귀사 무선사업부가 브로드컴과의 LTA 이행을 위해 2021. 2. 8. 이후 추가 발주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추가 발주한 내역이 드러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귀사가 2021. 7. 30. 위원회에 제출한 첨부자료 8-4와 비교할 때 변화된 내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2021. 7. 30.자 답변 첨부자료 8-4와 비교하여 변화된 내역은 갤럭시 S21FE 및 S22 OMH/WiFi 수량이 일부 감소하고 대신 갤럭시 Watch 4용 WiFi IC 수량이 일부 증가한 점입니다. 2021. 2. 당시에는 S21FE와 S22용 OMH/WiFi 물량을 각각 [redacted] 달러와 [redacted] 달러 규모로 예상하였으나(2021. 7. 30.자 답변 첨부자료 8-4), 실제 발주는 각각 [redacted] 달러와 [redacted] 달러 규모로 이루어졌고, 대신 갤럭시 Watch 4용 WiFi IC 발주가 [redacted] 달러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 출처: 소갑 제6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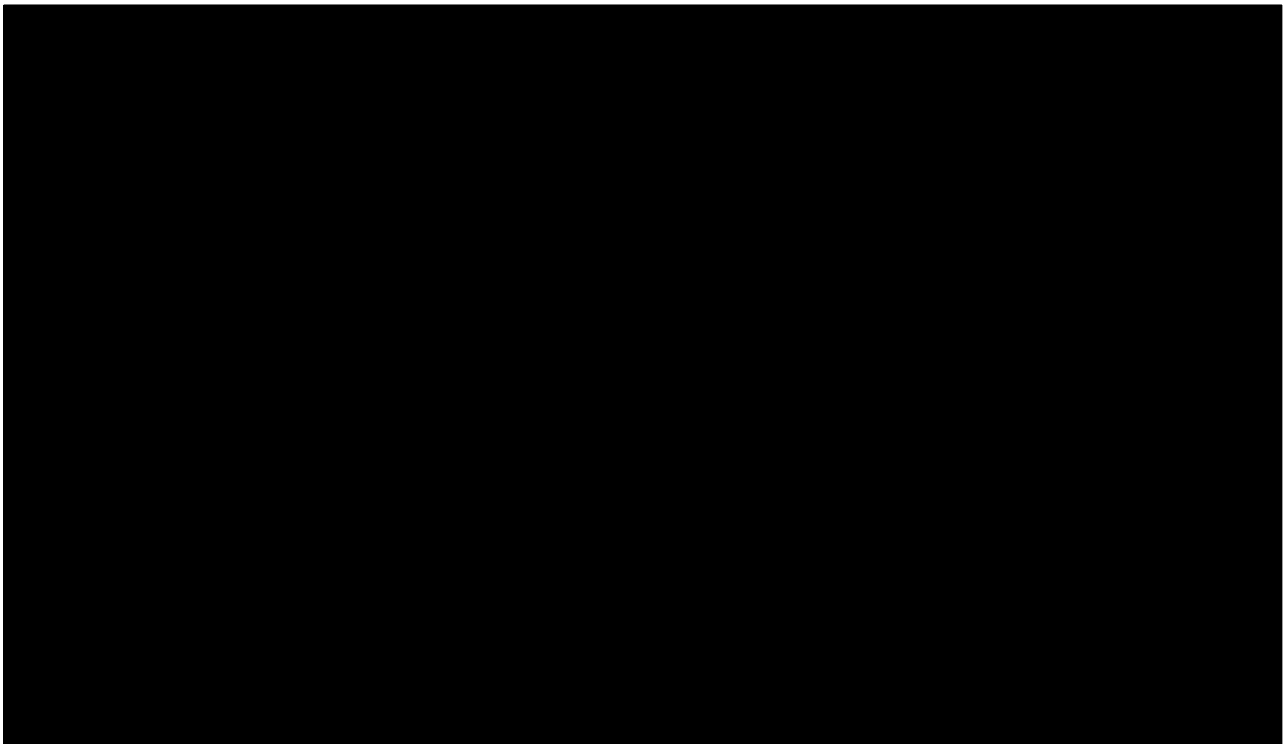
8) LTA 종료

217 피심인들은 2021. 3. 31. 삼성전자의 구매주문이 완료되자 내부적으로 삼성전

자와의 사업관계를 검토하였고, 삼성전자가 2022년도에는 LTA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삼성전자의 사업 상황에 맞추어 LTA의 구체적인 조건을 수정하는 방안을 삼성전자와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218 브로드컴 본사의 ██████████는 2021. 5. 3. 삼성전자의 김██████과 송██████에게 아래의 <표 106>과 같이 양사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LTA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106> 브로드컴 본사의 ██████████가 삼성전자의 김██████, 송██████에게 보낸 전자 메일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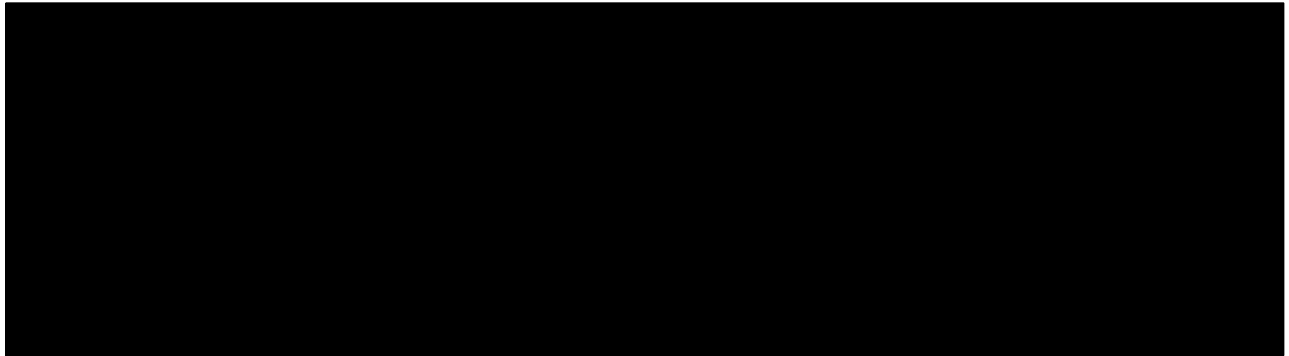
* 출처: 소갑 제5호증

219 이에 삼성전자의 송██████은 2021. 5. 7. LTA 수정에 동의하며 브로드컴 본사의 ██████████로 하여금 먼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20 그러자 ██████████는 2021. 5. 11. 삼성전자의 송██████에게 연간 구매금액을 재고하고 있음을 전달하였고, 브로드컴 본사는 내부적으로 삼성전자의 2022년도 예상 구매금액이 아래 <표 107>과 같이 ████████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하고, 이

를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2022년 LTA 최소구매금액 의무를 다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다.⁹⁰⁾

<표 107> 브로드컴 본사 검토 자료([REDACTED])



* 출처: 소갑 제5호증

221 한편 삼성전자도 아래의 <표 108>과 같이 2022년도 피심인들로부터의 예상 구매금액을 [REDACTED] 달러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표 108> 삼성전자 보고자료(B社 부품 추가 구매 방안, 2021. 2. 28.) 발췌

② S22 선발주로 인해 ^주 '22년 구매액 [REDACTED]\$로 크게 미달 전망 · S22 [REDACTED]\$, S22 FE [REDACTED]\$, Fold4 [REDACTED]\$, Z Flip3 [REDACTED]\$, 워치 [REDACTED]\$, TWS [REDACTED]\$
--

주」 삼성전자는 2021년의 의무구매금액 충족을 위해 2022년에 사용할 갤럭시 S21FE 및 S22에 탑재되는 피심인들 부품을 2021년 미리 주문(선발주)함으로 인해 2022년 구매금액이 미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소갑 제9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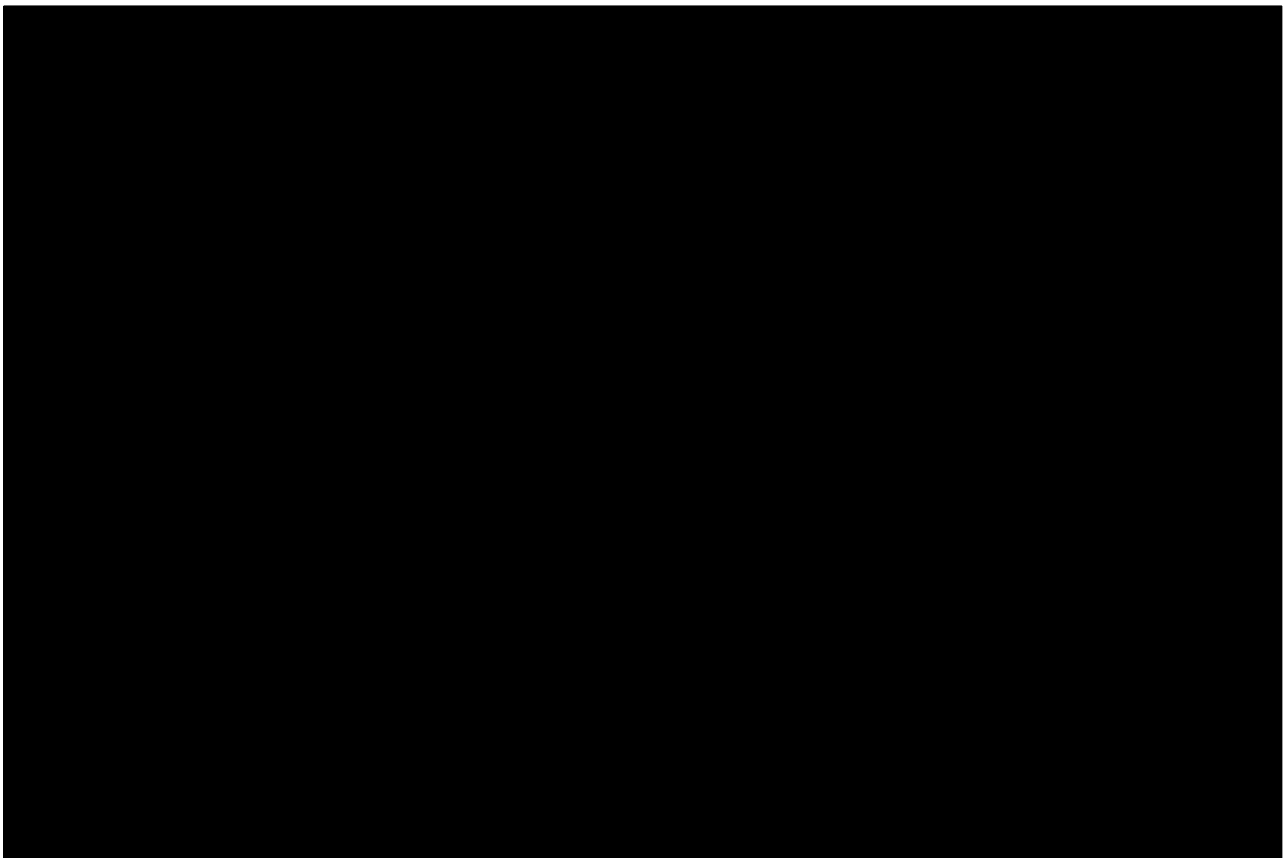
222 피심인들은 2021. 5. 21. 삼성전자에게 5년간 매년 [REDACTED] 달러를 구매하는 내용의 LTA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223 삼성전자의 송 [REDACTED]은 2021. 6. 24.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REDACTED]과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REDACTED]에게 아래의 <표 109>와 같이 2021년도에 LTA 목표금액

90) 다만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2021. 6. 18. 브로드컴 코리아의 함 [REDACTED]가 삼성전자의 송 [REDACTED]·윤 [REDACTED]에게 보낸 전자메일을 통해 삼성전자가 2022년 상반기의 구매목표량인 [REDACTED] 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Samsung does not appear to be on track for the [REDACTED]M target for 1H2022)며 삼성전자의 2022년도 최소구매금액 의무 이행을 압박하였다.(출처: 소갑 제6호증)

달성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2022년에는 ■ 달러조차도 근접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심인들이 제안한 LTA 수정안은 최소 구매금액이 ■ 달러(■ 달러×3년)에서 ■ 달러(■ 달러×5년)로 증가하여 삼성전자의 부담이 더욱 커지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현행 LTA는 유지될 수 없기에 LTA에 대해 숙고(reflect further)해달라고 요청(invite)하였다.

<표 109> 삼성전자 송■이 피심인들의 ■과 전■에게 보낸 전자메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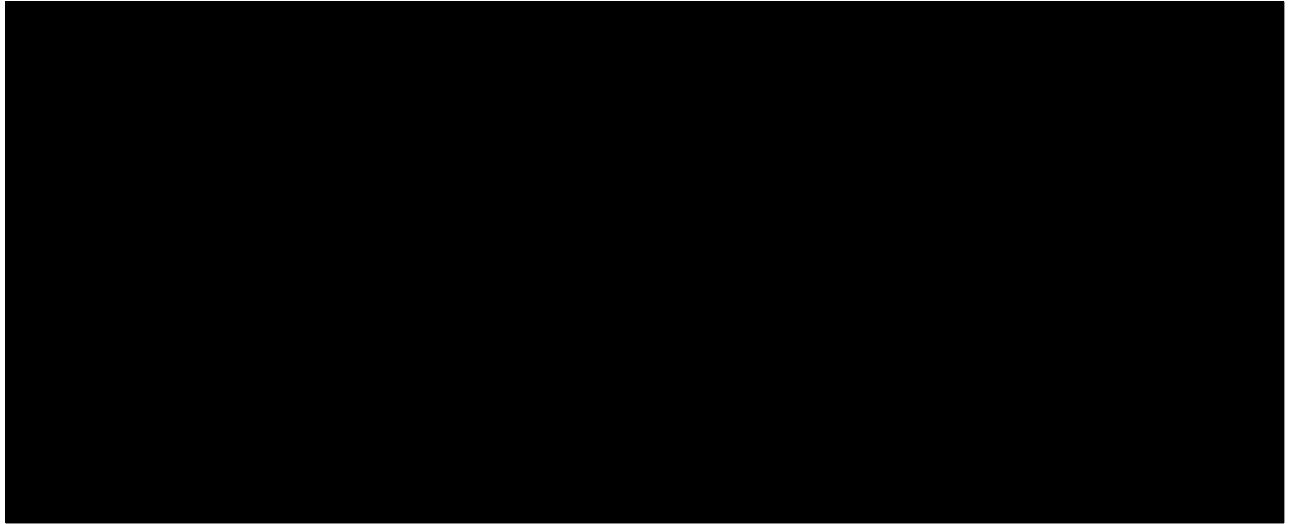


* 출처: 소갑 제5호증

224 이에 브로드컴 본사의 ■은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을 통해 2021. 6. 30. 아래의 <표 110>과 같이 삼성전자의 LTA 종료(terminate) 요청(request)을 받아들여⁹¹⁾ 2021. 7. 2.자로 LTA를 종료할 예정임을 전달하였다.

91) 피심인들은 삼성전자의 위 2021. 6. 24. LTA에 대해 숙고해달라는 요청을 LTA 종료요청으로 받아들여 삼성전자가 LTA 종료를 먼저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1. 5. 3. LTA의 수정을 피심인들이 먼저 요청한 점, LTA에 대한 숙고 요청은 위 <표 10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이익(interests)을 더 많이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불과한 점, 해당 메일에서 현행 LTA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표현한 것은 피심인들의 LTA 수정 요청에 동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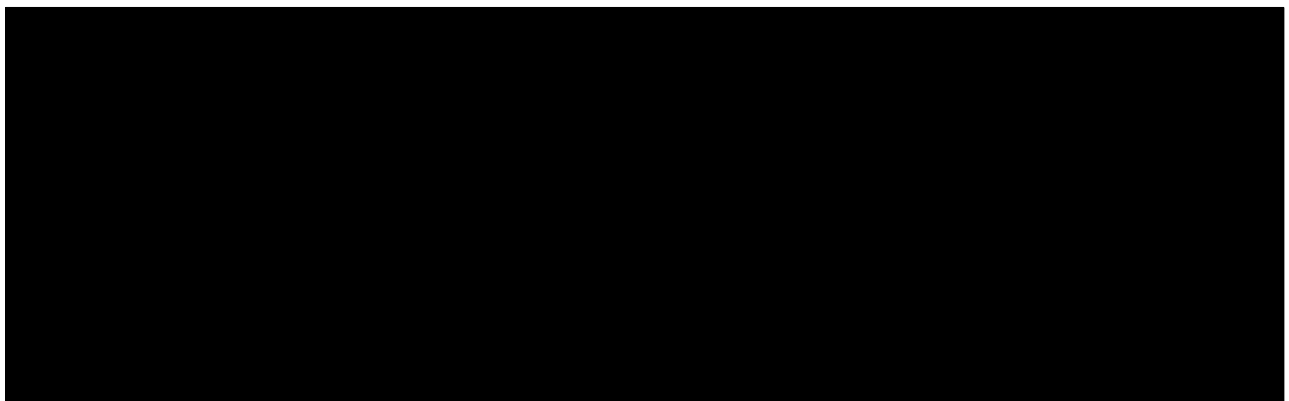
<표 110> 피심인들 [REDACTED] 이 삼성전자 송 [REDACTED] 에게 보낸 전자메일
([REDACTED])



* 출처: 소갑 제5호증

225 이후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브로드컴 싱가포르와 삼성전자는 2021. 8. 17. 아래의 <표 111>과 같이 LTA를 2021. 7. 2.자로 소급하여 종료하는 내용의 계약에 서명하였다.

<표 111> LTA를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지합의서



* 출처: 소갑 제34호증

나. 근거

는 점 등에서 피심인들이 LTA의 종료를 먼저 주장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삼성전자도 공급 중단 리스크를 우려하여 LTA의 해지를 직접 요구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다(출처: 소갑 제6호증).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 제13호증, 제34호증, 제45호증, 제48호증(피심인 답변서, 의견서, 설명자료), 소갑 제3호증, 제6호증, 제9호증(삼성전자 답변서), 소갑 제4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38호증, 제50호증(퀄컴 답변서), 소갑 제10호증, 제36호증(애플 답변서), 소갑 제11호증, 제35호증(엘지전자 답변서), 소갑 제25호증(삼성전기 답변서), 소갑 제37호증(무라타 답변서), 소갑 제42호증(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답변서), 소갑 제46호증(엔엑스피 답변서), 소갑 제47호증, 제49호증(코보 답변서), 소갑 제51호증(미디어텍 답변서), 소갑 제12호증, 제15호증 내지 제18호증, 제21호증, 제23호증, 제24호증, 제26호증, 제28호증 내지 제30호증, 제39호증, 제41호증(피심인들 임직원 간 주고받은 전자메일 및 카카오톡 대화), 소갑 제27호증, 제31호증 내지 제33호증, 제40호증(피심인들과 삼성전자의 임직원 간 주고받은 전자메일 및 카카오톡 대화), 소갑 제14호증(피심인 임원 전■■■■■ 진술조서), 소갑 제19호증(삼성전자 임원 고■■■■■ 확인서), 소갑 제20호증(삼성전자 임원 김■■■■■ 확인서), 소갑 제22호증(삼성전자의 브로드컴 협상이력), 소갑 제43호증(GS21 신규 RFFE 부품 선정), 소갑 제44호증(삼성전자의 김■■■■■이 삼성전자의 최■■■■■ 등 내부직원에게 보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⁹²⁾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92)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②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⁹³⁾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2) 법리

227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28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자의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93)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4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데 있다.⁹⁴⁾

229 또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불이익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 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데 있다.⁹⁵⁾

230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상지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31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⁹⁶⁾은 불이익제공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⁹⁷⁾

가) 거래상지위의 판단기준

232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

94)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두10299 판결, 서울고법 2003. 7. 24. 선고 2002누10768 판결 참조

95)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두5327 판결 참조

96) 2020. 7. 2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5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97) 심사지침 V. 6. 라. (2) 및 V. 6. (4) 참조

당항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⁹⁸⁾

233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거래관계 여부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거래의존도는 통상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의존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⁹⁹⁾

나) 부당한 불이익제공 여부의 판단기준

234 대법원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¹⁰⁰⁾

235 심사지침은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⁰¹⁾

라.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8)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서울고법 2002. 12. 12. 선고 2001누14626 판결 참조

99) 심사지침 V. 6. (3) 참조

100)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참조

101) 심사지침 V. 6. (4) (나) 참조

1) 거래상지위 인정 여부

가) 삼성전자의 피심인들에 대한 높은 거래의존도

(1) 스마트기기 및 그 부품의 특성과 피심인들의 스마트기기용 부품시장에서의 지위

236 부품의 첨단성이 완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스마트기기의 특성상 스마트기기 제조사로서는 뛰어난 성능의 부품을 공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조적으로 기술을 선도하는 부품 제조사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¹⁰²⁾

237 피심인들은 스마트기기용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에 대한 선도적 기술을 지닌 사업자로, 해당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238 피심인들은 2018년 중대역과 고대역 주파수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OMH PAMiD 부품을 최초로 출시하며 관련 기술을 선도하였다. 그 밖에도 고도의 집적화, 소형화를 실현한 다대역 필터 제품(multiband filter products; multiplexers)을 최초로 출시하였고, Connectivity 부문에서도 Wi-Fi와 BT를 하나로 통합시킨 콤보 부품을 최초로 개발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RFFE 분야 약 [REDACTED] 개, Connectivity 분야 약 [REDACTED]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39 아울러, 피심인들은 위 1. 마. 3)항에서 살펴보았듯, 2021년 1분기 기준 RFFE 중 중·고대역 PAMiD 부품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49.8%로 확고한 1위 사업자이며, OMH PAMiD 부품시장으로 좁혀 볼 경우 시장점유율은 50%를 초과한다.

102) 이와 같은 스마트기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과 삼성전자의 거래상지위의 판단에 있어 단순히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등 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양자 간 사업능력의 격차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례 또한 롯데하이마트의 삼성전자 및 엘지전자에 대한 거래상지위의 판단과 관련하여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소매 유통업을 영위하는 원고와는 다른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능력의 격차를 그 매출액의 규모 등으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1누33090 판결)

또한 Connectivity 중 Wi-Fi/BT 콤보 부품시장에서 86.6%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립형 GNSS 부품시장에서도 34.3%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1위 사업자이다.¹⁰³⁾

240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동 시장에서 사실상 지배적 지위와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프리미엄 스마트기기 시장에서 애플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 있던 삼성전자가 피심인들에게 구조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하며, 대체거래선을 확보하는데 매우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삼성전자의 이 사건 부품 구매 비중

241 실제로 삼성전자는 2001년 이래로 20년 이상 피심인들로부터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을 구매하였으며, 위 1. 마. 5)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MH PAMiD 부품, Wi-Fi/BT 콤보 부품 및 GNSS 부품 공급의 대부분을 피심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¹⁰⁴⁾ 구체적으로 2017년 이후 삼성전자의 RFFE 및 Connectivity 부품 구매액 중 피심인들 부품 구매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최소 ■%에서 최대 ■%로 평균 약 ■% 수준에 이른다.

103) 피심인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인 퀄컴, 무라타도 해당 부품 시장에서 피심인들이 매우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있으며(출처: 소갑 제37호증, 제38호증), 매출액 기준 세계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TWS 이어폰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애플도 피심인들을 최첨단의 복잡한 RFFE 부품에 있어 가장 강력한 공급업체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으며, 품질 및 기술력을 고려하여 Wi-Fi, BT, GNSS 부품의 경우 피심인들로부터만 독점적으로 부품을 공급받고 있다.(출처: 소갑 제36호증)

104) 삼성전자는 Wi-Fi/BT 콤보 부품의 경우 2009년 갤럭시 S 및 2011년 갤럭시 노트 제품부터 갤럭시 S21 및 갤럭시 노트20에 이르기까지 모든 갤럭시 S 및 노트 제품군에 피심인들의 Wi-Fi/BT 콤보 부품을 사용해 왔다. OMH PAMiD 부품 또한 2018년 피심인들이 OMH PAMiD 부품을 처음 출시한 이래로 갤럭시 S10 및 S20 미주향 모델을 제외하고는 OMH PAMiD 부품이 탑재되는 모든 프리미엄 스마트기기에 피심인들의 OMH PAMiD 부품을 사용하였다. GNSS 부품 역시 독립형 GNSS 부품이 탑재되는 모든 프리미엄 스마트기기 제품에 피심인들의 GNSS 부품을 사용해 왔다 (출처: 소갑 제3호증).

<표 112> 삼성전자의 이 사건 부품 관련 피심인들 구매 비중(금액 기준)^{주)}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RFFE					
Wi-Fi/BT					
독립형 GNSS					
독립형 BT					
계					

주) 직납 및 비직납 부품 구매 금액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 출처: 소갑 제6호증

<표 113> 삼성전자의 이 사건 부품 관련 피심인들 구매 비중(수량 기준)^{주)}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RFFE					
Wi-Fi/BT					
독립형 GNSS					
독립형 BT					
계					

주) 직납 및 비직납 부품 구매 금액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 출처: 소갑 제6호증

242 이러한 삼성전자의 피심인들에 대한 매우 높은 거래의존도와 장기간 거래관계를 고려할 때, 삼성전자로서는 피심인들과 안정적으로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단기적 대체가 불가능한 스마트기기 탑재 부품의 특성으로 인한 고착화

243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특정 스마트기기를 출시·생산하기 위해 부품제조사로 부터 특정한 부품을 공급받기로 결정한 이후에 해당 부품을 다른 제조사의 부품으로 변경하기란 매우 어렵다.

244 스마트기기 제조사는 스마트기기 개발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다. 특히 스마트기기에 탑재할 부품을 채택한 이후에는 해당 부품의 성능, 규격, 다른 부품과의 호환성 등을 고려해 스마트기기를 설계하며, 이에 대해 장기간의 기술적 검증 및 전 세계 통신사업자 및 통신 당국으로부터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 삼성전자의 경우

통상 스마트기기 출시 약 8개월 전, 생산 시작 약 6개월 전에 해당 스마트기기에 사용할 부품을 결정하고 있다.¹⁰⁵⁾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2021년 2월 출시된 갤럭시 S21의 부품제조사를 2020년 6월에 선정하였다.

245 일단 특정 모델의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부품이 결정되면, 스마트기기 출시를 6개월에서 8개월 앞두고 특정 부품을 다른 부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품에 따라 대체 가능한 다른 제조사 부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체 가능한 부품이 있는 경우에도 기술검증, 규격인증(FCC 인증¹⁰⁶⁾ 등) 및 사업자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¹⁰⁷⁾

246 특히, 삼성전자가 피싱인들로부터 공급받는 부품인 OMH PAMiD, Wi-Fi/BT 콤보, GNSS 등은 부품 제조사별로 세부 사양 등이 달라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을 가진 부품으로의 교체가 쉽지 않다. 더욱이 부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재설계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여야 하며, 전 세계의 통신 사업자 및 당국으로부터 스마트기기에 대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¹⁰⁸⁾

247 가사 부품 대체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장에 판매되는 동일 스마트기기 모델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부품을 사용할 경우 동일 스마트기기 사이에서 품질 차이가 발생하여 소비자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105) 부품별로 차이가 있으나, RFFE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통상 스마트기기 제품 출시일로부터 약 ■개월 전에 부품 제조사들에게 제품요건문서(Product Requirement Document, PRD)를 송부하고, 출시일로부터 약 ■개월 전까지 샘플을 받아 이를 평가한다. 이후 샘플에 대한 평가를 거쳐 스마트기기 출시일로부터 약 ■개월 전에 부품을 선정하고, 스마트기기의 상품기획 확정 승인(Development Investment Approval, DIA), 개발구현 승인(Product Implementation Approval, PIA), 개발검증 승인(Production Validation Review, PVR)을 순차적으로 거친 뒤 스마트기기 출시일 약 ■개월 전에 생산을 시작하게 된다.(출처: 소갑 제3호증)

106)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의해 미국 연방통신법에 의거, 무선통신장비를 포함한 전파발생장치에 대해 불필요한 전파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시험·인증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107) 다른 스마트기기 제조사인 엘지전자에 따르면 스마트폰 출시 후 6개월 간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약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출처: 소갑 제35호증) 이에 따르면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나 출시 직후 부품을 대체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스마트폰 매출을 포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108) 삼성전자가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을 다시 거치는 것은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비견된다고 한다.(출처: 소갑 제6호증)

에 따라 삼성전자와 같은 스마트기기 제조사는 제품 일관성 측면에서 특정 스마트 기기에 대해 처음 결정한 부품 조합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매우 선호한다.

248 따라서 삼성전자가 특정 스마트기기 모델에 피심인들의 부품을 사용하기로 일단 결정하면,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기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모델에 대해서는 계속 피심인들의 부품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삼성전자가 이 사건 LT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¹⁰⁹⁾¹¹⁰⁾

249 결국, 삼성전자가 피심인들의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을 스마트기기에 채택하는 과정에서 특정적 투자를 진행한 점, 이로 인해 해당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스마트기기 생산이 중단될 위험에 처하는 점에서 삼성전자는 피심인들에게 고착(lock-in)된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된다.

250 더욱이, 삼성전자가 피심인들로부터 20년 이상의 상당히 긴 기간 동안, 2017년 이후 평균 89.6% 수준의 매우 높은 거래의존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고착화 현상은 더욱 구조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51 참고로 휴대폰에 탑재되는 부품으로서 이 사건 관련 부품과 기능은 다르나 유사한 특성을 가진 모뎀칩셋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휴대폰 제조사는 신제품 출시에 앞서 모뎀칩셋의 성능, 다른 부품과의 호환성 등에 관하여 기술적 검증 및 고객승인 절차를 거쳐 해당 휴대폰에 사용할 모뎀칩셋을 결정하고 휴대폰을 개발·출시하므로 특정 모델의 휴대폰에 사용될 모뎀칩셋을 결정하면 이를 다른 모뎀칩셋으로 대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처럼 휴대폰 제조사가 원고들로부터 제때 모뎀칩셋을 공급받지 못하면 당초 예정한 출시 일정에 맞춰 다른 모뎀칩셋으로 대

109) 삼성전자는 LTA 협상 중인 2020년 2월경 기준 피심인들 부품을 사용하기로 결정되어 있던 스마트 기기인 갤럭시 S20(2020년 2월경 출시), 노트20(2020년 8월경 출시), 버즈플러스(2020년 2월경 출시), 버즈라이브(2020년 8월경 출시) 등 다수 주력 제품군을 출시하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었다.

110) 다른 스마트기기 제조사들도 삼성전자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애플과 엘지전자는 특정 스마트기기에 특정 부품을 채택하여 생산 중인 경우 다른 부품제조사로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다른 부품제조사로 변경할 가능성은 낮으며, 다른 부품과의 호환성 등의 검증이 필요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출처: 소갑 제11호증, 제36호증)

체하기 어려워지므로, 신제품 출시 등 중요한 휴대폰 사업이 중단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¹¹¹⁾

다) 거래중단 시 손실의 차이

²⁵² 삼성전자와 피심인들과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위에서 살펴본 단기적 대체가 불가능한 스마트기기 탑재 부품의 특성으로 인해 피심인들 부품이 채택된 스마트기기의 생산이 중단되어 해당 스마트기기 전체에 대한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의 약 90%를 피심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중단 시 삼성전자는 대다수 스마트기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손실을 입을 것으로 판단된다.¹¹²⁾

²⁵³ 반면, 피심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 비교적 낮은 거래의존도를 가지고 있어 삼성전자와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 발생할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매출액 비중은 아래 <표 114> 및 <표 115>와 같이 약 ■% 수준인 것으로 보이며, 지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이다.

<표 114> 피심인들 RFFE 및 Connectivity 부품 매출액 중 삼성전자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회계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매출액				
삼성전자 대상 매출액				
비중				

* 출처: 소갑 제5호증

111) 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7누48 판결 참조

112) 더욱이, 피심인들 부품이 탑재된 삼성전자의 스마트기기는 애플 등과의 경쟁을 위한 최첨단의 프리미엄 스마트기기(갤럭시 S, 노트 시리즈, 폴더블 시리즈 등)에 해당하므로 매출 손실 외 브랜드 경쟁력 등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표 115> 피심인들의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의 [redacted] 및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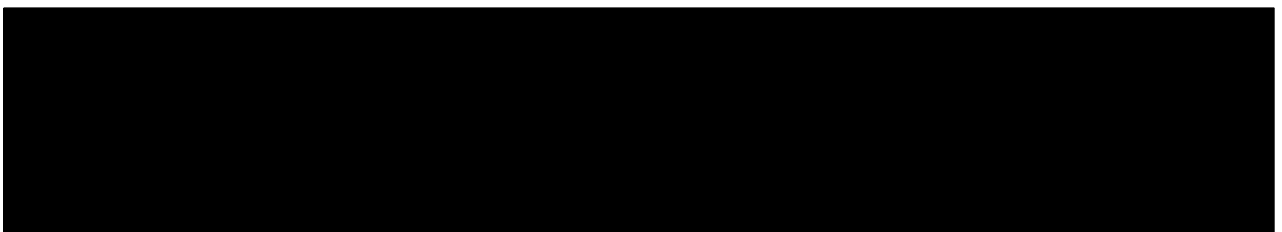
구분	2019년		2020년	
	RFFE	Connectivity	RFFE	Connectivity
[redacted]	[redacted]			
삼성전자	[redacted]			

* 출처: 피심인 의견서 소을 제13호증

254 실제로 삼성전자는 LTA 협상 과정에서 위 <표 72>와 같이 기존 추진하려던 부품 거래선 다원화 전략을 추진할 경우 스마트기기 생산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크며, 그에 따라 LTA 체결이 불가피함을 인지하여 결국 LTA를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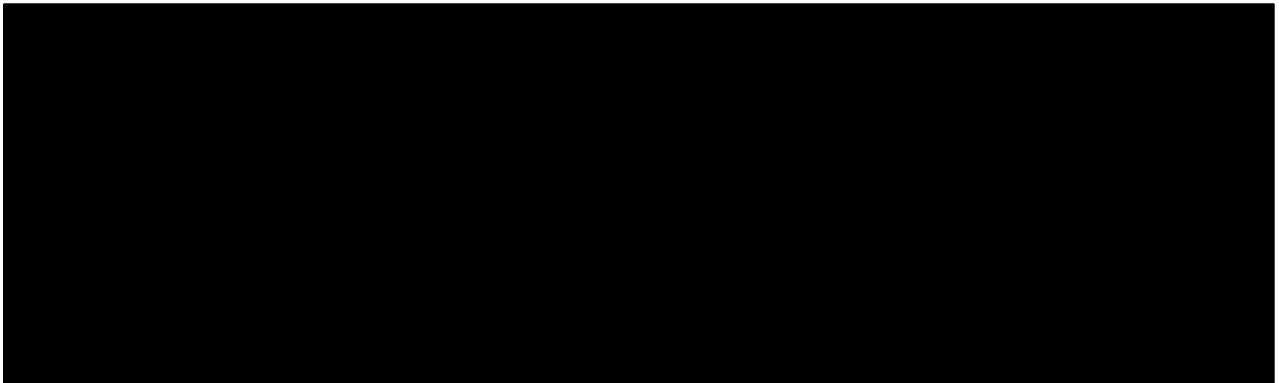
255 반면, 피심인들은 삼성전자와 거래가 중단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삼성전자의 LTA 체결을 압박하였다. 위 2. 가.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중단 등의 거래중단을 수단으로 삼성전자의 LTA 체결을 지속 압박한 점, 아래 <표 116>과 같이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redacted]이 구매주문승인을 중단할 경우 삼성전자에게 이에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관계 단절(burning the bridge)의 위험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함에도 결국 구매주문승인 중단을 강행한 점, 아래 <표 117>과 같이 피심인들의 임직원인 [redacted]과 전 [redacted]도 LTA 협상 과정에서 현재가 되었든 3년 후가 되었든 피심인들과 삼성전자 간 거래단절은 기정사실(divorce is a foregone conclusion)이라고 예측하면서 그 시점이 3년 후가 되도록(let us make it 3 years later), 즉 장래에 삼성전자와 거래가 단절되더라도 LTA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하자고 언급한 점 등을 통해 피심인들이 삼성전자와의 거래중단을 감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6>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redacted]이 브로드컴 본사의 [redacted]에게 보낸 전자메일(2020. 2. 13., [redacted]) 발췌



* 출처: 소갑 제23호증

<표 117>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 과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 간
카카오톡 대화(2020. 3. 3.) 발췌



* 출처: 소갑 제15호증

256 결국, 위와 같은 거래중단 시 손실에서의 차이로 인해 피심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 강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이러한 협상력을 이용하여 삼성전자의 스마트기기용 부품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257 특정 스마트기기에 사용될 RFFE 또는 Connectivity 부품을 결정하면 이를 다른 부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스마트기기 탑재 부품의 특성, 부품의 첨단성이 완제품의 수준을 결정하는 스마트기기의 특성, 시장에서 선도적 기술력과 높은 점유율을 지니고 있는 시장에서의 피심인들의 지위, 삼성전자의 피심인들에 대한 부품 거래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2) 부당한 불이익 제공 여부

가) 불이익 제공 여부

(1) LTA로 인한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 제한

258 삼성전자는 피심인들에 의해 강제된 LTA의 내용인 연간 ■■■ 달러의 최소 구매금액 의무와 이에 대한 차액배상 의무로 인해 스마트기기에 탑재할 부품 선택권을 제한당하는 불이익을 입었다.¹¹³⁾

259 앞 <표 72> 2020. 3. 6. 삼성전자 보고자료에 나타난 내용과 같이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갤럭시 S 및 노트 시리즈)에 탑재되는 Connectivity 중 WiFi/BT 콤보의 비중을 2020년 ■%에서 2021년 ■%로, RFFE에 해당하는 OMH PAMiD 부품의 비중을 ■%에서 2021년 ■%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260 그러나 피심인들이 최소구매금액 ■■■ 달러의 구매의무를 부과하는 LTA 체결을 강제함으로써 인해 삼성전자는 부품 거래선 다원화 전략을 포기하고, 피심인들의 부품에 이전보다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위 <표 29>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금액 기준 피심인들에 대한 부품 구매 비중은 OMH PAMiD 부품의 경우 2020년 ■%에서 2021년 10월 기준 ■%로 급증하였으며,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WiFi/BT 콤보 부품의 경우 2020년 ■%, 2021년 10월 기준 ■%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261 이처럼 삼성전자가 피심인들의 경쟁사의 부품을 선택하지 못하고 피심인들의 부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가 명확히 특정되는 부품은 갤럭시 S21 구주향의 OMH PAMiD 부품과 갤럭시 S21FE 및 S22의 OMH PAMiD 및 WiFi/BT 콤보 부품이다. 위 2. 가. 7) 나) (1) 및 (2)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삼성전자는 LTA상 최소구매금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위 부품들을 경쟁사인 ■■■, ■■■의 부품에서 피심인들의 부품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갤럭시 S21FE 및 S22의 부품에 대해 다음 연도에 필요한 수량을 선구매하였다.¹¹⁴⁾

262 이러한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아래 (2)항에서 살펴볼 금전적 불이익과 더불어

113) 해당 불이익은 삼성전자가 부품의 품질, 가격이나 내부 전략 등을 근거로 부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비금전적 불이익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부품 선택권 제한에 따라 일부 부품에서의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다음 (2)항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114) 특히 갤럭시 S21FE 및 S22 채택 부품의 전환은 이하 나) (2)항에서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에 대해 살펴볼 바와 같이, LTA가 삼성전자에게 시장 상황의 변화와 무관히 3년간 ■■■ 달러의 최소구매금액 의무를 부과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는 점과 결부되어 부품선택권이 제한된 결과이다.

2022년도에 필요한 갤럭시 S21FE 및 S22에 탑재될 부품을 2021년도에 미리 구매함으로써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재고관리 비용 및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운용의 기회비용이라는 불이익¹¹⁵⁾도 입었다고 판단된다.

(2) 금전적 불이익의 발생¹¹⁶⁾

263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삼성전자는 LTA 최소구매금액 의무 이행을 위해 갤럭시 S21 구주향의 OMH PAMiD 부품과 갤럭시 S21FE 및 S22의 OMH PAMiD 및 WiFi/BT 콤보 부품을 피심인들의 경쟁사 부품에서 피심인들 부품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되어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264 삼성전자가 이와 같이 계획을 변경하여 구매한 피심인들 부품 가격은 아래 <표 118>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가 당초 구매하려던 피심인들의 경쟁사 부품 가격보다 높았으며, 삼성전자는 구매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부품 구매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기에 부품의 가격 차이만큼 자신의 스마트기기 판매이익이 감소하였다.¹¹⁷⁾

265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갤럭시 S21, S21FE, S22에 채택된 피심인들 부품 가격과 당초 채택하려던 경쟁사 부품 가격 차액에 피심인들 부품 구매 물량을 곱해 산출한 금전적 불이익은 아래의 <표 118> 기재와 같이 약 1.6억 달러에 달한다.

115) 해당 비용은 금전적 불이익에 해당하나, 그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 계산은 하지 않기로 한다.

116) 이하에서 기술한 금전적 불이익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행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및 심사지침 V. 6. 라.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금전상 손해인 경우 손해액을 명확하게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다. ‘가) 불이익 제공 여부’에서 알 수 있듯 삼성전자는 이 사건 LTA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해 금전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사업중단 위기, 부품 공급업체 선택권 제한 등 매우 큰 비금전적 불이익까지 입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은 본 항목에서 계산한 금전적 불이익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117) 삼성전자가 채택하려던 피심인들의 경쟁사 부품은 삼성전자가 KPI 등의 내부 판단기준을 통해 탑재 대상 스마트기기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 산정에 있어 부품 간 품질 차이는 고려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 118>

이 사건 LTA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불이익

(단위: 달러(가격), 백만 개(구매물량), 백만 달러(금전적 불이익))

비고		갤럭시 S21	갤럭시 S21FE	갤럭시 S22
OMH PAMiD (구주)	피심인들 부품가격			
	대체 부품가격			
	가격 차이			
	구매물량			
	금전적 불이익			
OMH PAMiD (미주)	피심인들 부품가격			
	대체 부품가격			
	가격 차이			
	구매물량			
	금전적 불이익			
WiFi/BT 콤보	피심인들 부품가격			
	대체 부품가격			
	가격 차이			
	구매물량			
	금전적 불이익			
금전적 불이익 계		160.72		

주1」 불이익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피심인들의 OMH PAMiD 부품 가격과 WiFi/BT 콤보 부품 가격이 2021년 12월과 11월에 각각 ■%, ■% 상승하여 발생한 구매비용 상승분을 반영 하였으나 경쟁사 부품가격은 구매전환 결정이 있던 당시에 파악한 가격을 사용하였다. 한편, 피심인들의 부품가격 상승분을 감안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불이익을 산출하더라도 그 규모는 1.4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 삼성전자가 막대한 금전적인 불이익을 입었다는 결론에는 변화가 없다.

주2」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는 부품 공급업체를 교체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의 금전적 불이익은 장래 갤럭시 S21, 갤럭시 S21FE, 갤럭시 S22의 판매량이 누적 될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¹¹⁸⁾

* 출처: 소갑 제6호증

(3) 공급중단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생산중단 위험 발생

266 피심인들은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등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의 사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부품 공급중단을 통해 LTA 체결을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스마트기기 생산이 중단될 위험에 노출되는 불이익도 입었다.¹¹⁹⁾

118) 참고로 삼성전자는 이 사건 심의에서 심의일인 2023. 9. 13. 기준 해당 부품들의 구매전환에 따라 발생한 금전적 불이익의 액수가 2억 8,754만 달러에 이른다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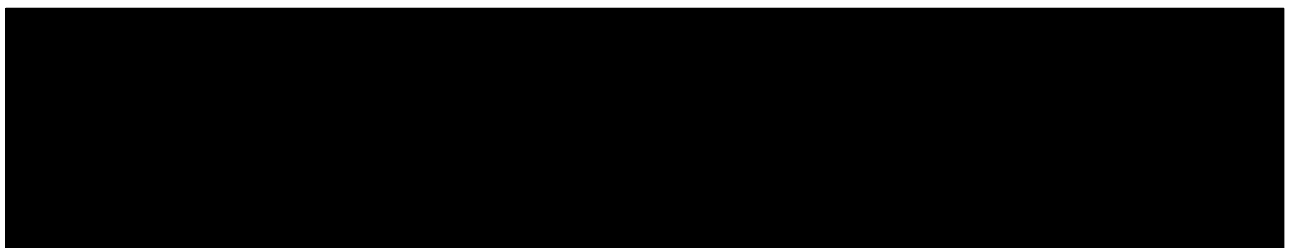
119) 스마트기기 생산 중단 위기라는 불이익 외에도 삼성전자는 기술지원 중단으로 인해 이미 출시된 갤럭시 버즈 플러스 제품에 탑재된 독립형 BT 부품의 오류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을 해

267 첫째, 피심인들의 구매주문승인 중단으로 인해 삼성전자는 스마트기기 생산 차질이 발생하였다.

268 앞서 1. 마. 4) (3)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삼성전자가 구매주문을 하면 피심인들은 이에 대한 회신인 RTP를 제공하는데, RTP에는 부품의 정보, 삼성전자의 선적 요청 일자, 실제 선적 예정 일자, 수량, 가격, 도착지 등 부품공급에 대한 주요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심인들로부터 RTP를 회신받지 못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생산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269 더욱이, 피심인들도 구매주문승인 중단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스마트기기 생산에 차질을 빚는 곤란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이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심인들과 LTA를 체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피심인들로부터 RTP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현 상황을 ‘진퇴양난(Catch 22 situation¹²⁰)’이라고 표현한 점, 전[]이 삼성전자에게 갤럭시 노트20과 새로운 갤럭시 버즈 시리즈를 출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19>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과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 간 카카오톡 대화(2020. 2. 18.) 발췌



* 출처: 소갑 제15호증

결하지 못해 품질 관련 신뢰 저하와 평판이 훼손되었으며, 신규 GNSS 부품([])의 탑재를 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하고 있다.(출처: 소갑 제6호증, 제9호증)

120) 조세프 헬러의 1951년작 소설인 <Catch-22>에서 유래된 표현이다. 소설 내용에 따르면 공군 폭격기 조종사인 요사리언 대위는 자신의 정신이상을 이유로 군의관에게 열외를 요청하나 군의관은 정신 이상자는 열외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한다. 영어권에서 이처럼 모순된 규칙이나 제약 때문에 개인이 벗어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 즉 진퇴양난 또는 딜레마의 상황을 설명할 때 소설 제목을 따서 “Catch 22”라고 표현한다.

270 둘째, 피심인들의 선적 중단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스마트기기 생산이 실제 한 달 이내로 중단될 위기에 처하였다.

271 피심인들의 약 3주간의 선적 중단으로 인해 통상 2주에서 4주 분량의 재고를 보유하던 삼성전자의 부품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었으며, 삼성전자는 아래 <표 120>, <표 12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4월 초부터 실제로 부품 재고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될 위험에 직면하였다.

<표 120>

삼성전자 제출자료(Broadcom 과부족 현황) 발취

<input type="checkbox"/> Broadcom 과부족 현황(W12)	2020.3.18.(K)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Broadcom 과부족 현황(W13)	2020.3.25.(K)
<비공개>	

* 출처: 소갑 제9호증

<표 121>

삼성전자 보고자료(B社 현안 보고, 2020. 3. 24.) 발취

4. 협상 미타결時 자재 부족 전망
<input type="checkbox"/> 선적 중단 지속時 보유 재고 기준, 4月初부터 생산차질 발생
- 4월 2주차 : Z Flip用 OMH, 버즈+用 BT 等
3주차 : S20用 OMH 等
4주차 : S10 / N10用 OMH 等

* 출처: 소갑 제9호증

나) 부당성 여부

(1) 계약 수단의 불공정성

272 피심인들은 삼성전자가 LTA 체결을 지속 거부하였음에도 구매주문승인, 선적, 기술지원, 생산 등 부품 공급 중단이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의 LTA 체결을 강제하였다.

273 피심인들이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LTA 체결을 압박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서 2. 라. 2) 가) (3)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생산 중단의 위험에 직면하여 피심인들의 LTA 체결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4 삼성전자는 앞서 2. 가. 4) 가) (2)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당초 LTA를 체결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러한 의사를 피심인들에게도 전달하였다. 그러나 2020. 2. 14. 이루어진 구매주문승인 중단 이후 결국 생산 차질 발생을 우려하여 Connectivity 부품에 대한 LTA 체결에 동의하게 되었다.

275 삼성전자도 아래의 <표 122>와 같이 당초에는 피심인들과 LTA를 체결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피심인들의 구매주문승인 중단에 따른 생산차질을 우려하여 2020. 2. 27. LTA 체결에 동의¹²¹⁾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121) 다만, 당시 삼성전자가 동의한 LTA의 내용은 피심인들이 원하는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의 100% 피심인들 부품을 채택하는 것이 아닌 Connectivity에 한정된 내용에 해당한다.

5-1. 브로드컴이 귀사 무선사업부에 LTA를 제안하던 시점에서 Connectivity에 대한 LTA를 체결할 의사가 있었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하고, 그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기 바랍니다.

아니오.

당시 참고인은 공급 다원화를 통한 공급 안정성 도모를 위해, Broadcom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가격·기술 경쟁력을 갖춘 타사 부품도 채택하는 공급 이원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참고인은 Broadcom으로부터 Connectivity 부품을 PO에 기반하여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의 연간 구매 예상액을 초과하는 구매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Broadcom이 참고인의 구매의무에 상응하는 부품가격 인하 등의 대가를 제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 입장에서는 LTA를 체결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5-2. 5-1에서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답변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 무선사업부가 2020.2.27.경 브로드컴과의 Connectivity LTA에 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 4번 항목에서 제출한 답변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7.30.자 답변 2-3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Broadcom의 PO승인 중단에 따라 당사 제품의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참고인은 브로드컴과 LTA 체결 대신 GN20에 OMH/WiFi를 100% 사용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해결하려 했으나, 브로드컴은 LTA를 체결하여야 PO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참고인은 Connectivity를 포함한 LTA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출처: 소갑 제6호증

276 이후 피심인들은 Connectivity 뿐만 아니라 RFFE도 모두 피심인들 부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면서 2020. 3. 5. 선적을 중단하였는데, 선적 중단이 이루어진 다음 날인 2020. 3. 6. 삼성전자는 <표 72>와 같이 생산차질로 인해 3년의 협력 유지, 즉 피심인들이 원하는 LTA 체결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의사를 피심인들에게 전달하였다.

277 선적 중단 1주일 뒤인 2020. 3. 13. 삼성전자는 피심인들의 Connectivity 부품뿐 아니라 RFFE 부품 독점구매 제안까지도 수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심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선적과 구매주문승인을 중단한 상황에서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78 삼성전자는 아래 <표 123>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선적과 구매주문승인 중단으로 인한 공급차질의 심각한 상황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피심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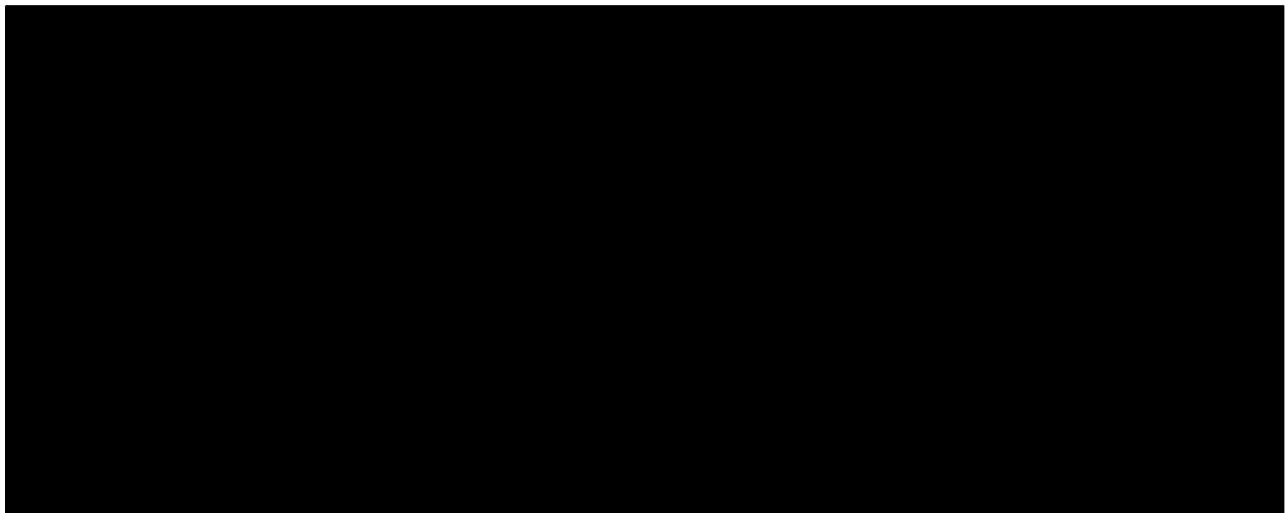
Broadcom은 2020. 3. 10. 참고인에게 모든 플래그십 스마트폰 물량의 Connectivity와 RFFE 부품에 대하여, 연간 최소구매액을 ■■■ 달러로 하는 약정 혹은 100% 독점 구매 확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참고인은 2020. 3. 11.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Broadcom이 참고인의 2020. 3. 9.자 제안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은 Broadcom의 계속되는 선적 중단과 PO 미이행으로 인한 공급차질의 심각한 상황을 우려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참고인은 2020. 3. 13. 화상회의에서, 어쩔 수 없이 Broadcom에게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Connectivity 및 RFFE에 대하여 100% 독점 구매 확약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Broadcom은 Term Sheet에 상세한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출처: 소갑 제9호증

279 이후 피심인들은 부품 공급 중단을 지속하면서 플래그십 및 폴더블 스마트폰에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을 100% 채택하거나 연간 ■■■ 달러의 최소구매금액을 충족할 것을 삼성전자에게 요구하였으며, 결국 피심인들과 삼성전자는 연간 ■■■ 달러를 최소의무구매 금액으로 하는 LTA를 체결하게 되었다.

280 이와 같은 협상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었다는 점은 아래의 <표 124>와 같이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이 2020. 3. 13. LTA에 규정할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 보낸 전자메일과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송■■■이 ‘가진 카드가 없는 입장에서 판을 깨지 말자’라고 내부 관계자들에게 보낸 전자메일의 내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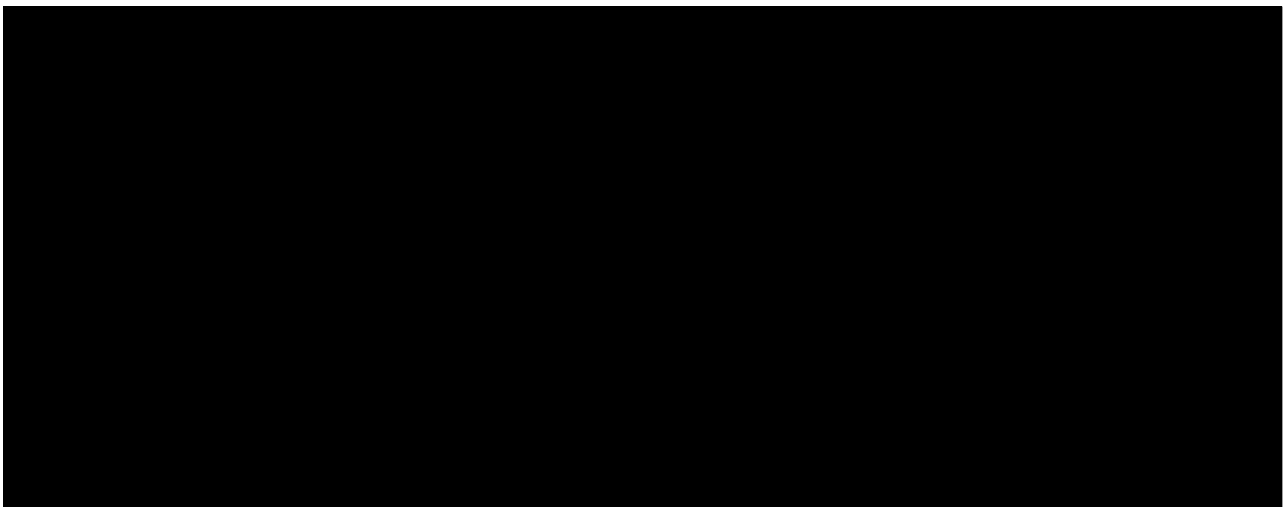


* 출처: 소갑 제9호증

28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연간 [REDACTED] 달러의 최소구매금액 의무를 포함한 이 사건 LTA는 피심인들의 부품 공급중단을 수단으로 한 압박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강제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282 피심인들도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주는 행위임과 동시에 기업윤리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구매주문승인 중단에 대해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REDACTED]이 <표 116>과 같이 ‘폭탄 투하(bomb drop)’에 비유하며 관계 단절(burning the bridge)의 위험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 점,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REDACTED]도 아래 <표 125>와 같이 구매주문승인에 대해 ‘핵폭탄(the nuclear option)’에 비유하며 이를 만류한 점,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REDACTED]이 구매주문승인 중단 결정에 대해 아래 <표 126>과 같이 실망스럽다고 표현하면서, <표 127>과 같이 기업윤리에 반한다는 의견(Our approach to the recent negotiations with Samsung seems to have gone beyond business ethics)을 표한 점, 브로드컴 코리아의 함 [REDACTED]도 이러한 행위가 <표 128>과 같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던 점을 통해 피심인들의 이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5>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REDACTED]가 브로드컴 본사의 [REDACTED] 등에게 보낸 전자메일([REDACTED])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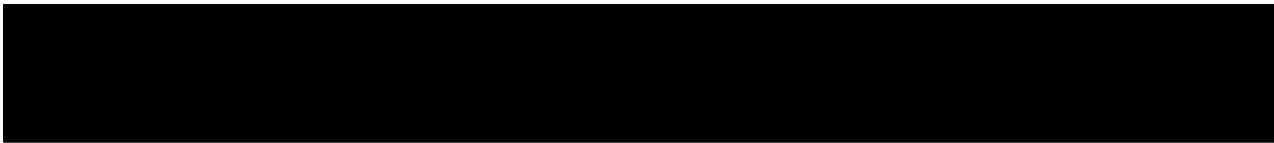
* 출처: 소갑 제23호증

<표 126>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 과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의 [] 간 카카오톡 대화(2020. 2. 27.)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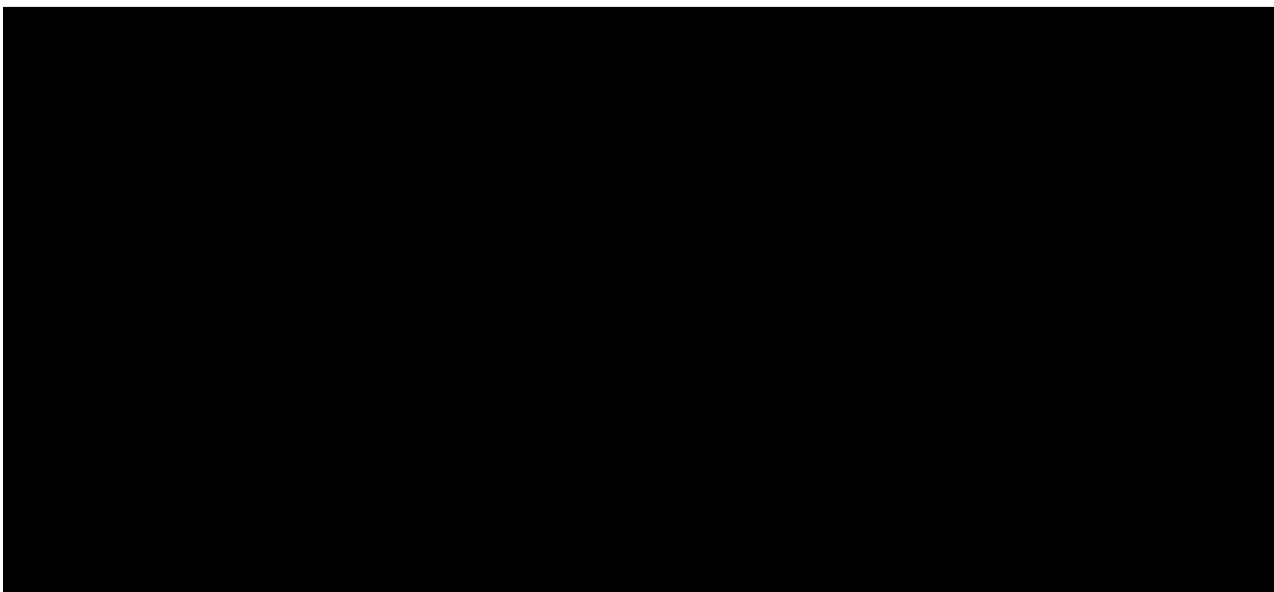
* 출처: 소갑 제15호증

<표 127> 브로드컴 코리아 전 [] 이 자신에게 보낸 메일([]) 발췌



* 출처: 소갑 제39호증

<표 128>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 과 브로드컴 코리아의 합 [] 간 카카오톡 대화 (2020. 3. 3.) 발췌



* 출처: 소갑 제18호증

283 주요 스마트기기 제조사나 부품제조사들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부품제조사가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사유는 상대방이 이전 구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어 고객 보호를 위해 공급중단이 필요한 경우, 제품수명 종료 시점(Product End of Life, EOL)인 경우,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전세계적 반도체 공급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정된다.¹²²⁾ 이는 피심인들이 미래의 매출 보전을 위한 LTA 체결을 강요하기 위

해 구매주문승인·선적 등을 중단한 것과는 그 사유가 전혀 다르다.

284 종래 피심인들과 삼성전자 간의 거래에서도 양 사가 거래를 개시한 2001년 경 이래로 이 사건 공급중단 전까지 구매주문 승인이나 선적을 중단한 적이 없었다.

285 결국, 이 사건 공급중단 행위는 삼성전자에 대해 LTA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점, 해당 행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인식,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불공정하다고 판단된다.

(2)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

(가) 삼성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계약 내용

286 삼성전자와 피심인들 간의 LTA는 그 내용 측면에서 삼성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287 첫째, LTA는 3년간 연간 ■■■ 달러의 최소 구매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가 생기더라도 삼성전자는 이미 결정된 피심인들과의 장래 3년간 거래규모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288 둘째, ■■■ 달러라는 금액의 수준은 삼성전자가 당초 구매하려고 했던 피심인들의 부품 수요를 초과한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아래 <표 129>와 같이 2020. 3. 6. 2020년 피심인들 부품의 예상 구매금액을 내부적으로 보고하였는데, 그 금액은 ■■■ 달러이다. 앞서 2. 라. 2)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피심인들에 대한 부품 의존도를 줄이고 거래선을 다원화하고자 하였는바, 삼성전자의 당초 2021년 피심인들 부품 수요는 ■■■ 달러보다 적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¹²³⁾

122) 출처: 소갑 제42호증, 제46호증, 제47호증

123) 2020. 3. 23. 삼성전자 자료에 따르면 당초 삼성전자의 부품 거래선 다원화 전략에 따라 피심인들 부품 비중을 RFFE ■%, Connectivity ■%로 축소하였을 때 예상되는 피심인들 부품 구매금액은 ■■■ 달러이다.(출처: 소갑 제9호증)

別添2	당사-B社 거래 現況
□ 거래액 : '18년 ■■■\$ → '19년 ■■■\$ → '20년 ■■■\$	

* 출처: 소갑 제9호증

289 셋째, 삼성전자가 피심인들 부품의 독점적 채택 또는 최소구매금액 의무를 규정하는 것, 그리고 최소구매금액의 수준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항은 삼성전자에게 불리하다.

290 넷째, LTA에는 수량할인 등 가격적 측면에서의 혜택이나 반대급부에 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전혀 없다. LTA의 내용상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삼성전자와 유사한 규모로 거래하는 업체와 동등·유사한 거래조건을 보장하는 최혜 고객 우대 조항(Most Favored Customer, MFC)과 지적 재산권(IP) 협력에 관한 조항 두 가지이다. 그러나 최혜 고객 우대 조항은 피심인들의 거래상대방 중 삼성전자와 유사한 규모로 구매하는 업체가 없는 점, 실제 거래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과 동등·유사한 거래조건을 적용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관련 동의의결 심의에서도 피심인들이 삼성전자를 ■■■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선언적 의미의 조항에 불과하며, 지적 재산권 협력 조항도 마찬가지로 향후 ‘양사가 성실하게 협의(negotiate in good faith)’하자는 선언적 의미의 조항에 불과하다.

291 또한, 삼성전자에게는 연간 ■■■ 달러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강력하게 구속하고 있음에 비해, 피심인들에게는 단지 삼성전자의 구매주문에 ■■■영업일 이내에 응답할 의무와 삼성전자에게 일관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브로드컴의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수단을 정하고 있지 않다.

292 결국 이 사건 LTA는 삼성전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인 장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부품을 별다른 혜택 없이 대량 구매하는 의무만을 부과하는 일방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양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통상의 공급계약이나 장기계약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 내용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판단

293 스마트기기 제조사와 부품제조사 간에 사전에 구매수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약정을 체결하기 보다는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구매주문(PO) 등을 통해 구체적인 수량 및 구매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평가된다.

294 스마트기기와 같은 최신 추세에 민감한 소비재의 경우 시장 수요의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수요와 직결되어 있는 부품 구매량을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사전에 미리, 그것도 수년치 구매량을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95 다만 거래의 규모, 부품제조사가 특정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투입하는 자원, 부품제조사가 잠재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다른 스마트기기 제조사와의 공급계약 관련 기회비용, 부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기기 제조사와 부품제조사 간 의사표시의 합치를 통해 일정 기간의 구매 수량을 미리 약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296 그러나 이처럼 구매수량을 약정하는 경우에도 시장 수요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매수량에 대하여 낮은 정도의 구속력만을 부여하거나, 거래물량 보장을 통해 시장 수요 변동 위험을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상응하는 부가적인 혜택이나 대규모 거래에 따른 수량할인(volume discount) 등을 함께 약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② 현실의 거래관행과의 비교

297 피심인들이 삼성전자 또는 다른 스마트기기 제조사와 체결한 장기 부품 공급계약이나 다른 부품제조사가 삼성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본 건에서 문제된 LTA와는 달리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연간 최소 구매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구매금액 미달 시 차액을 배상하는 등 강한 구속력을 부여한 계약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298 피심인들과 삼성전자가 [REDACTED] 체결한 장기공급계약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문구를 기재하였을 뿐, 삼성전자의 구매의무나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았다.¹²⁴⁾

299 피심인들과 삼성전자가 [REDACTED] 체결한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을 규정하였을 뿐이지, 삼성전자의 구매의무나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REDACTED]
[REDACTED]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¹²⁵⁾

300 피심인들과 [REDACTED]이 2020. 1월경 체결한 [REDACTED]
[REDACTED]계약¹²⁶⁾을 살펴보더라도, 애플이 일정 수량의 구매를 보장하거나

124) 출처: 소갑 제13호증

125) 출처: 소갑 제13호증

구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양사 간 [redacted] 을 보면 [redacted]
[redacted]
[redacted]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¹²⁷⁾

<표 130> 피심인들과 [redacted] 간 [redacted] 계약 발취

[redacted]

* 출처: 소갑 제48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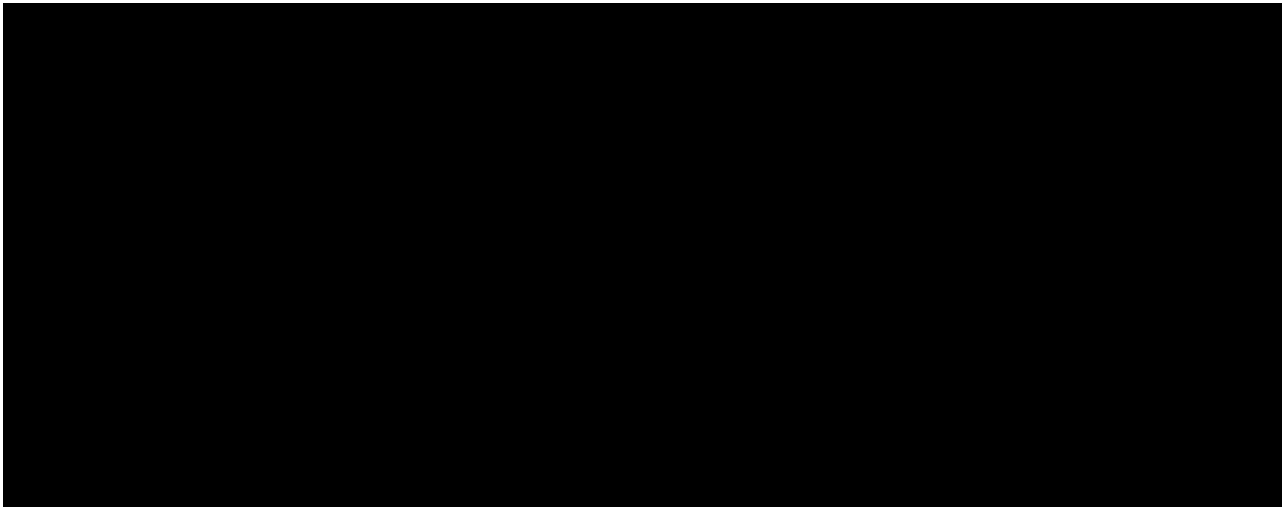
301 오히려 해당 계약에는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¹²⁹⁾

126) [redacted] 은 특정 부품 제조사와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단일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경우 상업적·기술적 측면에서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피심인들과의 장기계약 체결 사유는 피심인들로부터 장기공급 및 기술지원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답변하였다.(출처: 소갑 제10호증, 제36호증)

127) [redacted] 항에 따르더라도 [redacted]
[redacted].(출처: 소갑 제48호증)

128) 각종 할인(discounts)이나 리베이트(rebates)가 제외된 가격을 말한다.

129) 삼성전자에 대한 [redacted] 조항과 [redacted] 에 대한 [redacted] 조항을 비교하여 보면,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출처: 소갑 제48호증

302 피심인들의 경쟁사인 [redacted]와 삼성전자 간의 부품공급계약을 살펴보다도 삼성전자의 구매의무나 위반 시 제재방안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redacted]의 전신인 [redacted]와 삼성전자가 2012년 6월경 체결한 공급계약 (Purchase and Sale Agreement)의 경우 삼성전자의 최소구매금액 등 구매의무에 관한 조항은 없다.¹³⁰⁾

303 [redacted]와 삼성전자가 [redacted] 체결한 RFFE 부품 공급에 관한 MOU에도 [redacted]로 하여금 삼성전자가 요구한 2021년 기준수량의 [redacted]% 상당의 생산능력 (capacity)을 준비하도록 하고, 삼성전자는 기준수량을 주문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라고만 규정하였다. 또한, 삼성전자가 기준수량을 초과하여 주문할 경우 [redacted]는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 한다는 내용으로만 규정되어 있다.¹³¹⁾

304 다만, [redacted]가 삼성전자와 체결한 [redacted]자 MOA(Memorandum of Agreement)에는 [redacted]가 부품별 기준수량 및 기준수량의 [redacted]%만큼의 추가물량의 공급을 준비하고, 삼성전자는 최소한 위 기준수량의 [redacted]%를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이 규

130) 출처: 소갑 제49호증

131) 출처: 소갑 제49호증

정되어 있다.

305 그러나 위 MOA에도 삼성전자가 최소수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가 남은 물량의 인수를 요구하거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은 없고, 단지 삼성전자가 다음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미달하는 수량만큼 ■■에게 우선권(priority)을 부여한다는 문구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¹³²⁾

306 이상의 이 사건 LTA와 유사한 다른 계약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13 2>와 같다. 앞서 검토한 5건의 계약 또는 MOU와 이 사건 LTA를 비교해보면 스마트기기 제조사로 하여금 특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최소구매금액 의무와 차액배상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이 사건 LTA에만 있을 뿐, 부품제조사와 스마트기기 제조사 간 다른 부품 공급계약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307 더욱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LTA에는 이러한 의무에 상응하는 어떠한 실질적인 반대급부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132) 출처: 소갑 제49호증

<표 132>

이 사건 LTA와 다른 계약 사례와의 비교

구분	계약 기간	최소구매 약정	최소구매 금액(수량)	위반 시 제재 (기기사 부담)	최혜고객 우대 조항	
					내용	위반 시 제재 (부품사 부담)
이 사건 LTA	3년	O	미화 [redacted] 달러	차액 배상	비슷한 구매수량을 구매하는 고객과 동일한 수준의 가격	X
[redacted]	2년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2년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2년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피심인들 [redacted]	3년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삼성 [redacted]	1년	O	부품별 기준수량 [redacted] %	X (미달분만큼 次 프로젝트 우선권 부여)	X	X

③ 다른 주요 부품제조사들의 의견

308 주요 스마트기기 부품제조사들은 수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의 무적 구매금액을 규정하는 계약방식은 자신들의 통상적인 거래방식 또는 관행이 아 니라고 답변하였다.

309 구체적으로, 코보는 스마트기기 시장은 매우 역동적이므로 스마트기기 제조 사가 특정 부품제조사와의 거래금액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기 수년 전에 예상하기는 쉽지 않으며, 위와 같은 계약방식은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자유로운 부품 선택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부품제조사들이 가격 및 품질에 기초하여 경쟁할 수 있 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¹³³⁾

310 또한,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아게(Infineon Technologies AG)는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특정한 부품제조사로부터 수년간의 부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133) 출처: 소갑 제47호증

은 매우 통상적이지 않다고 답변하며, 위와 같은 계약은 고객의 요구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체결되지 않을 것이고, 체결되더라도 고객에게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하거나, 공급사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는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¹³⁴⁾

311 켈컴은 피심인들이 삼성전자를 압박하여 다년 간의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며, 대체 공급업체들이 장점에 기초하여 경쟁할 수 있는 능력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설명하였다.¹³⁵⁾

312 미디어텍은 부품제조사가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수년간 일정 금액 이상을 반드시 구매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상하도록 하는 계약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하였다.¹³⁶⁾

④ 소결

313 삼성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3년간 연간 미화 ██████████ 달러 규모의 최소 구매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시장 수요의 변동과 무관히 삼성전자와 피심인들과의 3년치 거래 규모를 미리 결정하도록 한 이 사건 LTA의 내용은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에서 정상적 거래관행과는 거리가 멀다.

314 이 사건 LTA는 삼성전자에게 장기간의 계약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구매의무를 부과하는 일방적인 내용으로,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양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통상의 공급계약이나 장기계약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315 가사 이 사건 LTA와 유사한 부품공급계약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134) 출처: 소갑 제42호증

135) 출처: 소갑 제50호증

136) 출처: 소갑 제51호증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¹³⁷⁾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이 사건 LTA는 정상적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에 해당한다.

(3) 의도·목적의 불공정성

316 이 사건 행위는 삼성전자가 부품 거래선 다원화 전략을 취하자 피심인들이 삼성전자의 경쟁사 부품 채택을 막고 자신의 미래 매출을 보전하기 위한 경쟁제한적 의도·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317 첫째, 피심인들이 L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삼성전자가 피심인들의 경쟁사의 부품을 채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품 매출을 보전받음과 동시에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을 공급한다는 경쟁제한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LTA 체결을 추진한 것이 확인된다.

318 이러한 점은 이 사건 LTA 체결 논의가 위 <표 35>와 같이 삼성전자의 ■■■■■ 부품 채택에 대해 브로드컴 본사의 ■■■■■이 코보를 증오스러운 경쟁자(hated competitor)라고 표현하며 부품 채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된 점, 위 <표 40>과 같이 피심인들이 삼성전자에 Connectivity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심인들의 RFFE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win WSD biz thru leverage WCC)을 모색하려고 한 점, 앞서 2.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TA 체결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피심인들의 회의인 QBR에서 <표 38>과 같이 ■■■■■가 갤럭시 S20 미주향 모델에 OMH PAMiD 부품을 공급하는 것, ■■■■■이 갤럭시 노트 20에 Wi-Fi/BT 콤보 부품을 제안하는 것, ■■■■■과 ■■■■■에 의해 독립형 BT 부품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문제점으로 분석하면서 LTA 체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점 등을 통해 인정된다.

319 둘째, 피심인들과 삼성전자의 LTA 협상 과정에서도 삼성전자의 피심인들의

137)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8누2462 판결 등 참조



* 출처: 소갑 제13호증

325 또한, 피심인들은 2021. 5. 19. 2022년 삼성전자의 피심인들 부품 구매수요가 [redacted] 달러로 [redacted] 달러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삼성전자에게 5년간 매년 [redacted] 달러를 구매하는 내용의 LTA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피심인들은 LTA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기존 LTA의 의무구매 금액인 [redacted] 달러(3년간 [redacted] 달러)에서 [redacted] 달러(5년간 [redacted] 달러)로 늘려 보다 장기간 매출을 보전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자 한 것이다.

326 이러한 피심인들의 경쟁제한적 의도·목적은 LTA의 체결 강제를 통해 실현되었다. 삼성전자의 금액 기준 피심인들에 대한 부품 구매 비중은 OMH PAMiD 부품의 경우 2020년 66.21%에서 2021년 10월 기준 96.23%로 급증하였으며,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WiFi/BT 콤보 부품의 경우 2020년 100%, 2021년 10월 기준 100%로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삼성전자가 LTA로 인해 피심인들 외의 부품제조사를 선정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공급 기회가 차단되어 다수의 프리미엄 기기들에 탑재되는 OMH PAMiD 등 RFFE 부품과 Wi-Fi/BT 콤보 등 Connectivity 부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redacted]나 [redacted] 등의 경쟁업체가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327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 구주향 모델에 [redacted]의 OMH PAMiD 부품을 탑재하기로 계획하였고, 갤럭시 S21FE 및 갤럭시 S22 플러스, 울트라 모델에 [redacted]의 OMH PAMiD 및 WiFi/BT 콤보 부품을 채택하려 하였으나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모두 피심인들의 부품이 채택되었고, 이로 인하여 [redacted] 및 [redacted]의 공급이 무산되었다.

328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OMH PAMiD 부품의 경우 위 1. 마. 3) 가)항에서 살펴보듯이 피심인들이 100%의 시장점유율¹³⁹⁾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장에 2018년 말 ■■■가, 2020년 ■■■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경쟁이 시작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LTA상 연간 ■■■ 달러에 이르는 최소의무구매금액 약정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피심인들 외의 부품제조사를 선정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나 점유율 확대를 통한 경쟁 활성화의 기회가 사실상 봉쇄되었다.

329 더욱이, 이 사건 행위는 단순히 프리미엄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RFFE 및 Connectivity 부품 시장에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LTA상 구매의무 이행을 위해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 S21FE에까지 피심인들의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을 탑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행위는 프리미엄 스마트기기용 부품 시장에서 더 나아가 보급형 스마트폰용 부품 시장의 경쟁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마.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1) 삼성전자의 피심인들 부품에 대한 의존도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

330 피심인들은 <표 28>, <표 29>의 삼성전자의 피심인들 부품 구매비중이 삼성전자가 제출한 내부자료만을 근거로 산정된 것으로 피심인들이 산정한 자료와 상충되는 점, 전체 RFFE가 아닌 OMH PAMiD만을 대상으로 좁게 확정하여 산정된 점, 플래그십 모델에 탑재되는 부품만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보급형 모델에 탑재되는 부품을 포함하지 않아 부품 구매비중을 높게 보이려고 왜곡한 점 등을 이유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331 살피건대, 삼성전자의 부품 구매비중은 특정 사업자의 내부자료에 해당하여 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는 삼성전자가 유일하므로 삼성전자 제출자료에 근거하

139) 이 사건 LTA로 인해 시장진입을 방해받은 쉐핑은 2022. 1. 7. 제출한 ‘시장획정에 관한 전문가 보고서’에서, OMH PAMiD 부품과 개별 중대역 또는 고대역 PAMiD 부품 간의 대체가 어렵다는 이유로 OMH PAMiD 부품 자체가 개별 PAMiD 부품과 별도의 관련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출처: 소갑 제7호증)

여 구매비중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점, <표 28>, <표 29>에서 OMH PAMiD에 대한 별도 구매비중을 제시하면서도 <표 112>, <표 113>에서는 전체 RFFE 부품에 대한 구매비중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구매비중 산출의 근거자료인 소갑 제6호증 자료에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뿐 아니라 갤럭시 A, J 제품군 등 보급형 기기에 탑재되는 부품¹⁴⁰⁾들이 모두 포함되어 구매비중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LTA 체결의 목적이 삼성전자의 부품 구매 약속을 여러 차례 철회함에 따라 훼손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332 피심인들은 2015년과 2016년 삼성전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였으며, MOU가 만료된 후에도 피심인들은 신의성실에 따라 부품 개발 등의 협력을 했으나, 삼성전자가 아래 <표 134>와 같이 구매 약속을 준수하지 않아 당초 피심인들이 예상한 만큼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투자손실을 가져왔기에 삼성전자향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LTA 체결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 134>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약속 철회 사례

연번	삼성전자의 약속 철회 사례
1	삼성전자가 2019년 출시할 갤럭시 S10 및 노트10에 SRS 1.7(OMH PAMiD)를 ■■■% 탑재할 것을 2017년에 약속하였으나, 약 ■■■%만 탑재함
2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10 5G 및 2020년 출시할 기기 모두에 ■■■■■(OMH PAMiD)을 ■■■% 탑재할 것을 2019년 5월에 약속하였으나, 약 ■■■%만 탑재함
3	삼성전자가 ■■■■■(WiFi/BT 콤보) 개발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개발하였으나, 삼성전자는 2020년 갤럭시 노트20에 해당 부품을 채택하지 않음
4	갤럭시 S21 제품군에 ■■■■■를 채택하기로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일부 세부 제품군에 채택을 취소하여 영업손실 ■■■ 달러를 부담하여야 했음
5	독립형 BT 부품인 ■■■■■을 채택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취소하고 ■■■의 부품을 구매함

* 출처: 피심인 의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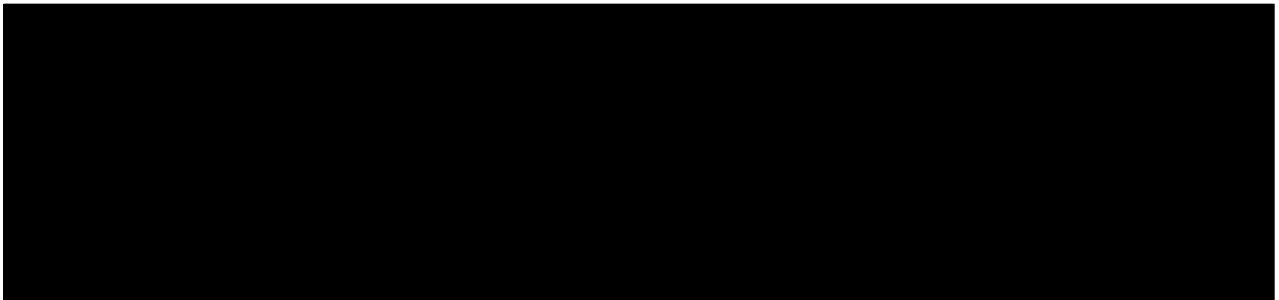
140) 해당 자료에서 갤럭시 A32, A52 제품군에 탑재되는 ■■■의 ■■■■■ 부품, 2017년 출시된 갤럭시 A시리즈에 탑재되는 ■■■의 ■■■■■ 부품 등이 포함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34 첫째, 피심인들은 위 <표 134>와 관련하여 삼성전자가 다섯 건의 구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심인들이 제시하는 자료를 통해 이러한 구두 약속의 존재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심인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정황이 나타난다.

335 예컨대, 위 <표 134>의 연번 2번 사례인 [redacted] 부품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삼성전자가 2019년 5월 해당 부품을 [redacted]% 탑재할 것이라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 4. 16. 브로드컴 본사의 [redacted]이 아래 <표 135>와 같이 피심인들의 해당 부품을 [redacted]% 탑재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과 2019. 6. 5. 삼성전자가 이러한 요청에 대해 <표 136>과 같이 해당 부품에 대해 많이 할당하여도 대략 [redacted]%까지가 최대임을 알려준 사실을 토대로 보면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구두 약속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5>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 [redacted]이 브로드컴 본사의 [redacted]에게 보낸 전자 메일([redacted].) 발췌



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박 [redacted] 부사장을 의미한다.

* 출처: 이 사건 심의에 제출된 심사관의 피심인 의견 검토 자료¹⁴¹⁾

<표 삽입을 위한 여백>

141) 해당 자료는 브로드컴 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피심인들의 자료로서 소감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이 피심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출하였다.

<표 136> 삼성전자의 박■■■■이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의 ■■■■에게 보낸 전자메일(■■■■)



* 출처: 이 사건 심의에 제출된 심사관의 피심인 의견 검토 자료

336 ■■■■ 부품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2020. 2. 7.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20에 ■■■■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 137>와 같이 갤럭시 노트20에 해당 부품이 채택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⁴²⁾ 더욱이 피심인들은 ■■■■에 소요된 연구개발 비용 ■■■■ 달러를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을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투자비용의 산정방식이나 매몰비용 여부(회수 가능성, 타 부품에 활용 가능 여부) 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점,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20에 피심인들의 대체부품인 ■■■■를, 그 외 갤럭시 S21, S22에서 결국 ■■■■를 채택하여 구매한 점에서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표 137> 브로드컴 코리아의 2020. 1. 18. 주간업무보고 자료 발췌



* 출처: 소갑 제13호증

337 둘째, 가사 삼성전자가 구두 약속을 불이행했다고 하더라도, 피심인들은 법원 등을 통한 합법적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선적 중단 등의 수단을 통해 LTA 체결을 강제하였는바, 이는 일종의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통해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142) 해당 자료 외에도, 브로드컴 코리아의 전■■■과 함■■■ 간 2020. 1. 8. 및 2020. 1. 9.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18호증)를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38 셋째, 피심인이 주장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의미를 해석하여 보면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피심인들에 대한 부품 전속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¹⁴³⁾,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39 넷째, 피심인들의 삼성전자향 영업이익은 [redacted]년부터 [redacted]년까지 연평균 [redacted]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하여 왔는바¹⁴⁴⁾, 피심인들이 선행투자한 비용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삼성전자향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심인들은 삼성전자에 특화된 투자를 하였는바, 오히려 피심인들이 삼성전자에 고착되어 피심인들이 열등한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

340 피심인들은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특화된 부품의 사양을 충족하고자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막대한 규모의 특화된 선행적 투자를 하여 오히려 피심인들이 삼성전자에 고착되었다고 주장한다.

341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특정적 투자의 내용은 전적으로 삼성전자에 특화된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 피심인들은 팹리스(fabless) 반도체 회사로서 피심인들 투자의 대부분은 부품의 제조가 아닌 부품의 설계나 기술개발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삼성전자향 부품을 개발하면서 습득한 기술은 다른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부품개발 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42 실제로 피심인들은 삼성전자향 WiFi/BT 콤보 [redacted] 제품에 적용된 신

143) 피심인들의 이 사건 심의를 위한 의견청취절차 및 심의에서의 의견진술 내용과 피심인들이 전략적 파트너십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결국 피심인들 부품의 독점적 채택이 불발되고 경쟁사의 부품이 채택되는 상황인 점 등인 것에 비추어볼 때 결국 전략적 파트너십이란 삼성전자가 피심인들의 부품만을 전속적으로 채택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144)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피심인들의 삼성전자향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다.(출처: 소갑 제5호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예상)
RFFE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Connectivity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계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기술인 WiFi 6E를 ■■■■■향 WiFi/BT 콤보인 ■■■■■에도 적용하여 개발 및 판매한다. 또 다른 삼성향 부품인 ■■■■■, ■■■■■ 부품에서는 저전력, 보다 넓은 연결 범위, 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 등의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¹⁴⁵⁾하고 있는데, 이러한 혁신들이 오직 삼성전자만을 위한 기술개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LTA로 인해 삼성전자의 부품선택권이 제한되지 않았으며, 삼성전자가 필요 이상으로 피심인들 부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주장

343 피심인들은 부품별 구매량을 규정하지 않아 삼성전자가 어떤 부품을 구매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으며, 연간 ■■■■■ 달러는 삼성전자의 2017년, 2018년 연간 부품 구매액보다 낮은 수치에 해당하므로 삼성전자의 부품선택권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는 <표 101>과 같이 본래 2021년 피심인들 부품에 대해 ■■■■■ 달러의 수요를 가지고 있었으며,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저조와 같은 내부적 사정에 의해 수요가 ■■■■■ 달러로 감소하여 당초 수요를 초과해 피심인들 부품을 추가적으로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삼성전자가 수요 예측을 잘못된 것에 기인한 것이지 LTA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4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45 첫째, 삼성전자의 당초 수요를 넘는 수준의 최소구매금액 의무와 이에 대한 차액배상 의무로 인해 삼성전자의 부품선택권은 사실상 제한되었다. 앞서 2. 라. 2) 나) (2)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삼성전자는 거래선을 다원화하고자 하였으며, 2021년 기준 최소한 ■■■■■ 달러보다 적은 금액의 피심인들 부품 수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당초 수요보다 높은 ■■■■■ 달러의 LTA 체결을 강제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이 침해되었으며, 해당 금액을 충족하기 위한 세부 부품을 삼성전자가 선택한 것이라 하여 부품선택권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46 둘째,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피심인들 부품에 대한 ■■■■■ 달러의

145) 출처: 피심인 의견서 소을 제13호증

수요는 아래 <표 138>과 같이 삼성전자가 2020. 3. 23. LTA 체결을 강요당하던 시점에서 피심인들 부품을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100% 채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예상 부품 구매금액을 예측해본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표 72>의 당초 계획대로 피심인들 부품을 OMH PAMiD ■%, WiFi/BT 콤보 ■%의 비율로 구매했을 때의 2021년 예상 수요는 ■ 달러에 불과하다.

<표 138> 삼성전자의 2020. 3. 23. 피심인들 부품 수요 시뮬레이션 자료(삼성전자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제출한 답변서 첨부자료 재구성)
(단위 : 백만 달러)

	Detailed Plan	2021	2022	2023
CASE1	WIFI All regions(100%) RFFE All regions(100%)	[Redacted]	[Redacted]	[Redacted]
CASE2	WIFI All regions(100%) RFFE Regions Excluding NA/China/Japan(62%)			
CASE3	WIFI Regions Excluding NA/China/Japan(62%) RFFE Regions Excluding NA/China/Japan(62%)			

주)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갤럭시 S, 노트 및 폴더블 제품군) 판매량이 3년간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수치이다.

* 출처: 소갑 제9호증

347 셋째, 가사 삼성전자의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 추가적으로 부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요량을 예상하기 힘든 역동적인 스마트기기 시장에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3년 동안 고정된 의무적 구매금액을 규정한 이 사건 LTA 내용의 불공정성과 이러한 내용이 강제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LTA가 없었다면 시장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거래선 다원화 전략에 따라 부품을 구매했을 삼성전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LTA의 최소구매금액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품을 추가로 구매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불이익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바. 소결

348 피심인들의 2. 가. 행위는 자신들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

방인 삼성전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49 이 사건 행위에 있어서 브로드컴 본사는 이 사건 행위를 결정하였고,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브로드컴 싱가포르, 브로드컴 코리아는 브로드컴 본사의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와 협상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및 브로드컴 싱가포르는 이 사건 LTA의 계약 당사자이며, 브로드컴 싱가포르는 이 사건 LTA에 따라 대금을 수취하였으므로, 피심인 4개 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¹⁴⁶⁾로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50 따라서, 피심인들이 앞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피심인 4개 사 모두에 대해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부과 여부

351 이 사건에서 계약체결을 강제하기 위해 행해진 선적 중단 등의 수단, LTA의 계약 내용, 이 사건 행위의 의도·목적의 불공정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해 명백하게 거래질서의 건전성이 훼손된 점,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가 받은 불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146)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및 브로드컴 싱가포르는 브로드컴 본사가 ■%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의 ■% ■■■■■에 해당하고, 브로드컴 코리아는 브로드컴 싱가포르의 ■■■■■로서 브로드컴 본사의 ■■■■■에 해당하는 피심인들간의 지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심인들 4개 사는 경제적 동일체에 해당한다.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의 산정

(1) 위반기간

352 위반기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들이 삼성전자에게 LTA 체결을 강제한 것이므로 개시일은 피심인들과 삼성전자가 LTA를 체결한 2020. 3. 27.로 본다. 또한, 피심인들과 삼성전자는 2021. 8. 17. LTA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합의일의 전날인 2021. 8. 16.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관련매출액

353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라 함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말한다.

354 관련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관련 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355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 부품 공급 중단 등의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거래조건의 LTA 체결을 강제한 것이

다. 또한 LTA의 구체적 내용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전자가 피심인들의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을 매년 [REDACTED] 달러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상품은 삼성전자가 LTA에 따라 피심인들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던 RFFE 및 Connectivity 부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356 삼성전자는 2021년 LTA 최소구매금액 의무 이행을 위해 리드타임을 고려하여 2020. 5. 27.부터 2021. 3. 30.까지 부품을 구매주문(PO)하였으며, 2021. 4. 1.부터는 2022년의 LTA 최소구매금액 의무 이행을 위해 구매주문하였다.

357 따라서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LTA에 따라 삼성전자가 구매주문(PO)한 RFFE 및 Connectivity 부품 구매액 중 주문취소 등으로 인해 실제 구매되지 않은 부품 주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위반기간 동안 산정한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139>과 같다.

<표 139>

관련매출액

(단위 : 달러)

RFFE 구매금액	Connectivity 구매금액	관련매출액
[REDACTED]	[REDACTED]	781,911,075

나)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을

358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실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가 입은 불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359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을 2.0%를 곱한 산정기준은 15,638,222달러이다.

3) 1차 조정 및 2차 조정

360 피심인들에게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61 피심인들은 브로드컴 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수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IV. 3. 다. (3) (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 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4,074,399달러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과징금 부과 대상

36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 모두 이 사건 행위에 관여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들이 연대하여 이 사건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나) 최종 부과과징금

363 위 산정기준에 1,326.10원/달러¹⁴⁷⁾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되,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18,664,000,000원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6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47) 과징금 고시 IV. 4. 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인 2023. 9. 13. KEB하나은행의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3년 10월 6일

의 장 위 원 장 한 기 정

부위원장 조 홍 선

주심위원 정 진 욱

위 원 김 성 삼

위 원 고 병 희

위 원 이 정 희

위 원 서 정

위 원 조 성 진